

#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실태조사

[성폭력 실태]

2014. 12.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

## 【성폭력 실태】

연구책임자 :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공동연구자 : **홍연숙** (제주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 발 간 사

---



최근 해마다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제주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 범죄 추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2011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성폭력을 비롯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과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제주지역의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밀착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sexuality)과 성폭력에 관한 인식조사와 성폭력의 피해실태, 도민의 정책수요 등을 조사하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아직도 피해 당사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피해자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도민들의 인식과 정책수요 및 인지도,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충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성폭력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를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제주대학교의 양영오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터뷰에 응해주신 성폭력 피해자 여러분의 용기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를 진행한 이화진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맡아주신 제주한라대학교 홍연숙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고서를 자세하게 검토하고 귀한 의견을 주신 외부의 연구평가위원님들과 본원의 연구보조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연구가 안전한 제주사회를 구현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선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4. 12.

**현혜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 <연구 요약>

### 제1장 서론

#### 1.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폭력의 실태와 정책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최근 제주지역은 성폭력, 성매매 등 성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성폭력 관련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와 체감도, 의식 등을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2. 연구 내용

- 문헌자료 분석을 통하여 남성과 여성의 성 인식을 비롯하여 성폭력에 관한 통념, 성폭력이 발생하는 배경과 원인, 성폭력 피해의 영향을 분석함.
- 성 인식 및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 성폭력 유형별 경험실태, 성폭력 피해의 영향,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수요 등의 조사를 통해 제주 지역의 성폭력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함.
-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실제 정책수요 조사를 근거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제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함.

#### 3. 연구방법

##### 가 문헌연구 : 선행연구, 통계자료, 정책동향 분석

-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 이론 및 정책동향 등 성폭력 관련 기본 개념을 정리함.
- 각종 통계자료를 검색하여 전국 성폭력 실태와 제주지역의 성폭력에 관한 현황을 밝힘.

##### 나 설문조사

- 조사기간은 2014. 08. 18 ~ 10. 03 이고, 조사대상 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00명 조사내용은 가족 일반 및 다양한 가족, 가정폭력, 성폭력을 조사함.

- 성폭력 관련 조사내용은 성폭력에 대한 개념, 성 통념, 성폭력 피해 실태, 피해에 대한 대응, 법과 공공서비스 인지도, 정책수요 등을 조사함.

## 다 심층면접

- 성폭력 피해자 10명, 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 11명 총 2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함.
-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질문은 성폭력 경험과 후유증, 심리적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관련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 피해자의 특징과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적 개선점 등으로 구성함.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 성폭력을 둘러싼 법적인 개념과 법률상 성폭력의 유형, 피해자의 연령 및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유형, 기타 영역에서 성폭력 유형을 설명함.

### 2.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

- 성폭력을 설명하는 제 이론적 관점들을 검토하였음. 성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정신병리학적 관점, 인지행동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여성주의적 관점 등 성폭력 발생에 대한 설명력을 제시함.

### 3. 성폭력 피해의 영향

- 성폭력 피해의 영향으로 주로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서영역에서의 불안, 강박증상, 무기력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인지영역에서 해리, 부정, 감정억압, 인지왜곡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 행동영역에서 자해, 공격, 약물남용들의 증세가 있을 수 있음.

## 제3장 성폭력 현황과 정책동향

### 1. 성폭력 현황

-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 범죄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로 성폭력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고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2.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동향

- 성폭력 관련법의 개정 과정과 지난해 새롭게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을 제시하고 국내·외 정책동향을 설명함.
- 국내 성폭력 정책 동향은 제 4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이와 관련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음.
- 국외의 성폭력 관련 정책 중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성폭력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제4장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 1. 성폭력에 대한 인식

#### 가. 범죄피해의 두려움

- 안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밤늦게 귀가할 때 두려움이나 성폭력 피해의 두려움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범죄피해의 두려움이 최소 두 배 이상 높음



## 나. 성 통념 인식

- 성 통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여자가 먼저 성행위를 하다가 폭력을 당했다면 여성의 책임이다'라는 주장에 찬성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한다', '처음 만나는 남자의 집에 따라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라는 순, 이러한 항목에 절반가까이 그렇다고 응답함.
- 성 통념에 있어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여성의 행동을 오해하는 측면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음.
- 성별로 가장 차이가 큰 항목은 '여자가 먼저 목을 껴안고 애무하다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항목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 통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됨.

## 다. 성폭력 인식

- 성폭력 개념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강요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식한다는 응답(94.1%)이 가장 많은 반면, 성행위 도중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는 행위는 성폭력으로 인식한다(75.5%)는 응답률이 가장 낮음.
-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성폭력이라고 인지하는 비율이 낮았고, 특히 성행위 도중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는 행위가 성폭력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성별 격차도 많이 나타남.

## 2. 성폭력 피해 실태

### 가.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 성폭력 경험은 96.5%가 여성, 남성이 3.5%로 대부분이 여성임.
-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은 40대가 41.8%, 30대 27.3%, 20대 23.6%, 50·60대가 각각 3.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상태는 기혼이 60.0%, 미혼이 30.9%, 이혼 혹은 별거 7.3%, 사별 1.8% 순으로 나타남.

### 나. 성폭력 피해 유형

- 성폭력 피해유형은 성희롱(45.7%)과 성추행(37.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스토킹

(15.7%), 강간(1.4%) 순으로 나타남.

#### 다. 성폭력 반복피해 경험

- 성폭력 피해자 중 반복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됨.
- 스토킹은 한 사람에게 2회 이상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넘고 피해횟수는 5회, 10회 피해를 경험하기도 함.
- 성희롱의 경우 5회, 10회, 심지어 20회까지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있음.

#### 라. 피해연령 및 장소

- 성폭력 최초 피해는 대부분 20대 이하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성희롱 경험은 20대에 처음 경험한 사례가 많음.
- 성희롱 피해 장소는 학교/직장/군대가 71.9%로 가장 많음.
- 성추행 피해 장소는 대중교통시설(26.9%)을 포함 여러 곳에서 나타남.

#### 마. 가해자와의 관계 및 가해자 연령

- 스토킹의 가해자는 주로 학교 선후배나 애인 그리고 이웃이고 연령대는 10대(27.3%), 20대(36.4%)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성희롱의 가해자는 주로 직장상사나 동료가 62.5%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 연령은 20대가 37.5%, 40대 50대가 각각 21.9%를 차지함.
- 성추행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절반 이상(57.7%)을 차지하였고, 가해자의 연령은 10대(34.5%), 와 20대(19.2%)가 절반을 차지함.
- 피해당시 가해자 상태는 '맨정신이였다' 는 응답이 75.4%,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응답이 18.0%로 나타나 음주가 성폭력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바. 성폭력 피해의 영향

- 피해 당시의 느낌으로는 '모욕감, 굴욕감이 들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61.4%, '공포로 인해 너무나 무서웠다' 36.8%, '멍한 느낌이었다' 19.3% 순으로 나타나 성폭력 피해의 느낌으로 성적 굴욕감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
- 성폭력 피해에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 33.3%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 성폭력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에 변화를 겪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됨.
- 구체적인 변화로는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19.2%)이나 타인에 대한 혐오, 또는 불신(16.4%)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상당수 있었음.

#### 사.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 성폭력 피해당시 대응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도망갔다’(40.4%), ‘그냥있었다’(36.8%)가 가장 많았음.
- 소리를 지르거나(10.5%), 가해자를 설득하고(10.5%), 가해자를 협박(5.3%)하는 등 적극적인 저항은 소수로 나타남.
- 성폭력 피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42.9%, 성폭력인지 몰라서 19.0%, 소리 내면 남이 알까봐 창피해서 14.3%,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거나, 기타가 각각 9.2%, 저항하면 다칠까봐 4.1% 순으로 나타남.
- 대부분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사례가 많아 성폭력 피해가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됨.
- 성폭력 피해당시 도움을 요청 사례는 모두 38.6% 에 그쳤고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가족이나 친구가 가장 많은 비율(54.5%)을 나타냈고, 그 다음이 경찰서(22.8%)로 나타남.
- 성폭력 상담소나 쉼터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례는 적어서(13.6%) 공공서비스 이용률이 낮음.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의 1순위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48.1%), 범인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13.5%),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11.5%),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기 때문에(11.5%) 순으로 나타남.
- 성폭력 관련(공공서비스)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58.5%), 관련 기관의 존재를 몰라서(13.2%),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15.1%),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7.5%)순으로 나타남.

#### 아. 정책인지도와 정책욕구

##### 1) 성폭력 관련법 인지

-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들어본 적 있지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69.6%)는 응답이 가장 많음,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응답은 15%에 불과함.

- 성폭력 관련법에 대하여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16.6%)이, 여성(13.4%)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성폭력 관련법 내용에 대한 인지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법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지난해 새롭게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절반 이하로 낮았음.
- 성별 비교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성폭력 관련법 인지경로는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TV/라디오 공익광고를 통한 인지가 88.1%,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33.2%, 신문/잡지가 24.9%, 친구/가족, 직장 동료/이웃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24.6%, 주로 대중매체나 인터넷, 친구나 이웃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동지역이 TV/라디오 등의 공익광고를 통해서 인지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91.9%), 제주시 읍·면지역 거주자들은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폭력관련법을 인지하는 경우(42.8%)가 다른 지역의 거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서귀포시 동지역(28.5%)과, 서귀포시 읍·면지역(38.2%) 거주자들이 제주시 지역 거주자들보다 친구/가족/직장동료/이웃을 통하여 법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90.1%)들이 남성(86.2%)들 보다 TV/라디오 등의 공익광고를 통해서 인지하는 경우가 높고, 남성(27.4%)들이 여성(22.2%)들 보다 신문잡지를 통하여 인지하는 비율이 높음.
- 여성들은 친구/가족/직장동료/이웃(26.5%)을 통하여 인지하는 비율이 남성(22.8%)보다 높게 나타남.

## 2) 성폭력 관련 공공 서비스 인지

- 성폭력 관련 서비스 기관 중 상담소(50.8%), 피해자 쉼터(40.8%), 여성긴급전화 1366(39.3%)이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고, 나머지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30%이하로 낮은 편임.
- 성별 비교에서는 모든 기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서비스 기관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인지도 차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3) 정책욕구

-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정책조사에서 정신적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54.0%로 가장 많음.
- 성별 차이는 정신적 심리적 치료는 여성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법적지원, 의료

지원,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이 더 많음.

- 우선 지원되어야 할 성폭력 관련 서비스 1순위는, 생활비 지원이 29.2%, 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28.6%), 취업지원 등 자활지원(27.2%)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성폭력 예방정책 1순위로는 가해자 처벌강화(30.2%), 다음으로 성폭력 예방과 성역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25.8%)로 나타남.
-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은 가해자의 처벌강화가 27.3%, 치안 유지가 20.5%로 나타났고, 여성은 가해자의 처벌강화가 33.0%, 성폭력 예방과 성역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가 24.1%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가해자 처벌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함

## 제5장 성폭력 피해자 및 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 1. 피해자 심층면접 결과

- 피해자의 심층면접 결과 피해당시 대체로 무서움, 공포, 분노, 성적 모욕감, 수치심, 무력감 등을 느끼고 피해의 후유증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경험함.
- 피해자 중 일부는 조사과정에서 이차피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음.

### 2. 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 종사자의 심층면접 결과 피해자의 지원과 관련한 개선책이 지적되었음. 구체적으로 전문적 심리치료에 대한 폭넓은 지원,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인식개선,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인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등 피해자를 위한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었음.

## 제6장 정책제언

### 1. 성 통념과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개선

- 성폭력 개념과 성 통념에 있어 남성들의 보수적인 성 통념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성폭력 인지도도 낮게 나타나 성 관련 인식개선이 필요함.
- 특히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는 남성이 높게 나타나 법은 잘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행위를 왜곡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인식개선이 요구됨.

## 2.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성폭력 예방정책 조사결과 가해자 처벌강화와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정책과 의사결정 위치에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sexuality) 인식 개선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함.

## 3.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의 홍보 강화

- 성폭력 법에 대한 인지조사 결과 2013년 새롭게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에 내용에 대한 인지율이 낮게 나타나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성폭력 법 인지 경로에 성별 지역별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원인진단과 이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함(서귀포시 지역은 제주시 지역에 비해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한 인지가 낮음, 반면 친구, 이웃 가족을 통한 인지가 높음).
-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연령별 인지도에서 40대 50대에 비해 20대 30대의 인지도가 낮고 성폭력 가해연령이 10대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젊은 연령대의 성관련 인식개선과 교육 강화가 필요함.

## 4. 성폭력 관련 공공 서비스 정책 홍보 강화

- 본 조사결과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지도 부분에서 여성긴급전화(39.3%), 성폭력상담소(50.3%), 성폭력피해자 쉼터(40.3%)로서 절반 이하로 나타남.
- 성폭력 피해 당시 도움 요청 대상이 경찰이나 상담소는 소수이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지도 제고방안이 필요함.

## 5. 성폭력 대응 시스템 구축 및 강화

- 성폭력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참거나 가족,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이는 사이에서 반복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습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성폭력 대응 시스템을 위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가해자 처벌 및 교정, 그리고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 시스템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 6. 피해자 심리치료와 경제적 지원 확대

- 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은 정신적, 심리적 지원의 확대와 생활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남.
- 또한 종사자의 심층면접 결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항목을 늘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책도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 7.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인 제도 등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지원제도의 실행

- 성폭력 사건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진술조력인이나 국선변호인 제도 등이 실행되고 있지 않음이 지적됨.
- 진술조력인 양성의 현실적인 방안과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함.

## 8. 성폭력 가해자 교정 · 치료 확대

- 성폭력 재범률이 낮아지면 성폭력 피해감소 및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중요함.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가해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인권존중의식과 성 평등 가치관을 포함해야 하며 가해자의 연령, 가해행위 등 가해자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 목 차

<b>제1장 서론</b> .....	1
1. 연구 목적 .....	2
2. 연구내용 .....	2
3. 연구방법 .....	3
가. 연구개요 .....	3
나. 연구방법 .....	4
<b>제2장 이론적 배경</b> .....	7
1.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	8
가. 성폭력의 개념 .....	8
나. 성폭력의 유형 .....	9
2.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 .....	11
가. 정신병리학적 관점 .....	11
나. 인지행동적 관점 .....	12
다. 여성주의적 관점 .....	13
3. 성폭력 피해의 영향 .....	15
<b>제3장 성폭력 현황과 정책동향</b> .....	17
1. 성폭력 현황 .....	18
가. 전국 현황 .....	18
나.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	20
2. 성폭력 관련법 .....	22
3. 성폭력 정책동향 .....	24
가. 국외 정책 동향 .....	24
나. 국내 정책 동향 .....	28
다. 제주지역 정책동향 .....	29
<b>제4장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b> .....	31
1. 조사방법 .....	32
가. 조사대상 .....	32
나. 표본의 설계 .....	32
다. 조사내용 .....	35



라. 조사측정도구 .....	36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37
3. 성폭력에 대한 인식 .....	40
가. 범죄피해의 두려움 .....	40
나. 조사대상자의 범죄피해의 두려움 .....	40
나. 성 통념 인식 .....	46
다. 성폭력 인식 .....	49
4. 성폭력 피해 실태 .....	54
가.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 특징 .....	54
나. 피해 유형 .....	55
다. 피해 횟수 .....	57
라. 피해 연령 및 장소 .....	59
마. 가해자와의 관계 및 연령 .....	60
5. 성폭력 피해의 영향 .....	63
가. 피해당시의 느낌 .....	63
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	63
다. 경제적 피해 .....	66
라. 일상생활의 변화 .....	67
6. 성폭력에 대한 대응 .....	68
가. 개인적 대응 .....	68
나. 법적 대응 .....	72
다. 시설 이용 .....	74
7. 정책인지도와 정책욕구 .....	75
가. 법·제도의 인지 .....	75
나. 공공 서비스 인지 .....	85
다. 정책욕구 .....	90
<b>제5장 성폭력 피해자 및 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b>	<b>97</b>
1. 피해자 심층면접 .....	98
가. 조사개요 .....	98
나. 피해자 심층면접 결과 .....	99
2. 관련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	111
가. 조사개요 .....	111
나. 기관 종사자를 통해 본 성폭력 피해자 실태 .....	112
다.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	117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	123
1. 요약 .....	124
2. 정책제언 .....	128
참고문헌 .....	132
부  록 .....	135

표    목    차

<표 3-1> 전국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건수 추이 .....	18
<표 3-2> 전국 성폭력 피해자 현황 .....	19
<표 3-3> 전국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19
<표 3-4> 지역별 성범죄 발생률 .....	20
<표 3-5> 2013 제주지역 성 범죄 발생 현황 .....	21
<표 3-6> 제주지역 성폭력 피해자 연령 및 성별 .....	21
<표 3-7> 제주지역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22
<표 3-8> 제주지역 성폭력 피해 장소 .....	22
<표 3-9> 성폭력 관련법의 주요 개정내용 .....	23
<표 4-1> 조사 표본 .....	33
<표 4-2> 가구구성 조사내용 .....	35
<표 4-3> 개인관련 조사내용 .....	35
<표 4-4> 성폭력 조사 내용 .....	36
<표 4-5>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38
<표 4-6> 응답자의 가구 및 가족 특성 .....	39
<표 4-7> 제주지역의 성별 안전에 대한 인식 .....	40
<표 4-8> 조사대상자의 범죄피해의 두려움 .....	41
<표 4-9> 성별 범죄피해의 두려움 .....	42
<표 4-10> 지역별 범죄피해의 두려움 .....	43
<표 4-11> 연령별 범죄피해의 두려움 .....	44
<표 4-12>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범죄피해의 두려움 .....	45
<표 4-13> 성 통념 조사 항목 .....	46
<표 4-14> 성 통념 인식 .....	47
<표 4-15> 성별 성 통념 인식 .....	48

<표 4-16> 성폭력 인식 .....	50
<표 4-17> 성별 성폭력 인식 .....	51
<표 4-18> 연령별 성폭력 인식 .....	53
<표 4-19>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	55
<표 4-20> 피해 유형별 성폭력 경험 (평생) .....	56
<표 4-21> 최근 1년간 성폭력 경험 .....	56
<표 4-22> 성폭력 유형별 피해 .....	57
<표 4-23> 성폭력 피해 횟수 .....	58
<표 4-24> 성폭력 피해 유형별 최초 피해연령 .....	59
<표 4-25> 성폭력 유형별 피해 장소 .....	60
<표 4-26>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및 가해자 연령 .....	61
<표 4-27> 성폭력 반복피해와 가해자와의 관계 .....	62
<표 4-28> 피해당시 가해자 상태 .....	62
<표 4-29> 성폭력 피해당시 느낌 .....	63
<표 4-30>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경험 .....	64
<표 4-31> 성폭력 피해 유형별 정신적 고통 .....	64
<표 4-32>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유형 .....	65
<표 4-33> 성폭력 피해자의 현재 정신적 상태 .....	65
<표 4-34> 반복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	66
<표 4-35> 피해이후 경제적 손실 .....	66
<표 4-36> 피해 유형별 피해이후 경제적 손실 .....	67
<표 4-37> 피해 유형별 경제적 손실 내용 .....	67
<표 4-38> 성폭력 피해경험 후 일상생활의 변화 .....	68
<표 4-39> 성폭력 피해당시 대응방법 .....	69
<표 4-40> 성폭력 반복피해 경험자의 대응 .....	69
<표 4-41> 성폭력 피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	70
<표 4-42> 성폭력 반복피해 경험자의 대응하지 않은 이유 .....	71
<표 4-43> 성폭력 피해당시 대응 결과 .....	72
<표 4-44> 성폭력 피해자의 도움요청 대상 .....	72
<표 4-45> 경찰 미신고 이유 1순위 .....	73
<표 4-46> 경찰 미신고 이유 2순위 .....	74
<표 4-47> 관련(서비스)기관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	75
<표 4-48> 성별 성폭력 법 인지 .....	76
<표 4-49> 연령별 성폭력 법 인지 .....	77
<표 4-50> 학력별 성폭력 법 인지 .....	78

<표 4-51> 성폭력 법 내용 인지 .....	79
<표 4-52> 성별 성폭력 법 내용 인지 .....	80
<표 4-53> 연령별 성폭력 법 내용 인지 .....	81
<표 4-54> 학력별 성폭력 법 내용 인지 .....	82
<표 4-55> 성폭력 관련법 인지경로 .....	83
<표 4-56> 지역별 성폭력 관련법 인지 경로 .....	84
<표 4-57> 성별 성폭력관련법 인지 경로 .....	85
<표 4-58> 연령별 성폭력 관련법 인지 경로 .....	85
<표 4-59> 성폭력 관련 공공 서비스 인지 .....	86
<표 4-60> 성별 공공 서비스 인지 .....	86
<표 4-61> 지역별 공공 서비스 인지 .....	88
<표 4-62> 연령별 공공 서비스 인지 .....	89
<표 4-63>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	90
<표 4-64>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성별) .....	91
<표 4-65>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역별) .....	91
<표 4-66>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령별) .....	92
<표 4-67> 우선 지원되어야 할 성폭력 관련 서비스 .....	92
<표 4-68> 우선 지원되어야 할 성폭력 관련 서비스 (성별) .....	93
<표 4-69> 성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 .....	93
<표 4-70> 성별 성폭력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	94
<표 4-71> 성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 (연령별) .....	94
<표 4-72> 성폭력 경험 집단의 정책수요 .....	95
<표 4-73> 우선 지원되어야 할 성폭력 서비스 (성폭력 경험집단) .....	95
<표 4-74>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예방정책 .....	96
<표 5-1> 성폭력 피해자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98
<표 5-2> 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내용 .....	99
<표 5-3> 기관 종사자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	111
<표 5-4> 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내용 .....	112

##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	4
<그림 3-1> 전국 성폭력 발생추이 .....	18
<그림 4-1> 범죄피해의 두려움 .....	41

<그림 4-2> 성별 범죄피해의 두려움 .....	42
<그림 4-3> 성폭력 경험별 범죄피해 두려움 .....	46
<그림 4-4> 성 통념 인식 .....	47
<그림 4-5> 성별 성 통념 인식 .....	49
<그림 4-6> 성폭력 인식 .....	50
<그림 4-7> 성별 성폭력 인식 .....	51
<그림 4-8> 스토킹의 반복피해 .....	58
<그림 4-9> 성희롱의 반복피해 .....	58
<그림 4-10> 성추행의 반복피해 .....	59
<그림 4-11> 성폭력 피해당시 느낌 .....	63
<그림 4-12> 성폭력 1회 피해자와 반복피해자의 대응 .....	70
<그림 4-13> 성폭력 1회 피해자와 반복피해자의 대응하지 않은 이유 .....	71
<그림 4-14> 성별 성폭력 법인지 .....	76
<그림 4-15> 연령별 성폭력 법인지 .....	77
<그림 4-16> 성폭력 법 내용 인지 .....	79
<그림 4-17> 성폭력 관련법 인지경로 .....	83
<그림 4-18> 여성 긴급전화 지역별 인지 .....	87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 1. 연구 목적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건강한 가족의 유지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다양한 여성·가족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 평등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려면 가족뿐 아니라 인권, 폭력, 경제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태파악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폭력에 관한 실태와 도민의 정책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최근 제주지역은 평화의 섬이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성매매 등 성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고 여성 대다수가 야간보행에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제주발전연구원, 2010)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관광지의 특성상 외부인의 유입이 많아 성관련 일탈행위가 자주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고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여성 폭력방지정책은 지역여성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와 폭력 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달리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정책이 여성폭력방지정책이 아닌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내실 있는 실행과 함께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정책강화를 통한 폭력 예방 및 방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1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성폭력을 비롯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과 상담소 및 보호 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폭력 등 여성 폭력 피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성폭력 관련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와 체감도, 의식 등을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문헌자료 분석을 통하여 성폭력 관련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성폭력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폭력에 관한 개념을 비롯하여 성폭력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또한 성폭

력 피해의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의 후유증은 어떠한지를 파악한다. 아울러 성폭력의 현황과 성폭력 관련 법제도와 국내·외의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을 파악한다.

둘째, 제주지역의 성폭력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폭력에 관한 도민들의 인식, 성폭력의 피해 실태, 피해유형 및 성폭력 피해의 영향과 후유증,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등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드러낸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와 기관종사자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설문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성폭력 경험과 영향, 개선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한다.

넷째,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수요에 관한 설문조사와 함께 성폭력 지원기관 종사자와 피해자의 면접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함께 법과 제도, 그리고 공공서비스에 관한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가. 연구개요

본 연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는 가족, 가정폭력, 성폭력의 세부분야의 실태조사로 구성하였고 3개의 연구수행 주체들이 진행되는 연구의 특성상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연구전체의 흐름과 과제 수행과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자문회의는 3차에 걸쳐 하였으며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방향, 설문지 내용의 검토, 목차 점검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2차 자문회의에서는 심층면접 결과에 대하여, 3차 자문회의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정기적으로 공동연구진 회의를 하여 이론과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정책 개선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토론회를 거쳐 학계, 관계 전문가, 그리고 도민 일반의 의견을 듣고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수행 절차를 제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 4 •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실태조사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7월	• 연구설계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자료수집 및 문헌검토		• 선행연구 검토 • 성폭력 관련 각종 행정자료 및 통계 수집
	• 연구진회의 및 자문회의(1차)		• 연구방향 및 설문지 문항 점검
8-9월	• 성폭력 실태조사 (설문 조사)	⇨	• 제주도 여성·가족 실태조사
	• 성폭력 심층면접조사 (당사자 및 종사자 인터뷰)		• 성폭력 피해자 관련 기관 종사자
10월	• 자문회의(2차) -중간보고	⇨	• 보고서 목차, 선행연구 및 이론분석, 면접 결과 분석 보고
11월	• 자문회의(3차)	⇨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보고
12월	• 정책토론회	⇨	•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수렴
	• 정책적 제언 마련		• 연구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제언 자문

### 나. 연구방법

#### 1) 문헌연구와 통계 및 정책현황 자료 검토

문헌자료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폭력 관련 선행연구, 정책추진 실태, 민간단체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였다. 성폭력 분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외국의 성폭력에 대한 대책 및 피해자 보호방안 등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분석하고 제도 및 정책의 도입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성폭력 현황 파악을 위해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의 공식통계에 기초한 성폭력범죄의 발생추이를 제주지역 통계와 비교 검토 하였다.

####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제주지역 19세 이상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

년 8월 18일~10일 3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지리적인 여건상 우도면과 추자면 등 도서지역을 제외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 지역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층화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  $\pm 1.79\%p$  이다. 조사방법은 전문 면접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1:1 면접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를 이용하였고 주요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t 검증 등을 활용하였다.

### 3)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피해자 심층조사

심층면접 조사는 성폭력 피해자 10명과 관련기관 종사자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와 피해자 인터뷰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피해자의 경우 상담원과 논의하여 진행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신뢰하는 상담원이 동석을 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워 연구자가 직접 인터뷰 하기 힘든 경우에는 상담을 진행한 전문 상담원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

이론적 배경

1.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2.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
3. 성폭력 피해의 영향

## 1.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 가.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강제적인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성을 매개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일련의 강제 및 통제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 유형의 강제력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몸과 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욕망, 욕구 등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하는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한국여성연구소 1999). 우리사회에서 통용되는 성폭력에 관한 개념은 크게 '협력의 개념' 과 '광의의 개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력의 개념은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sexual violence)' 으로서의 성폭력이고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 으로서의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민경자, 1999).

성폭력의 법적 개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강간, 강제추행만이 아니라 음행매개, 음화반포, 공연음란까지 성폭력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성폭력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까지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남성이고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라는 현황에 비추어 보면 성별 간 권력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고 성폭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성폭력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있어왔다.

과거에는 성폭력을 여성의 입장에서 정의하기 보다는 단순히 여성의 동의 없는 남성의 폭력 혹은 정조에 관한 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남성의 재산권에 대한 다른 남성의 침해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의 입장을 반영한 성폭력의 개념정립과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여성의 입장에서 성폭력은 오랫동안의 여성운동과 투쟁을 거친 후 여성의 입장을 반영한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폭력을 정의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성폭력특별법이 제정 (1990-91)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에서 법적 정의에 국한된 성폭력의 개념은 피해자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여성의 입장을 반영한 성폭력 개념정의는 성폭력과 폭력이 아닌 것의 이분법적인 정의가 아닌 연속선(심영희, 1989) 안에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성폭력을 정의하는데 있어 여성들이 맺는 관계 안에서 어떤 고통을 경험 하는지를 성폭력의 개념과 정의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의견들은 성폭력을 정의하는데 여성의 경험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나. 성폭력의 유형

### 1) 법률에서의 유형

법률상 성폭력의 유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에 의거하여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미수,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다양한 성적행동 등을 포함한다.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시되어 있는 성폭력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형법 제297조).

-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형법 제297조의 2).
- 강제추행: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형법 제298조).
- 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형법 제299조).
- 미수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미수도 처벌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한 경우. 또한 유사성교행위 (즉,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범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2) 피해자 연령과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유형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이하인 경우 아동성폭력으로 분류된다. 아동성폭력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특정한 성적 행위만을 의미하기보다는 나체 및 성기 노출, 음란물 제공, 언어적 희롱에서부터 강간, 성기 접촉, 손가락 및 이물질의 성기 삽입, 구강 및 항문에 성기 삽입까지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0). 아동성폭력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지가 지체되어 폭력 피해 사실이 즉시 발견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기도 한다(여성가족부, 2013).

또한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친족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데이트성폭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친족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로 성추행에서 강간까지 포함하는 성폭력을 의미한다.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 동거하는 친족’으로 확장되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20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일상적으로 대면하게 되어 있어 피해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직장 내 성폭력은 직장 내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강간, 강제추행, 추행, 성희롱 등의 개념을 포괄하여 정의할 수 있다. 일반 성폭력과 다르게 가해자들이 직장 내의 지위와 권력관계를 이용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직장 내 성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피해

뿐만 아니라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보복적 인사 조치로 이어져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데이트성폭력은 이성간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어나는 일방적인 성적행위를 말한다. 데이트 성폭력은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경우도 성관계와 성폭력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수동적이고 남성은 적극적이라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 때문에 여성의 행동과 표현방식이 잘못 이해되기도 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소와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3) 기타 유형

기타유형으로는 스토킹, 아내성폭력 등이 있다. 스토킹은 일방적으로 관심 있는 상대를 병적으로 쫓아 다니는 사람을 말하며, 그런 행위를 스토킹이라 한다. 스토킹은 상대의 거주지나 자주 가는 장소를 배회하는 것 외에도 감시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공포심을 조장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스토킹 피해자는 비슷한 사람을 보거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놀라거나, 혼자 있을 때나 외출할 때 두려움을 느끼며,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후유증을 겪게 된다. 스토킹은 다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와 후유증을 남기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지나친 사랑’ 등으로 미화되는 등 아직까지 그 심각성이 간과되고 있다.

아내에 대한 성폭력(성학대)은 결혼생활의 통제권이 남성에게 있다는 기존의 통념에서 문혀져 왔다. 그러나 성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아내를 비난하는 등의 언어폭력이나 성관계 강요 등은 아내의 인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범죄이다. 특히 아내 강간의 경우 구타 후에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면 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아내에 대한 성폭력(성학대)은 다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드는 등의 후유증을 낳는다.

## 2.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가. 정신 병리학적 관점

정신 병리학적 관점은 성폭력의 원인을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질환의 하나로 간주하여 개인의 병리현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정신 병리학적 모델은 오래전 강간을 연구하는 이론으로 존재하였는데 이는 성폭력이 폭력적 행위라기보다는 일종의 일탈적 성행위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성폭력이란 통제되지 않는 병리적 성적 충동에 이끌려 일탈적인



성행위를 추구하는 특정 남성 집단들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다(이종인, 2006). 즉 성폭력 가해자들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개인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성폭력을 개인의 정신적인 일탈행위로 설명하거나 혹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성폭력을 인간의 모든 행동, 성역할, 지위 등이 진화를 거치면서 필연적으로 습득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성폭력은 남성이 종족을 퍼뜨리면서 살아남기 위하여 가지게 된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성폭력은 남성의 성적 공격성, ‘자연스러운 것’ ‘본질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접근,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 특히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발생과 의미에 대한 설명에 한계가 있게 된다. 진화론적 설명은 성폭력에 대한 정의, 의미, 발생이 왜 사회마다 그리고 같은 사회 내에서도 시간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사실은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성폭력의 원인을 일부 남성들의 일탈적 행위로 접근하게 되면 성폭력 피해자가 왜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은지를 설명하기 적절하지 않다.

#### 나. 인지 행동적 관점

인지 행동적 관점은 사람의 사고와 정서가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보는 관점이다. 즉 성폭력의 원인이 가해자의 왜곡된 사고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는 입장이다. 인지 행동적 관점에서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는 가해자의 잘못된 신념이나 도식과 같은 인지 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가해자 개인의 왜곡된 인지가 성폭력 행위를 발생시키고 유지하는 원인이 된다.

성폭력 가해자들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인지적 왜곡이다. 그들은 성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왜곡되고 올바른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자신의 행동, 타인의 반응, 상황 등에 대해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자신의 행위가 일반인에게는 경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왜곡과정을 통한 일탈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자기만족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많은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유혹을 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인지과정의 왜곡이다. 이들의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핑계거리를 제공하고 행위자체를 부정하고 최소화함으로써 성관련 일탈행위를 지속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왜곡된 인지과정은 성범죄자가 일탈적인 범죄행위를 지속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현혜순 외, 2010).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개인의 인성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다가 이후에는 가해자들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관계나 정신적 이상 등 심리사회적 특성에 비중을 두고 진행되었다.

성폭력 가해자의 어린 시절 성폭력 경험과 연결 지어 설명하는 그로스(Groth, 1984, 한국여성상담센터 2007: 20 에서 재인용)는 가해자 자신이 그의 희생자와 비슷한 나이에 성적인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비슷한 나이의 소년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가해자의 성적인 공격은 사실상 자신의 충격을 해소하려는 시도라는 설명이다.

울프(Wolf, 1984)의 순환모델은 가해자의 행동이 원을 그리며 점차 반복적이고 부정적인 상태로 이어진다는 가설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전형적으로 이 순환은 가해자가 매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자신이 대처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문제에 대한 왜곡된 생각에 기초한 부적절한 대처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해 그는 실패할 것이라거나 거부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고립되려 한다. 이러한 고립 때문에 환상에 빠지게 되고 이는 왜곡된 성적 행위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프의 순환모델은 성적 학대를 당한 남자들 중에도 가해자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핀켈호르(Finkelhor, 1984)는 성인들이 아동에게 성적인 관심을 왜 느끼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에 의해 가해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가해자가 자신의 아동기에 입은 외상을 극복하기 위해 가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 것인데 가해자가 아동기 학대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에 더욱 그럴 수 있다. 즉 가해자들은 아동기 성경험을 통해 조건화되거나 모델링되어 결국에는 정상적이지 않고 왜곡된 자극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경향이 아동에게 정서적 동질감을 갖게 하고 동일시하게 된다고 한다.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인지 행동적 관점 또한 가해자의 정신 병리학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의 원인이 가해자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성폭력을 개인적 문제로 축소함으로써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놓치게 된다.

## 다. 여성 주의적 관점

여성 주의적 관점은 성폭력의 원인이 여성과 남성의 권력의 불평등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왜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의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여성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수치감, 혹은 무력감을 느끼며 이를 개인적인 일로 간주하며 타인의 반응을 의식하는가에 관한 원인이 남성과의 권력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행위를 둘러싼 맥락을 설명하는데 있어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와 남성의 섹슈얼리티가 문화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성폭력의 맥락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과는 달리 성폭력의 원인이나 발생양식을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규명하려는 시도와 연관이 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성폭력은 합법적인 폭력 즉 목적달성을 위한 하나의 타당한 수단으로서 간주되며 이는

암묵적, 명시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지지되며 사실상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는 성폭력이나 배우자 폭력이 폭력자체로 간주되기 힘들 수 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태도 및 의식은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배런과 스트러스(Baron and Straus)는 폭력의 문화적 지지이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적 전파이론(cultural spillover theory) 을 들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문화 전반에 걸쳐 폭력의 사용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때 이것의 전파효과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Baron and Straus, 1989. 이종인, 2006:152 에서 재인용). 폭력적인 사회에서는 성폭력 또한 허용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이 목적달성을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이러한 행위가 암묵적으로 용납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성폭력을 문제 삼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성폭력도 사회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사건이 되므로 성별 차이와 권력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지 않는다. 특히 물리적 힘의 사용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리고 이것이 성별 불평등과 연결되면 여성에 대한 폭력이 보편적으로 허용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부분 남성에 의해 행해지는 성폭력 행위는 그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고 일부는 학습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alah Brown, 2005. 현혜순 외 2010: 12에서 재인용). 즉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이 개인적 특성보다는 성폭력을 지지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더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는 가부장적 문화에 의한 성별 권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은 폭력을 설명하는데 있어 성별구별, 특히 남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Susan Brownmiller, 1975. 현혜순 외 2010에서 재인용).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통념 역시 남성이 오랫동안 여성을 지배하고 있던 권력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모든 불평등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실제 폭력을 사용하며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은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성적 폭력이라고 규정한다.

특히 급진주의 여성주의자들은 성폭력에 대하여 오랫동안 가부장제로 인해 남성이 성관계(sexuality)나 성 활동을 통해 여성을 지배한다고 설명한다(로즈마리 통, 1995). 가부장제는 문화적 구성물이고 가부장제 틀 안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는 본질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된다. 특히 남성은 성적으로 강한 것이 남성다움이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성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고 여성의 몸을 소비하는 성매매를 쉽게 받아들인다. 뿐만 아니라 성을 수용하는 태도에 있어서 남녀 간의 성 심리에 대한 이해부족이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맥किन(Catharine Mackinnon,1983)에 의하면 강간에서 혹은 근친강간, 성추행, 성매매, 심지어 포르노 에서도 남성은 여성의 성 활동을 점령한다. 섹슈얼리티(sexuality)의 지배는 여성

의 육체를 통해서 달성되고 여성의 성 활동은 남성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인식된다(Catharine Mackinnon, 1983). 맥किन과 드워킨은 포르노가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에 가정한다고 전제하고 남성들이 여성들을 과소평가하게 유도할 뿐 아니라 여성들을 완전치 못한 2급의 시민들로 취급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성과 관련하여 여성을 생생하게 노골적으로 종속시킨 그림이나 여성들을 성적 대상물, 물건, 혹은 상품으로 비인간화시키는 포르노물은 결국 남성에게 의한 여성 지배를 정당화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르노 영상물 또한 남성들이 여성을 몸을 통해 지배하는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 3. 성폭력 피해의 영향

성폭력은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은 물론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외관상 드러나 보이는 신체적인 후유증 이외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 정신적 후유증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과 연관된 다양한 정신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성 피해의 심리적 후유증은 정서영역, 인지각역, 신체영역, 대인관계영역, 행동영역, 성적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정서영역에서 피해자들은 불안, 강박증상, 무기력, 우울증상, 분노감정, 적개심, 수치심, 등이 나타날 수 있다(채규만, 2004, 김정규, 1998, 정국, 2012 등).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치심, 모욕감, 공포와 분노, 신체적 고통에 수반되는 통증, 심한 불안상태 등이 나타나고 극심한 혼돈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불안, 강박증상은 만성적으로 교감신경계의 과잉활동을 보여 위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기상황으로 지각하여 과잉반응을 보이며 그 결과 항상 긴장되어 있고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며 만성피로감을 호소하는 현상이다. 피해자들은 특정자극에 과민반응을 보이며 간혹 폭발적으로 화를 내며 집중력이 떨어져 일상적인 업무를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은 몸을 더럽혀진 것으로 인지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없으며 이러한 생각이 절망감을 넘어 무기력감에 이르게 된다. 또한 무의식에 엄청난 분노와 적개심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감정은 가끔 억압된 분노가 외부로 폭발하거나 내부로 향하여 파괴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사회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우울증이 생기고 자해행위를 하거나 다른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인지각역에서는 해리, 부정, 감정억압, 인지왜곡, 환각현상을 나타내며 신체영역에서는 심인성통증과 수면장애 그리고 왜곡된 신체이미지를 보인다. 성폭력을 당하는 동안 자신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마치 구경꾼이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면서 몸과 마음, 그리고 사건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해리현상(dissociation)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자신들을 분리하려는 모습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성

폭력 사건을 마치 타인에게 일어난 일이나 꿈을 꾸는 것, 혹은 영화를 본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리하여 현실과 비현실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피해자의 이러한 왜곡된 사고들은 피해를 경험한 후에 자신이 스스로를 확대하는 가학적인 사고로 이어져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행위를 하게 되기도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은 이러한 왜곡된 사고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채규만, 2004).

대인관계영역에서는 거부공포와 친밀공포를 나타내며 과잉책임감, 통제행동, 불명확한 자기 경계를 보이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행동을 보인다. 대인관계를 원만히 맺지 못하고 대인관계 문제를 유발하여 삶의 질이 저하된다. 성폭력 경험은 위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기상황으로 지각하여 과잉 공포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잠재적 공포를 피하고자 피해자는 처음부터 경계의 벽을 쌓게 된다. 그리하여 전반적인 생활기능을 떨어뜨리고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되는 성폭력의 후유증으로는 수면장애, 다양한 신체증상 등이 있다. 그러나 몸의 상처가 낫더라도 마음의 상처는 노래 지속된다. 어떤 피해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혼돈스러워하고 사건을 부인하기도 한다.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아봤자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결점으로 치부될 거 같아 고민을 하기도 한다.

행동영역에서는 자해행동, 공격행동, 섭식장애, 등이 나타난다. 자해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상처를 냄으로써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 종종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성폭력을 당할 때 신체적 고통과 함께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는 생각에 그때를 재 경험하는 시도일 수 있다. 피해자들이 자주 보이는 증세 가운데 섭식장애도 있는데 이는 성폭력이 자신의 잘못이고 이를 스스로 처벌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라고 풀이할 수 있다.

성적 영역에서는 왜곡된 성정체감과 성기능장애를 보이고 섹스와 애정을 혼동하며 때로는 과잉의 성행동을 보인다. 성폭력 피해자는 이미 자신이 '더럽혀졌다', '버린 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훼손된 물건 증후군(damaged goods syndrome)을 보일 수 있다. 훼손된 물건 증후군은 자신은 성폭력으로 흠집이 생겼고 여성으로서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문란한 성생활을 하기도 한다.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은 위험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파괴적인 행동에는 약물남용, 자해, 자살시도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을 처벌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을 처벌하려는 행위이거나 성행위에 있어서도 성에 대한 혐오감과 두려움은 성행위를 아예 회피하거나 성행위를 하더라도 불쾌감만 생겨 성적인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

성폭력 현황과 정책동향

- 1. 성폭력 현황
- 2. 성폭력 관련법
- 3. 성폭력 정책동향

## 1. 성폭력 현황

### 가. 전국 현황

최근 전국적으로 성폭력 범죄는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강간 및 강제추행의 발생건수는 총 22,310 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44.4건의 성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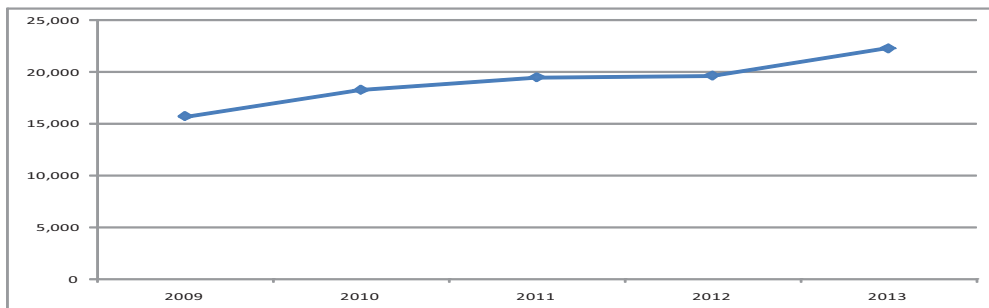
〈표 3-1〉 전국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건수 추이 (단위: 건, %)

구분		발생건수	발생비	검거건수	검거인원
2009		15,693	31.9	14,492	14,630
2010		18,259	37.0	16,125	17,141
2011		19,498	39.2	16,404	17,492
2012		19,670	39.3	16,630	18,012
2013	계	22,310	44.4	19,774	20,375
	강간	5,753	11.5	5,481	5,856
	유사강간	132	0.3	122	136
	강제추행	14,778	29.4	12,525	12,496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1,647	3.3	1,646	1,887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2013.

지난 5년간의 성관련 범죄 발생 추이를 2009년 인구 10만 명당 31.9명에서 2010년에는 37.0명, 2011년 39.2명, 2012년 39.3명, 2013년에는 44.4명에 이른다.

〈그림 3-1〉 전국 성폭력 발생 추이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2013)

한편 2013년 성범죄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가장 많은 56.2%를 차지하였고 강간이 12%,

기타 강간, 강제추행이 7.4%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이나 강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유사강간과 기타 강간, 강제추행이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성폭력 피해자의 총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성폭력 피해자는 15,970명에서 2012년 22,933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중에서 13세 미만 비율은 2008년 7.6%에서 2012년 4.9%로 줄어들었지만(총인원수도 감소함) 이는 반대로 성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성폭력방지 시스템이 아동성폭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성인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3-2〉 전국 성폭력 피해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15,970	17,242	20,375	21,912	22,933
13세미만 아동	1,207	1,007	1,179	1,054	1,123
13세미만 아동비율	7.6	5.8	5.8	4.8	4.9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인 경우가 가장 많아서 2012년의 경우 53%(11,214명)이었고, 그 다음은 지인이 7%(1,458명), 이웃 3%(612명), 친구 3%(585명), 직장 동료 2%(394명), 동거친족 2%(352명), 피고용자 1%(207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전국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명)

구분	전체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가해대상	이웃	지인	타인	기타
2007	14,070	9	58	93	222	293	34	211	99	58	320	830	7,738	3,805
2008	15,235	8	59	102	227	268	371	223	87	66	351	976	7,997	4,500
2009	16,479	11	46	103	241	381	416	260	87	54	348	1,090	8,158	5,284
2010	19,712	11	87	140	239	479	446	331	137	105	507	1,033	9,642	6,555
2011	20,189	13	115	128	225	400	461	294	99	98	464	903	9,921	7,068
2012	21,259	7	98	207	394	585	529	352	184	122	612	1,458	11,214	5,497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전국 성폭력 범죄는 최근 몇 년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유형은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가해자와의 관계는 타인이 가장 많으나 이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지난해(2013) 경찰청의 범죄통계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성관련 범죄 발생건수는 총 511건으로 이를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할 때 약 86.1명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가장 적은 강원도(인구 10만명당 44.2명)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이다. 제주지역의 성폭력 발생률은 또한 전년대비 증가율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3-4> 지역별 성범죄 발생률

(단위 : 건, %)

지역	총인구수	발생건수		10만명당 발생건수 (2013년)	전년도 대비 증가율
		2012년	2013년		
전국	44,805,708	20,510	26,419	58.9	29
제주특별자치도	593,806	285	511	86.1	80
광주광역시	1,472,910	1,005	1,217	82.6	21
서울특별시	10,143,645	6,069	7,462	73.6	23
부산광역시	3,527,635	1,528	2,496	70.8	63
대구광역시	2,501,588	1,093	1,581	63.2	45
대전광역시	1,532,811	601	841	54.9	40
충청남도	2,047,631	840	1,071	52.3	28
전라북도	1,872,965	867	976	52.1	13
경기도	12,234,630	5,181	6,158	50.3	19
울산광역시	1,156,480	417	577	49.9	38
경상북도	2,699,440	829	1,261	46.7	52
충청북도	1,572,732	567	731	46.5	29
전라남도	1,907,172	646	855	44.8	32
강원도	1,542,263	582	682	44.2	17

출처: 인구통계는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3, 성폭력발생건수는 경찰청 「범죄통계」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발생건수를 합한 수치

제주지역의 성범죄 발생현황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228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강간(98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 위반(85건)이 그 뒤를 이었다.

〈표 3-5〉 2013 제주지역 성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

구분	발생건수	(비율)
전체	511	(100.0)
강간	98	(19.2)
유사강간	2	(0.4)
강제추행	228	(44.6)
기타강간·강제추행	57	(11.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기타)	16	(3.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이용촬영)	85	(16.6)
성폭통신매체 등	25	(4.9)

출처: 제주지방경찰청 범죄통계 자료 2013

제주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성폭력 피해자는 2012년에 285명, 2013년 487명으로 집계되어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통계로는 여성이 285명 중 274명으로 약 96.1%, 남성이 3.9%를 차지했고 2013년에는 전체 472명으로 여성이 96.9%, 남성이 3.1%로 나타나 성폭력 피해자가 주로 여성임을 말해준다. 2013년을 기준으로 연령을 살펴보면 15세~20세가 20.7%, 21세~30세가 26.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낸다. 15세 이하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도 약 15%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주로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피해자가 젊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표 3-6〉 제주지역 성폭력 피해자 연령 및 성별 (단위: 명, %)

구분	0-6세	7-12세	12-15세	15-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미상	전체	
전체	2012	4(1.4)	27(9.5)	33(11.6)	72(25.3)	69(24.2)	35(9.8)	28(3.9)	11(3.9)	5(1.8)	1(0.4)	285(100.0)
	2013	4(0.8)	35(7.2)	36(7.4)	105(21.6)	133(27.3)	63(12.9)	62(12.7)	33(6.8)	15(3.1)	1(0.2)	487(100.0)
여자	2012	3(1.1)	25(8.8)	30(10.5)	69(24.2)	69(24.2)	34(11.9)	27(9.5)	11(3.9)	5(1.8)	1(0.4)	274(96.1)
	2013	4(0.8)	35(7.2)	36(7.4)	101(20.7)	128(26.3)	63(12.9)	62(12.7)	28(5.7)	14(2.9)	1(0.2)	472(96.9)
남자	2012	1(0.4)	2(0.7)	3(1.1)	3(1.1)	0(0.0)	1(0.4)	1(0.4)	0(0.0)	0(0.0)	0(0.0)	11(3.9)
	2013	0(0.0)	0(0.0)	0(0.0)	4(0.9)	5(1.0)	0(0.0)	0(0.0)	5(1.0)	1(0.2)	0(0.0)	15(3.1)

출처: 제주경찰청, 내부자료, 2014.

지난해(2013년) 기준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르는 사람이 158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이는 지인(47명), 기타(73명), 이웃이 14명, 친족과 직장동료가 각각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제주지역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 명)

년도	직장동료	지인	친족	이웃	타인	기타	전체
2012	9	51	11	7	110	95	283
2013	11	47	11	14	158	73	314

성폭력 피해 장소는 2013년 기준으로 기타가 가장 많았고 다세대와 단독을 합하여 집 안(77건)과 노상에서 일어난 성폭력 피해가 많았다. 그 다음이 숙박업(38건), 유흥업소(27건), 교통수단(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집안에서 발생하나 노상이나 숙박업, 유흥업소에서도 다수 발생한다.

〈표 3-8〉 제주지역 성폭력 피해 장소 (단위: 건)

년도	다세대	단독	노상	숙박업	유흥업	교통수단	학교	기타	전체
2012	20	58	39	24	21	6	5	112	285
2013	66	11	68	38	27	18	8	134	495

## 2. 성폭력 관련법

성폭력에 관한 규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였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성폭력은 여성 개인의 문제일 뿐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1995년 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강간과 추행의 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었고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어 성폭력 범죄의 강력한 처벌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 마련되기에 이른다. 이는 성범죄를 여성의 정조의 문제가 아닌 국민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차원의 문제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2010년에는 성폭력 관련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0년 개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해마다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범죄의 내용이 심각해져 가는 현상을 감안해 성범죄의 처벌강화와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친족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하여 친족 범위를 확대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처벌을 강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았으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명시하였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2012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내용의 형법 및 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법률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되어 있다. 개정된 형법에는 친고죄를 폐지하여 피해자의 고소의사나 가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합의를 위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세상에 알리는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성범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의 보호대상이 여성만이 아님을 명시하여 남성 혹은 동성 간의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sup>1)</sup>. 이와 더불어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여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에 대응하였다. 구체적인 성폭력 관련법의 개정내용은 <표 3-9>와 같다.

<표 3-9> 성폭력 관련법의 주요 개정내용

법률	주요내용
형법	· 성폭력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
	· 친고죄 조항 삭제
	· 구강성교 등 유사강간죄 신설
	·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친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 ‘동거하는 친족’ 포함 ※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 장애인,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
	· 공중화장실 등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
	· 친고죄 조항 삭제
	· 음주·약물로 인한 감경·임의적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확대 ※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전체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
	· 진술조력인 제도 신설 ※ '13.6.19.부터 양성, '13.12.19.부터 수사·재판과정 참여
	· 법원에 증인지원시설, 증인지원관 설치·운영
	· 신상정보 등록관리 법무부로 일원화
	· 성인 대상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소급
	·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범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등을 추가
	· 경찰 등 신상정보 접수기관이 직접 대상자의 사진 촬영
	· 경찰이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변경 및 진위 여부 확인
	· 등록정보 제출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변경정보 제출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 성인 대상 성범죄자 등록정보 관리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 맞춤형 처분 등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 전 조사’ 확대	

1)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3. 6. 19.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 일제히 시행”

	· 성범죄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500시간 범위 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를 “알면서 소지”한 것으로 개정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상향 (강간의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 상향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악물로 인한 감경 임의적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확대
	· 맞춤형 처분 등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 전 조사’ 확대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수령대상자 확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자치센터의 장,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장 등 추가)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확대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살인·성폭력·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
	· 수신자로 긴급 열람 및 사후허가 절차 마련
	·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 간 ‘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 공유체계’ 마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학교의 장 등에게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의무 부과
	·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설치·운영
	·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배포 및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통한 홍보영상 송출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로 구분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 연장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지정 근거 마련 및 민간 교육훈련시설 신고제 도입	

출처: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3. 6. 19.

### 3. 성폭력 정책동향

#### 가. 국외 정책 동향

##### 1) 미국

미국은 1994년 여성성폭력방지법(VAWA: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이 채택되면서 ‘여성성폭력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광범위한 여성 폭력에 대처하는 것이었다. 이 법은 스토킹 범죄, 이주여성의 대한 테러, 일반여성에게 대한 신체적 안전 및 성적 폭력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연방 법률이었다(Meyer-Emerick, 2001. 심영희 2004에서 재인용).

이후 2000년에 이르러서 VAWA를 개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을 확

장하였다. 1) 데이트 폭력의 대하여 재규정, 2) 각 주의 경계성을 넘는 가정폭력에 대한 규정을 마련, 3) 주 경계선을 넘는 스토킹 규정을 새롭게 정비, 4)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조 규정, 5) 구타여성 및 아동에 대한 피난처를 마련, 6)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시 주택을 보조, 7) 전국가정폭력 전화를 재정비, 8) 폭력 가해자를 체포하는 정책을 격려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9) 여성폭력을 지원하고 대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10) 여성폭력 관련 연구, 11) 강간 예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들이었다(심영희 2004: 89).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여성인권을 강조하고 차별받는 소수인을 배려하는 여성 주의적 사고가 정책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국 법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USDOJ)에서는 여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여성폭력과 관련된 강력범죄에 경찰이나 검찰을 비롯하여 형사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의무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이성은. 2011).

## 2) 호주

호주는 1980년대 후반에 여성지위청에 연방과 주의 가정폭력조정팀(The Commonwealth/State Domestic Violence Coordinating Task Force)을 만들었고 1987년에 전국가정폭력교육 프로그램(Australia, Commonwealth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 2000)을 발표하였다. 이는 남성권력에 대한 여성보호의 차원이었다. 연방정부는 주 수준의 법에 통일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고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폭력과 강간문제를 포함하는 입법모델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이후 90년대에 들어서는 원주민과 소수민족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며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90년대 호주정부는 263개의 피난처와 60-70개의 성폭력 위기센터, 50개의 상담서비스에 재정지원을 하여 폭력피해 여성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였다(심영희. 2004). 호주정부는 피난처, 위기센터, 대중교육, 법적도움, 주택보조, 상담 및 여성폭력에 대한 연구 등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폭력의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만성적인 폭력을 줄이기 위해 호주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장애여성, 이주여성, 취약계층에서 보호 중인 여성, 성적 소수자, 관료집단, 학자 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얻어 「2009-2021,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감소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정책의 목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법안이 본래의 의도대로 실현되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여성과 아동에게 적절하면서 평등한 본래의 사법처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법률적 배상에 있어 형법과 안전에 대한 우선권이 동시에 작동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또한 법률적 처리에 있어 여성과 아동에 대한 우선권을 보장해주며 사법부 경찰, 검찰 등의 법집행기관과 법률전문가들로 하여금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사회전반에 만연한 문제임을 감안해 명확하고 지속적인 행동강령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1)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대다수의 희생자들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2)인종, 섹슈얼리티(sexuality) 계급, 장애인 등의 다양성과 젠더 평등성을 보장하도록 다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3) 호주의 여성과 남성, 지역사회와 조직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며, 4)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경험에 대처해야 하며, 5)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켜 보다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되고 접근 가능한 서비스의 제공을 증대시켜야 하고, 6) 범죄자들의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전략에 초점을 두고, 7)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성공한 사례들을 조명해서 국가전체의 성공사례를 증가시키도록 하였다. 호주의 폭력방지정책의 가장 큰 특성은 전 지구적 수준과 국가전체의 수준 및 주정부와 지역경찰의 수준별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장미혜, 2011)는 것이다.

### 3) 영국

영국의 성폭력 관련 정책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영국은 유엔 협정에 근거하여 여성폭력 방지 정책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 의료기관과의 협조아래 성폭력연계센터 SARC (Sexual Assault Referral Center)를 만들어 일종의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마련했다. 1996년에는 시민단체의 주도로 잉글랜드·웨일즈 강간위기센터연합(The Rape Crisis Federation of Wales and England)이 창설되었고 영국 정부는 범죄경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곳에 기금을 지원하였다(신상숙, 2007). 영국의 성폭력 관련 법제도는 성적인 폭력과 학대는 2004년에 마련된 성 범죄법(Sexual Offenders Act)에 근거하고 성매매와 성적 착취와 관련된 정책은 2009년에 발의된 「The Policing and Crime Act」에 따르고 있다.

현재 영국 정부는 평등부(Government Equality Office) 내에 부서를 두고 성적폭력과 학대(Sexual Violence and Abuse), 성매매 성적착취(Prostitution and sexual Exploitation) 등 주요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이성은, 2011). 아울러 다양한 정부부처와 민·관의 협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민간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여성위원회 WNC(Women's National Commission)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중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일을 포함한다.

## 4)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양성평등정책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문화부(Department of Heritage) 산하의 여성지위청이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여성지위청은 주정부의 여성정책부서 담당자들과 매년 여성담당장관 회의를 열어 양성평등정책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김원홍, 2009).

여성지위청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연방 수장 직속으로 범죄 피해자 옴부즈만이 설치되어 연방정부 내의 피해자 보호업무를 총괄하며, 연방법무성에는 피해자정책센터(The Policy Center for Victim Issue)를 설치하여 연방 법률과 정책이 피해자 관점에서 제정되고 수립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형사절차상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한다. 연방 공공안전부(Public Safety Ministry)에는 피해자지원실(National Office for Victim)을 설치하고 경찰, 연방가석방위원회, 연방교정청의 피해자보호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정부 피해자 보호지원과 부처간의 협의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어린이피해자보호, 범죄피해보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형재, 2012).

캐나다의 성 범죄자 관련 프로그램은 북미대륙 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을 만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양형강화, 구금초기단계에서부터 과학적 방법에 의한 재범위험성 및 치료필요성 평가, 고정시설 구금 중 강도 높은 치료 프로그램의 적용, 규정가석방 등을 통한 강한 사후통제, 가택구금형 전자감시, 위치추적형 전자감독, 형기종료 후 감독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성폭력범에 대한 재범통제와 치료, 사회복귀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교육에 있어서도 연령에 맞는 성교육과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한 성교육, 건강한 성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기본 철학을 제공하고 있다(Health Canada, 2003).

이상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성폭력 관련 정책을 알아보았다. 각 나라들의 정책에서 볼 수 있는 시사점은 각 나라의 제도와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을 제정하고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개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민-관의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여성을 포함한 소수집단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 나. 국내 정책 동향

국내 성폭력 관련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잘 나타나 있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7개의 정책과제 중 세 번째 과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인권보장’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과제내용은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 여성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그동안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와 서비스의 지속적인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미약한 점을 이유로 지원체계와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친족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하며 생계와 주거지원을 포함한 자립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확충,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지원과 전문치료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지원체계의 효과적 운영 방안도 모색하였다. 아울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의료 및 심리치료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성폭력 친고죄 폐지에 따른 법률지원을 강화하였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 정책도 마련되었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희롱, 성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였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방지를 내실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강사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자료 보급 및 교육방법을 다양화하였다. 또한 임용 전 경찰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등의 교육과정에 반영을 추진하였다. 성희롱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음식점, 서비스업종 등 성희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구제의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도 검토되었다.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실효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개정하고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과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 양성 및 운영체계를 내실화하고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담당자의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성폭력 관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경찰 내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여성경찰 배치를 확대하였다. 성폭력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금지의무 주체에 피고인의 변호인을 추가

할 것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언론과 인터넷 등에 의한 2차 피해의 근절대책도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에 관한 언론사의 자율적인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가급적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흥미위주의 보도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에서의 언론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며 인터넷 등에 의한 피해자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에 관해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재범방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원화된 신상정보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및 일반인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을 확대하여 성범죄자에 대하여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관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다. 제주지역 정책동향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과 상담소 및 보호·지원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폭력관련시설 운영 지원과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도내 여성폭력 관련 기관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2014. 09).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성·가정폭력 및 성매매 보호시설 5개소, 성·가정폭력 및 성매매 상담소 8개소,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총 15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2014. 09).

제주자치도의 여성폭력방지정책은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여성폭력방지정책이 아닌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제주지역의 여성폭력방지정책이 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폭력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제주여성가족연구원 내부자료).



---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1. 조사방법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 성폭력에 대한 인식
4. 성폭력 피해실태
5. 성폭력 피해의 영향
6. 성폭력에 대한 대응
7. 정책인지도와 정책욕구

## 1. 조사방법

### 가. 조사대상

본 조사는 제주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제주 특별자치도 성폭력 실태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로 정의할 수 있으나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가구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 내에서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기준에 부합되는 적격대상자를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추출된 조사지점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가구는 통계청 가구 정의에 따라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로 규정하고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의 최종 조사대상자는 제주지역에 상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전문면접원의 가구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가구주는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분으로 정하였다. 가구원은 가구주 이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로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가족이라도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되며, 주민등록은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하였다.

### 나. 표본의 설계

표본추출방식은 층화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층화계통추출법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1차 층화하고 다시 각각 동 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층화한 후 각 읍면동에서 인구비례로 조사지점을 정하고 정해진 조사지점에서 계통적 방법으로 가구를 선정하여 그 가구에서 응답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조사기간은 2014년 8월 18일~10월 3일까지 총 7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pm 1.79\%$ p이다.

본 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가 아니므로 가구명부(조사구 요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청 SCIS를 이용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하였다. 통계청 SCIS는 전국 1,300만 장소, 300만 사업장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읍·면·동의 약 1/23 크기인 집계구 단위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집계구 번호 난수를 발생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시, 서귀포시로 층화한 후 2개시를 동 지역 및 읍·면지역으로 층화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제주시의 세부조사 지점수는 총 99개로 제주시 읍·면·동별 표본 수 기준으로 지점별 20명씩을 조사하였고 서귀포시 지역의 조사 지점수는 49개로 서귀포시 읍·면·동별 표본 수 기준으로 지점별 20명씩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의 조사 표본은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조사 표본

(단위: 명)

구분	전체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제주특별자치도	3,000	167	217	154	293	349	543	282	315	289	391
제주시	1,984	125	159	98	193	241	370	178	204	177	239
한림읍	96	5	1	7	6	4	14	8	21	9	21
애월읍	114	4	5	3	18	29	38	7	5	1	4
구좌읍	80	3	6	3	5	9	18	5	5	12	14
조천읍	96	10	10	3	7	10	23	17	14	0	2
한경면	62	0	0	4	3	10	4	16	3	12	10
일도1동	40	0	7	0	2	7	8	2	3	5	6
일도2동	124	7	6	2	13	23	49	8	11	2	3
이도1동	60	2	7	5	6	7	10	3	5	7	8
이도2동	144	11	21	6	19	9	25	5	16	14	18
삼도1동	79	8	10	1	4	11	11	12	14	2	6
삼도2동	66	7	3	3	6	9	8	7	7	7	9
용담1동	61	6	4	4	1	2	2	6	8	14	14
용담2동	88	8	2	2	8	8	8	10	9	17	16
건입동	68	3	10	6	5	4	6	6	9	8	11
회복동	100	3	10	3	11	16	37	5	7	3	5
삼양동	75	10	10	4	7	16	13	6	7	1	1
봉개동	36	1	2	1	9	5	9	2	3	0	4
아리동	94	6	8	3	10	9	16	9	7	5	21
오리동	61	2	6	3	5	10	5	5	3	11	11
연동	137	15	13	12	8	11	19	23	15	9	12
노형동	144	7	13	7	15	16	25	6	15	15	25
외도동	82	1	1	10	18	8	12	4	8	10	10
이호동	42	5	2	3	5	1	4	4	5	8	5
도두동	35	1	2	3	2	7	6	2	4	5	3

(계속)

34 •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실태조사

구분	전체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제주특별자치도	3,000	167	217	154	293	349	543	282	315	289	391
서귀포시 전체	1,016	42	58	56	100	108	173	104	111	112	152
대정읍	84	5	2	5	4	9	17	6	6	8	22
남원읍	87	2	7	8	13	8	14	11	11	5	8
성산읍	78	1	1	3	5	4	6	6	9	21	22
안덕면	64	0	4	7	6	7	15	4	6	5	10
표선면	69	1	3	1	5	7	9	1	8	16	18
송산동	46	4	1	2	3	5	5	5	4	8	9
정방동	35	1	6	1	8	4	5	2	5	1	2
중앙동	45	4	0	2	3	4	4	7	6	7	8
천지동	42	3	5	3	7	3	8	3	4	3	3
효돈동	46	4	3	3	3	5	7	7	8	3	3
영천동	45	0	0	2	7	9	9	3	2	7	6
동홍동	91	4	12	6	8	5	20	9	9	9	9
서홍동	62	7	3	2	3	8	9	8	7	6	9
대륜동	66	2	3	3	10	6	12	11	8	6	5
대천동	56	2	3	0	5	12	14	10	7	0	3
중문동	61	2	2	5	6	6	14	6	6	5	9
예래동	39	0	3	3	4	6	5	5	5	2	6

### 다. 조사내용

본 조사의 내용은 조사대상에 관한 일반현황인 가구구성 현황과 개인관련 사항을 조사하였다. 가구구성 현황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와 가구유형, 월평균 소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개인관련 사항에는 학력, 고향, 취업여부, 직종, 생활만족도, 장애여부 등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표 4-2〉 가구구성 조사내용

영역	세부항목
가구구성표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유형	가구유형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기타	세대구성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 주 소득원
	가구 경제상태

〈표 4-3〉 개인관련 조사내용

영역	세부항목
개인적 특성	학력
	제주특별자치도 거주현황
	고향
취업	본인/배우자 취업여부
	본인/배우자 미취업사유
	본인/배우자 직종
	본인/배우자 종사상의 지위
	본인 주당 평균 근무시간
	본인 월평균 근로소득
	직장만족도 및 구직 어려움 정도
기타	일자리 우선정책
	여성취업지원대상 중 우선 지원대상
	생활 전반적 만족도 및 사회적 지위
	장애여부 및 등급, 장애유형

성폭력 관련 조사항목은 성폭력과 안전에 관한 인식, 성폭력의 피해경험, 성폭력 피해이후 대응방법, 성폭력 관련정책에 관한 요구조사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4-4〉 성폭력 조사 내용

영역	세부항목
안전과 성폭력	안전에 대한 견해
	성 통념 및 성폭력 개념에 대한 견해
	성폭력 관련 법 인지여부 등
	공공 서비스 인지여부
성폭력 피해경험	유형별 피해경험 및 횟수
	유형별 가해자 및 피해 장소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
대응	대응방법
	대응하지 않은 이유
	도움요청기관
	경찰 및 기관서비스 만족도
정책수요	필요한 공공서비스
	성폭력 예방정책

## 라. 조사측정도구

관련 조사항목에 대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성폭력 인식에 대한 측정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성폭력의 개념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문항을 구성하였다. 우선 포괄적으로 성폭력의 개념을 설명하는 문항, 그리고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최근 개정된 법률인 신체부위에 대한 카메라 촬영에 대한 처벌 조항, 그리고 강간 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문항은 여성가족부의 척도(2013)를 축소하여 구성하였고 성폭력의 주요 유형인 강간,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에 관한 개념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성 통념 인식에 대한 측정

성 통념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폭력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개념화하여 각각 2 문항씩 6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첫째, 성폭력이 친밀한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고정 관념 때문에 여성의 행위를 오해하여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2 문항을 구성하였다. 즉 여성은 성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이며 성행위에 대한 표현을 잘 하지 못하므로 이른바 여성의 ‘노우(no)’는 no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견에 동의여부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둘째, 성폭력을 판단할 때 여성이 얼마나 저항했는지에 따라서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태도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두 문항 구성하였다. 셋째,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여성의 태도에서 기인하는, 즉 여성이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생각에 대한 동의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2 문항을 구성하였다.

### 3) 성폭력 피해경험 측정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성폭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폭력을 강간,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의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에 의거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다양한 성적행동 등이 성폭력에 해당되나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성폭력의 정의 중 강간,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의 네 항목으로 축소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는 총 3,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구 및 가족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먼저 거주지 유형은 표본할당에 맞추어 조사되었는데 제주시 동지역이 1,536명(51.2%)으로 가장 많았고, 서귀포시 동지역이 634명(21.1%), 제주시 읍·면지역이 448명(14.9%),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382명(12.7%)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1,503명(50.1%), 여성이 1,497명(49.9%)이다. 연령별로는 만60세 이상이 655명(21.8%), 만40~49세가 635명(21.2%), 만50~59세가 600명(20.0%), 만30~39세가 566명(18.9%), 만19세~29세가 544명(18.1%) 순으로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8.25세이다.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19.9%, 고졸 46.2%, 대졸 이상 33.9%이다. 응답자의 2,373명(79.1%)은 제주가 고향)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92명(3.1%)이고 나머지는 비장애인이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기혼이 2,006명(66.9%)로 대부분 기혼여성이었으며, 미혼 20.3%, 사별 8.2%, 이혼 3.3%, 별거 1.1%, 사실혼(동거)이 0.2%이다.

2) 본 조사 대상자의 학력분포는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수치를 직접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여 (중졸이하 42.2%, 고졸 31.0%, 대졸 26.8%) 약간 차이가 있었다.

3) 본 연구에서 '고향'이란 제주에서 태어나고, 일정 기간을 제주에서 생활한 경험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표 4-5>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3,000	(100.0)
거주지 유형	제주시 동지역	1,536	(51.2)
	제주시 읍면지역	448	(14.9)
	서귀포시 동지역	634	(21.1)
	서귀포시 읍면지역	382	(12.7)
성별	남성	1,503	(50.1)
	여성	1,497	(49.9)
연령	만19세~29세	544	(18.1)
	만30~39세	566	(18.9)
	만40~49세	635	(21.2)
	만50~59세	600	(20.0)
	만60세 이상	655	(21.8)
평균		48.25세	
최종학력	중졸 이하	595	(19.9)
	고졸	1,387	(46.2)
	대졸 이상	1,018	(33.9)
제주고향	제주	2,373	(79.1)
	비제주	627	(20.9)
장애여부	장애인	92	(3.1)
	비장애인	2,908	(96.9)
혼인상태	미혼	609	(20.3)
	기혼	2,006	(66.9)
	사별	246	(8.2)
	이혼	98	(3.3)
	별거	33	(1.1)
	사실혼(동거)	7	(0.2)

○ 응답자의 가구 및 가족특성

응답자의 가구 및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4-6>와 같다. 응답자 중 가구주는 1,544명 (64.6%)이며, 가구유형은 대다수가 비농어가(82.7%)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구성을 보면 2세대가구(50.4%)가 가장 많았으며 1세대(42.0%), 3세대(7.4%), 4세대 이상 및 비친족가구(0.3%)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가구유형을 보면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핵가족 가구가 38.1%, 1인가구가 24.0%, 부부가구가 17.0%, 한부모가구가 9.7%, 3대가 함께 사

는 가구가 7.4%, 조손가구가 0.9%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는 2명이 3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명 이상이 28.7%, 없음 24.1%, 1명 1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자녀 수는 2.67명이다.

〈표 4-6〉 응답자의 가구 및 가족 특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392	(100.0)
가구주여부	가구주	1,544	(64.6)
	가구원	848	(35.4)
농어가 여부	농어가	413	(17.3)
	비농어가	1,979	(82.7)
세대구성	1세대	1,004	(42.0)
	2세대	1,205	(50.4)
	3세대	177	(7.4)
	4세대 이상	2	(0.1)
	비친족 가구	4	(0.2)
가구유형 <sup>4)</sup>	1인가구	575	(24.0)
	부부가구	406	(17.0)
	부부+미혼자녀가구	911	(38.1)
	한부모가구	231	(9.6)
	조손가구	22	(0.9)
	3대가족	177	(7.4)
	기타	70	(2.9)
자녀수	없음	723	(24.1)
	1명	399	(13.3)
	2명	1,017	(33.9)
	3명이상	861	(28.7)
	평균		2.67명

주: 자녀수의 사례수는 3,000명.

이상에서 본 연구의 실태조사 표본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소개하였다. 표본의 대표성 확인을 위해 제주 지역의 가구 및 가족의 특징과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 지역의 1인가구, 부부가구,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한부모 모자가구, 한부모 부자가구 조손가구는 전체 가구의 24.0%, 15.9%, 35.4%, 7.3%, 2.4%, 0.9%로 분포되어 있다. 본 조사에

4) 본 조사의 세대별 가구유형은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집계된 비율(1인가구 24.0%, 부부가구 15.9%, 부부와 미혼자녀가구 35.4%, 한부모가구 9.6%, 조손가구 0.9%)와 유사하게 표집되었다.

서는 이상의 가구가 각각 24.0%, 17%, 38.1%, 7.6%, 2.0%, 0.9%로 부부 및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가 평균보다 다소 과표집 되었으나 나머지는 제주 지역의 평균과 비슷한 분포로 표집 되었다.

### 3. 성폭력에 대한 인식

#### 가. 범죄피해의 두려움

제주지역 도민들이 평소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2012년 기준, 13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의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제주 여성은 12.0%만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위험에 대해서는, 제주 여성의 7.3%만이 '안전'하다고 인식하였다. 제주 여성의 사회안전과 범죄위험 안전에 대한 인식은 12.0%로 전국 여성(11.4%)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위험에 있어서는 제주 여성의 67.4%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서, 제주지역의 여성들이 평소 범죄위험에 대하여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제주지역의 성별 안전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전반적인 사회 안전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		
	안전함	보통	불안함	안전함	보통	불안함
여성	12.0	54.8	33.3	7.3	25.3	67.4
남성	15.7	60.3	24.0	11.8	31.5	56.7
(전국)여성	11.4	48.1	40.6	6.8	23.8	69.4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12.

#### 나. 조사대상자의 범죄피해의 두려움

조사 대상자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두렵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각 항목별로는 '밤늦게 귀가 하거나 택시 탈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두렵다' 의 항목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각각 26.7%, 19.7%로 나타났다. '길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두렵다'는 응답은 27.2%이고 '평소에 성폭행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는 의견은 9.6%로 나타나 10명중

한 사람 정도는 평소 성폭행 피해의 두려움을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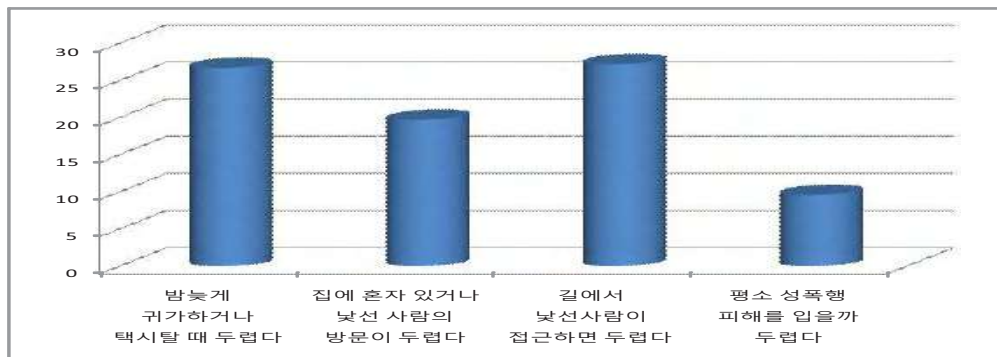
〈표 4-8〉 조사대상자의 범죄피해의 두려움

(단위: 명, %)

구분	그렇다	아니다	전체
밤늦게 귀가하거나 택시탈 때 두렵다	801(26.7)	2,199(73.3)	3000(100.0)
집에 혼자 있거나 낯선 사람의 방문이 두렵다	592(19.7)	2,408(80.3)	3000(100.0)
길에서 낯선사람이 접근하면 두렵다	816(27.2)	2,184(72.8)	3000(100.0)
평소 성폭행 피해를 입을까 두렵다	289(9.6)	2,711(90.4)	3000(100.0)

$\chi^2$ 값은 Chi-Square test, \*\*\*p<.001

〈그림 4-1〉 범죄피해의 두려움



### 1) 성별 범죄피해의 두려움

성별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여성은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최소 5배 이상 범죄피해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항목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밤늦게 귀가 하거나 택시 탈 때 두려움을 느낀다' 항목이 47.7%,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두렵다' 항목에서는 33.5%, '길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두렵다' 에서는 45.7%, '평소에 성폭행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는 의견은 16.9%로 나타났다. 여성은 모든 항목에서 전체 응답자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한 결과 '밤늦게 귀가 하거나 택시 탈 때 두려움을 느낀다' 5.7%,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두렵다' 는 의견이 6.1%, '길에서 낯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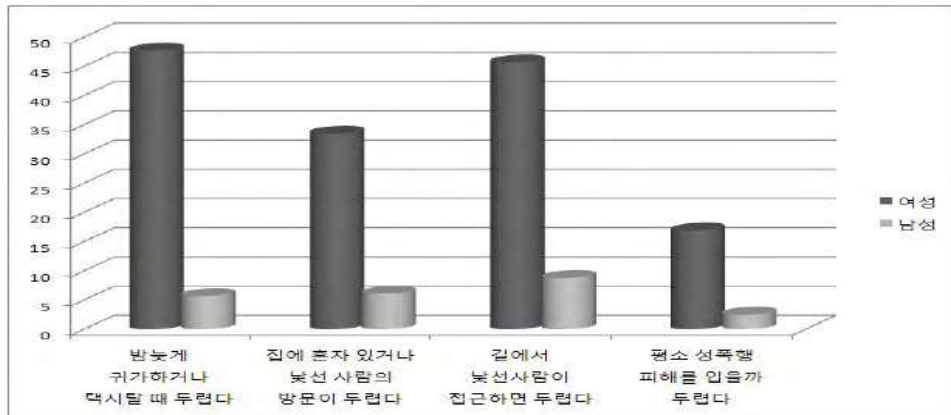
사람이 접근하면 두렵다가 8.8%로 나타났고 '평소에 성폭행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는 의견이 2.5%로 나타났다. 남성은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는 응답 비율에서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9> 성별 범죄피해의 두려움 (단위 : 명, %)

구분	여성 (N=1497)		남성 (N=1503)		전체 (N=3,000)		χ²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밤늦게 귀가하거나 택시탈 때 두렵다	714(47.7)	783(52.3)	86(5.7)	1,417(94.3)	801(26.7)	2,199(73.3)	675.678***
집에 혼자 있거나 낯선 사람의 방문이 두렵다	502(33.5)	995(66.5)	91(6.1)	1,412(93.9)	592(19.7)	2,408(80.3)	357.091***
길에서 낯선사람이 접근하면 두렵다	665(45.7)	1,497(54.3)	132(8.8)	1,371(91.2)	816(27.2)	2,184(72.8)	515.966***
평소 성폭행 피해를 입을까 두렵다	253(16.9)	1,244(83.1)	37(2.5)	1,466(97.5)	289(9.6)	2,711(90.4)	179.057***

χ²값은 Chi-Square test, \*\*\*p<.001

<그림 4-2> 성별 범죄피해의 두려움



## 2) 지역별 범죄피해의 두려움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제주시 동지역이나 읍·면지역 보다는 서귀포시 동지역이나 읍·면지역 주민들이 덜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는 '밤늦게 귀가하거나 택시탈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는 항목에 제주시 동지역(28.5%)과 제주시 읍·면지역(28.6%), 서귀포시 읍·면지역(28.3%)이 약 2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서귀포시 동지역은 20.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서귀포시 동지역이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비해 이 항목에서 범죄피해 두려움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지역별 범죄피해의 두려움

(단위 : 명, %)

구분	제주시 동지역 (N=1536)		제주시 읍·면지역 (N=448)		서귀포시 동지역 (N=634)		서귀포시 읍·면지역 (N=382)		χ <sup>2</sup>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밤늦게 귀가하거나 택시탈 때 무손일이 생길까봐 두렵다	437(28.5)	1,099(71.5)	128(28.6)	320(71.4)	128(20.2)	506(79.8)	108(28.3)	274(71.7)	17.421**
집에 혼자 있거나 낯선 사람의 방문이 두렵다	329(21.4)	1,207(78.6)	84(18.8)	364(81.3)	102(16.1)	532(83.9)	77(20.2)	305(79.8)	8.391*
길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두렵다	423(27.5)	1,113(72.5)	125(27.9)	323(72.1)	158(24.9)	476(75.1)	110(28.8)	272(71.2)	2.355
평소 성폭행 피해를 입을까 두렵다	188(12.2)	1,348(87.8)	46(10.3)	402(89.7)	24(3.8)	610(96.2)	31(8.1)	351(91.9)	38.109***

χ<sup>2</sup>값은 Chi-Square test, \*p<.05, \*\*p<.01, \*\*\*p<.001

지역별 안전에 관한 항목별 인식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두렵다’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는 응답은 제주도 동지역(21.4%), 서귀포시 읍·면지역(20.2%), 제주도 읍·면지역(18.8%), 서귀포시 동지역(16.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 동지역 주민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반면, 서귀포시 동지역 주민들이 가장 두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길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두려움을 느낀다’

지역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그렇다’ 라는 응답이 서귀포시 읍·면지역(28.8%)이 가장 높았고 서귀포시 동지역(24.9%)이 가장 낮았다.

#### ○ ‘평소에 성폭행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지역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라는 응답은 제주도 동지역(12.2%)과 제주도 읍·면지역(10.3%) 거주자들이 서귀포시 동지역(3.8%)과 서귀포시 읍·면지역(8.1%) 거주자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한 결과 ‘길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두렵다’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항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타 지역에 비해 서귀포시 동지역 주민들이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낮아 타 지역에 비해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연령별 범죄피해의 두려움

연령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한 결과는 <표 4-10>과 같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젊은 20~30대 연령이 50~60대 보다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조사결과 '밤늦게 귀가하거나 택시를 탈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라는 응답내용에 대하여 연령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만 19세~29세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38.8%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60세 이상 연령이 1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1> 연령별 범죄피해의 두려움 (단위: 명, %)

구분	만 19세-29세 (N=544)		만 30세-39세 (N=566)		만 40세-49세 (N=635)		만 50세-59세 (N=600)		60세 이상 (N=655)		χ <sup>2</sup>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밤늦게 귀가하거나 택시탈 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다	211(38.8)	333(61.2)	187(33.0)	379(67.0)	173(27.2)	462(72.8)	136(22.7)	464(77.3)	93(14.2)	562(85.8)	109.703***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	186(34.2)	358(65.8)	130(23.0)	436(77.0)	134(21.1)	501(78.9)	89(14.8)	511(85.2)	54(8.2)	601(91.8)	139.782***
길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두렵다	205(37.7)	339(62.3)	174(30.7)	392(69.3)	184(29.0)	451(71.0)	142(23.7)	458(76.3)	112(17.1)	543(82.9)	72.267***
평소 성폭행 피해를 입을까 두렵다	86(15.8)	458(84.2)	70(12.4)	496(87.6)	68(10.7)	567(89.3)	43(7.2)	557(92.8)	22.4(3.4)	633(96.6)	63.352***

χ<sup>2</sup>값은 Chi-Square test, \*\*\*p<.001

연령별 범죄피해의 두려움에 관한 항목별 인식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

연령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만 19세~29세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34.2%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60세 이상 연령이 8.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길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두려움을 느낀다'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만 19세~29세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37.7%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60세 이상 연령이 8.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평소에 성폭행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조사결과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만 19세~29세가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15.8%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60세 이상 연령이 3.4%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폭력 피해의 두려움을 포함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여부를 묻는 조사 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연령이 높을수록 두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성폭력 피해경험자의 범죄피해의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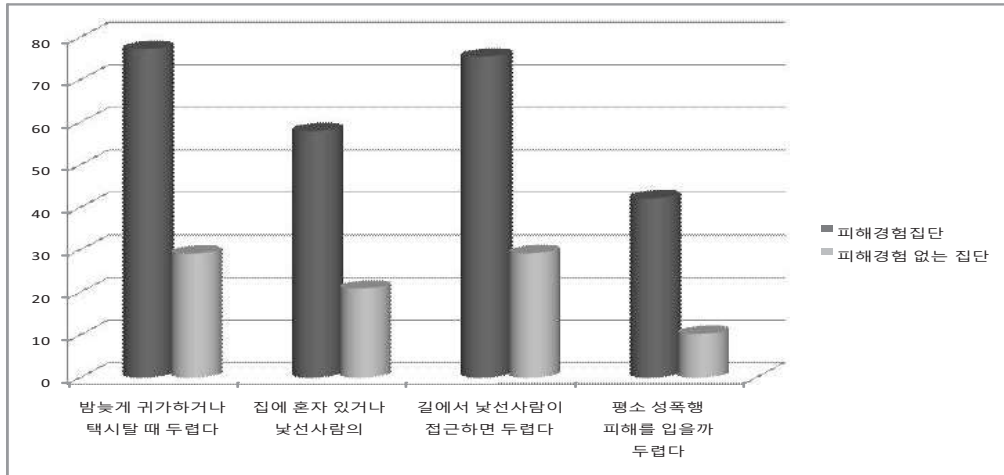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과 피해 경험이 없는 집단과 비교한 결과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집단이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범죄 피해의 두려움이 모든 항목에서 최소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소 성폭행 피해를 입을까 두렵다’는 항목에서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 절반 가까이(42.1%)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이는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표 4-12〉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범죄피해의 두려움

(단위: 명, %)

구분	피해경험집단 (N=57)		피해경험 없는 집단 (N=2923)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밤늦게 귀가하거나 택시탈 때 두렵다	44(77.2)	13(22.8)	857(29.0)	2,096(71.0)
집에 혼자 있거나 낯선사람의 방문이 두렵다	33(57.9)	24(42.1)	614(20.8)	2,339(79.2)
길에서 낯선사람이 접근하면 두렵다	43(75.4)	14(24.6)	860(29.1)	2,093(70.9)
평소 성폭행 피해를 입을까 두렵다	24(42.1)	33(57.9)	299(10.1)	2,564(89.9)

<그림 4-3> 성폭력 경험별 범죄피해 두려움



### 다. 성 통념 인식

조사대상자의 성 통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3개 영역별로 2대의 항목씩 총 6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세 영역은 첫째,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와 둘째, 여성이 얼마나 저항했는지에 따라서 성폭력 여부를 결정하는 인식에 대한 조사, 마지막으로 성폭력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고에 동의하는지를 조사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 통념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 영역에서 각각 두 개의 문항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표 4-12> 와 같다.

<표 4-13> 성 통념 조사 항목

영역	세부항목
친밀한 관계에서 성 역할 오해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자는 속으로는 원하면서 '싫다' 라고 한다.
	여자가 먼저 목을 껴안고 애무하다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
여성의 저항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따라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여성이 성폭력 원인제공	늦은 밤에 혼자 다니는 여자들은 대부분 끼 있는 여자이다.
	여자가 야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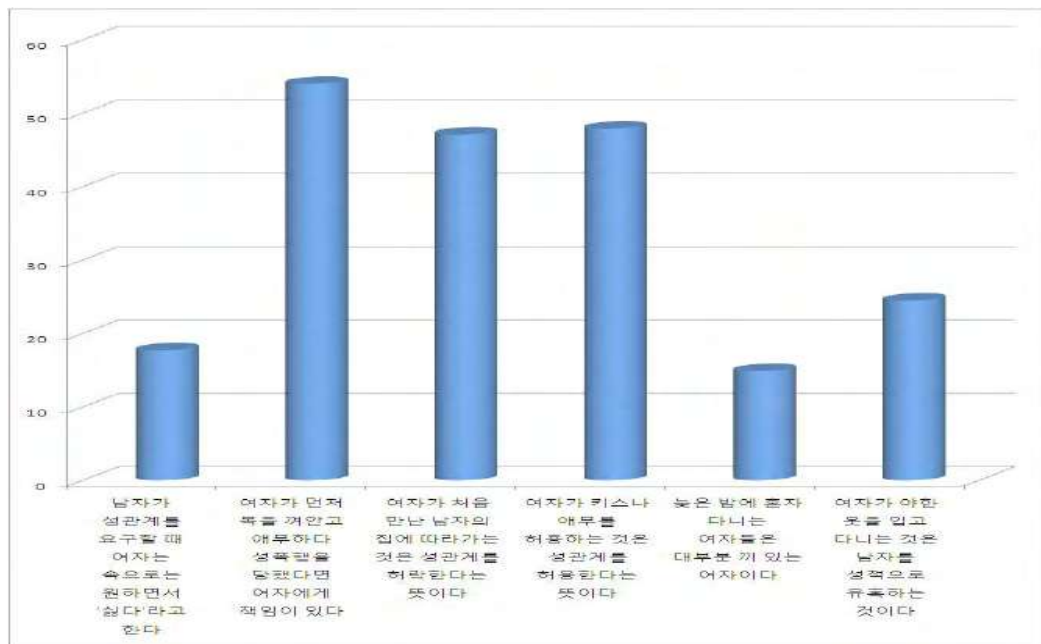
조사결과 '여자가 먼저 목을 껴안고 애무하다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성의 책임이다' 라는

주장에 찬성 비율이 가장 높고(54.0%), 그 다음이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한다’(47.9%), ‘처음 만나는 남자의 집에 따라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47.1%) 이라는 순으로 찬성비율이 높게 나왔다. 반면 ‘늦은밤에 혼자 다니는 여자들은 대부분 끼 있는 여자이다’ 라는 항목에 찬성비율이 14.9%로 가장 낮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성이 성폭력 원인을 제공한다는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을 애매하게 정의하거나 여성의 저항정도에 따라서 성폭력을 정의하는 성 통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14〉 성 통념 인식 (단위 : 명, %)

구분	전체	그렇다	아니다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자는 속으로는 원하면서 '싫다'라고 한다	3,000(100.0)	530(17.7)	2,470(82.3)
여자가 먼저 목을 껴안고 애무하다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	3,000(100.0)	1,621(54.0)	1,379(46.0)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따라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3,000(100.0)	1,413(47.1)	1,587(52.9)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3,000(100.0)	1,436(47.9)	1,564(52.1)
늦은 밤에 혼자 다니는 여자들은 대부분 끼 있는 여자이다	3,000(100.0)	447(14.9)	2,553(85.1)
여자가 야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이다	3,000(100.0)	736(24.5)	2,264(75.5)

〈그림 4-4〉 성 통념 인식



○ 성별 성 통념 인식

각 항목별로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자는 속으로는 원하면서 '싫다' 라고 한다라는 질문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응답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20.8%, 여성이 14.5%로 나타나 성행위에 있어 남성들이 여성의 의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자가 먼저 목을 껴안고 애무하다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 응답내용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58.3%, 여성이 49.8%로 나타나고 있다.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따라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라는 질문에 응답한 내용도 성별에 따라서 응답내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이 52.2%, 여성이 42.0%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의 행위를 오해함으로써 성폭력이 일어나는 현상이 조사결과에도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뜻이다'라는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성별로 분석해보면 여성이 44.3%, 남성이 51.4%가 찬성하였고 성별에 따라서 응답내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15> 성별 성 통념 인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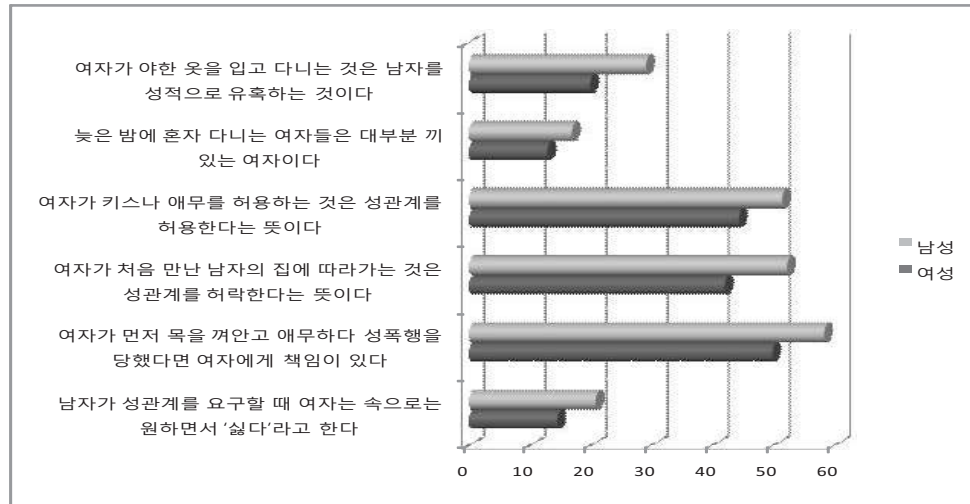
구분	여성 (N=1,503)		남성 (N=1,497)		χ <sup>2</sup>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자는 속으로는 원하면서 '싫다'라고 한다	217(14.5)	1280(85.5)	313(20.8)	1190(79.2)	20.656***
여자가 먼저 목을 껴안고 애무하다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	745(49.8)	752(50.2)	876(58.3)	627(41.7)	21.905***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따라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628(42.0)	869(58.0)	785(52.2)	718(47.8)	31.800***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663(44.3)	834(55.7)	773(51.4)	730(48.6)	15.330***
늦은 밤에 혼자 다니는 여자들은 대부분 끼 있는 여자이다	193(12.9)	1304(87.1)	254(16.9)	1249(83.1)	9.497**
여자가 야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이다	298(19.9)	1199(80.1)	438(29.1)	1065(70.9)	34.550***

χ<sup>2</sup>값은 Chi-Square test, \*\*p<.01, \*\*\*p<.001

'늦은 밤에 혼자 다니는 여자들은 대부분 끼 있는 여자이다'는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이 '그렇다(16.9%)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12.9%)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자가 야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이다' 라는 항목에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이 29.1%, 여성이 19.0%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성폭력의 원인

을 제공한다는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두 항목에서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아 왜곡된 성 통념을 더 많이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5〉 성별 성 통념 인식



## 라. 성폭력 인식

### 1) 성폭력 인식

성폭력 개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포괄적 성폭력 개념에 관한 문항과,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강간을 정의하는 문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무엇이 성폭력인지에 대한 조사결과 각 항목에서 대부분 '성폭력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강요하는 행위'가 '성폭력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4.1%로 가장 높았고 '성행위 도중 중단을 요구 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는 행위'가 성폭력이다 라는 응답은 75.5%로 가장 낮게 나타나 일단 성행위가 시작하면 성폭력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6> 성폭력 인식

(단위: 명, %)

구분	성폭력이다	아니다	전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정신적 행위	2,514(83.8)	486(16.2)	3000(100.0)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음담패설로 수치심을 자극, 또는 일방적으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행위	2,723(90.8)	277(9.2)	3000(100.0)
원치 않는 사람의 가슴, 엉덩이, 상기부위 등을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위, 또는 몸을 밀착하는 행위	2,725(90.8)	275(9.2)	3000(100.0)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강요하는 행위	2,822(94.1)	178(5.9)	3000(100.0)
성행위 도중 중단을 요구 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는 행위	2,266(75.5)	734(24.5)	3000(100.0)

<그림 4-6> 성폭력 인식



## 2) 성별 성폭력 인식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성폭력이라고 인지하는 비율이 낮았고, 특히 성행위 도중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는 행위가 성폭력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성별 격차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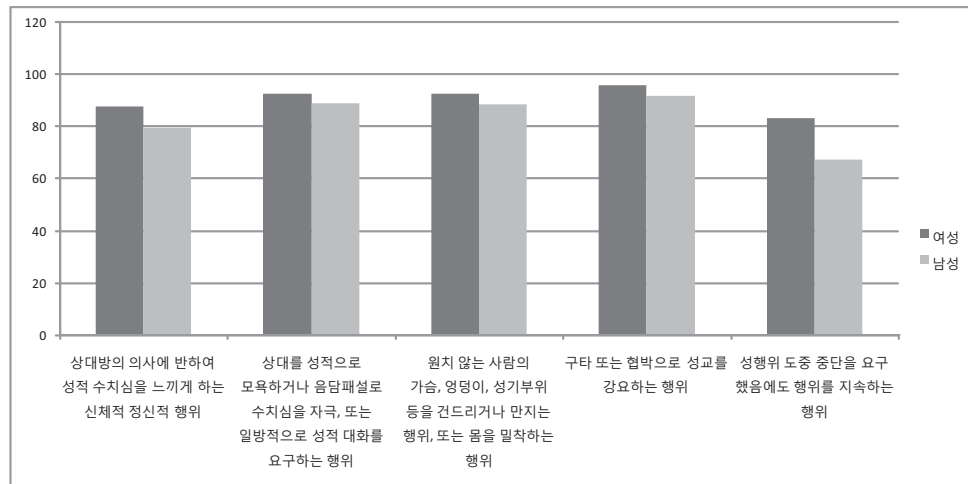
〈표 4-17〉 성별 성폭력 인식

(단위 : 명, %)

구분	여성 (N=1,503)		남성 (N=1,497)		전체		χ <sup>2</sup>
	성폭력이다	아니다	성폭력이다	아니다	성폭력이다	아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정신적 행위	1,315(87.8)	182(12.2)	1,199(79.8)	304(20.2)	2,514(83.8)	486(16.2)	35.966***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음담패설로 수치심을 자극, 또는 일방적으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행위	1,387(92.7)	110(7.3)	1,336(88.9)	167(11.1)	2,723(90.8)	277(9.2)	12.672***
원치 않는 사람의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 등을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위, 또는 몸을 밀착하는 행위	1,390(92.9)	107(7.1)	1,335(88.8)	168(11.2)	2,725(90.8)	275(9.2)	14.629***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강요하는 행위	1,438(96.1)	59(3.9)	1,384(92.1)	119(7.9)	2,822(94.1)	178(5.9)	21.246***
성행위 도중 중단을 요구 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는 행위	1,249(83.4)	248(16.6)	1,017(67.7)	486(32.3)	2,266(75.5)	734(24.5)	100.913***

χ<sup>2</sup>값은 Chi-Square test, \*\*p<.01, \*\*\*p<.001

〈그림 4-7〉 성별 성폭력 인식



성폭력 개념에 대한 항목별 인식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정신적 행위’

남성이 79.8% 이고 여성이 87.8%가 성폭력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성별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음담패설로 수치심을 자극, 또는 일방적으로 성적 대



### 화를 요구하는 행동'

'성폭력이다' 라고 응답한 의견은 남성이 88.9%, 여성이 92.7%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별에 따라서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 '원치 않는 사람의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 등을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위, 또는 몸을 밀착하는 행위'

'성폭력이다' 라는 의견에 찬성한 비율이 남성이 88.8%, 여성이 92.9% 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의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강요하는 행동'

'성폭력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92.1%, 여성이 96.1%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 '성행위 도중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는 행동'

'성폭력이다' 라고 응답한 대상은 남성 응답자가 67.7%, 여성이 83.4%로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더 높은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 3) 연령별 성폭력 인식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항목별로 '성폭력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성폭력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 성폭력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 19세~29세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정신적 행위'와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음담패설로 수치심을 자극, 또는 일방적으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강요하는 행위' 가 '성폭력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치 않는 사람의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 등을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위, 또는 몸을 밀착하는 행위' 가 '성폭력'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은 40~49세였다.

<표 4-18> 연령별 성폭력 인식

(단위 : 명, %)

구분	만19세-29세 (N=544)		만30세-39세 (N=566)		만40세-49세 (N=636)		만50세-59세 (N=600)		만60세 이상 (N=655)		전체 (N=3,000)	χ <sup>2</sup>
	성폭력이다	아니다	성폭력이다	아니다	성폭력이다	아니다	성폭력 이다	아니다	성폭력이다	아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정신적 행위	488 (89.7)	56 (10.3)	470 (83.0)	96 (17.0)	541 (85.2)	94 (14.8)	501 (83.5)	99 (16.5)	513 (78.3)	142 (21.7)	3,000 (100.0)	29.605***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음담패설로 수치심을 자극, 또는 일방적으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행위	508 (93.4)	36 (6.6)	519 (91.7)	47 (8.3)	574 (90.4)	61 (9.6)	549 (91.5)	51 (8.5)	573 (87.5)	82 (12.5)	3,000 (100.0)	13.953**
원치 않는 사람의 가슴, 엉덩이, 상기부위 등을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위, 또는 몸을 밀착하는 행위	487 (89.5)	57 (10.5)	509 (89.9)	57 (10.1)	589 (92.8)	46 (7.2)	554 (92.3)	46 (7.7)	587 (89.6)	68 (10.4)	3,000 (100.0)	7.300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강요하는 행위	528 (97.1)	16 (2.9)	532 (94.0)	34 (6.0)	608 (95.7)	27 (4.3)	552 (92.0)	48 (8.0)	601 (91.8)	54 (8.2)	3,000 (100.0)	22.682***
성행위 도중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는 행위	415 (76.3)	129 (23.7)	440 (77.7)	126 (22.3)	477 (75.1)	158 (24.9)	426 (71.0)	174 (29.0)	508 (77.6)	147 (22.4)	3,000 (100.0)	9.840*

χ<sup>2</sup>값은 Chi-Square test, \*p<.05, \*\*p<.01, \*\*\*p<.001

각 항목에 따라 성폭력 인식에 대한 연령별 응답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정신적 행위’

‘성폭력이다’ 라는 응답은 20대(89.7%), 40대(85.2%), 50대(83.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폭력이 아니다’ 라는 응답은 60대이상(21.7%), 30대(17.0%), 50대(16.5%)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음담패설로 수치심을 자극, 또는 일방적으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행위’

‘성폭력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 연령은 20대(93.4%)이고 그 다음으로 30대(91.7%), 50대(91.5%)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폭력 이 아니다’ 라는 응답은 60대이상(12.5%), 40대(9.6%), 50대(8.5%)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에 따라서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원치 않는 사람의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 등을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위,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

'성폭력이다' 라는 응답은 40대(92.8%), 50대(92.3%), 30대(89.9%)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성폭력이다' 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었다.

○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강요하는 행동'

'성폭력이다'라고 응답한 연령에 따라서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이다'라는 응답은 20대(97.1%), 40대(95.7%), 30대(94.0%)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60대이상(8.2%), 50대(8.0%), 30대(6.0%)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성행위 도중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는 행동'

'성폭력이다' 라는 의견이 연령에 따라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이다'라는 응답(75.5%)이 지배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폭력이다'라는 응답은 30대(77.7%), 60대이상(77.6%), 20대(76.3%)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50대(29.0%), 40대(24.9%), 20대(23.7%)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4. 성폭력 피해 실태

##### 가.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 특징

성폭력의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한번이라도 성폭력을 경험한 대상자는 57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자의 약 1.9%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의 성폭력을 경험한 사례수는 2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0.8%를 차지했다.

성폭력 유경험자는 거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여성이 96.5%를 차지했고 남성도 2명(3.5%) 있었다. 연령은 40대가 41.8%, 30대가 27.3%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20대(23.6%), 50대, 60대(각각 3.6%) 순으로 나타나 40대 여성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본 조사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40대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가구를 방문하여 1:1 면접 조사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남성 유경험자를 제외한 여성 유경험자의 혼인상태는 기혼(60.0), 미혼(30.9%), 이혼/별거(7.3%), 사별(1.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38.6%), 대졸(56.1%)이 대부분이었고 취업상태는 취업이 59.6%, 미취업이 40.4%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 중 대졸이상 학력비율이 높은 이유는 학력이 높을수록 성폭력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한다. 가구 소득은 1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인 경우

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100만원 미만인 8.8%, 500만원 이상도 10.5%를 차지했다.

〈표 4-19〉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57	(100.0)
성별	여성	55	(96.5)
	남성	2	(3.5)
연령	19-29세	13	(22.8)
	30-39세	15	(26.3)
	40-49세	25	(43.9)
	50-59세	2	(3.5)
	60세 이상	2	(3.5)
학력	중졸	3	(5.3)
	고졸	22	(38.6)
	대졸	32	(56.1)
장애여부	장애	1	(1.8)
	비장애	56	(98.2)
취업상태	취업	34	(59.6)
	미취업	23	(40.4)
혼인상태	미혼	17	(29.8)
	기혼	35	(61.4)
	사별	1	(1.8)
	이혼	3	(5.3)
	별거	1	(1.8)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	(8.8)
	100-200만원	10	(17.5)
	200-300만원	16	(28.1)
	300-400만원	12	(21.1)
	400-500만원	8	(14.0)
	500만원 이상	6	(10.5)

## 나. 피해 유형

성폭력 발생건수는 모두 70건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이 68건으로 전체 성폭력 발생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성도 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희롱이 32건 45.7%, 성추행 26건으로 37.1%, 그 다음이 스토킹이 11건으로 15.7%, 그리고 강간이 1건 1.4%로 나타났다.

〈표 4-20〉 피해 유형별 성폭력 경험 (평생) (단위 : 건, %)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2	(100.0)	68	(100.0)	70	(100.0)
성희롱	2	(100.0)	30	(44.1)	32	(45.7)
성추행	0	(0.0)	26	(38.2)	26	(37.1)
스토킹	0	(0.0)	11	(16.2)	11	(15.7)
강간	0	(0.0)	1	(1.5)	1	(1.4)

최근 1년간 성폭력 경험에 관한 조사결과 유형별 성폭력 경험을 모두 합한 결과는 23건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유형별 발생건수는 성희롱이 가장 많은 11건으로 약 47.8%를 차지했고, 스토킹이 6건으로 26.1%, 성추행이 5건으로 21.7%, 강간이 1건으로 4.3%로 나타났다.

〈표 4-21〉 최근 1년간 성폭력 경험 (단위 : 건,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3	(100.0)
스토킹	6	(26.1)
성희롱	11	(47.8)
성추행	5	(21.7)
강간	1	(4.3)

본 조사 결과 나타난 평생 성폭력 발생률을 전국조사와 비교하면 단순 비교가 가능한 항목은 강간, 성희롱, 스토킹이다. 전반적으로 본 조사에서 나타난 평생 성폭력 발생률은 전국 조사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조사방법의 차이와 여성과 남성의 표집규모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성폭력 발생률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본 조사는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단독조사가 아니므로 성폭력 발생률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sup>5)</sup>.

5) 여성가족부 성폭력 실태조사에 나타난 평생 성폭력 발생률과 지난 1년간 성폭력 발생률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구분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	성희롱	스토킹	비교
2010	평생성폭력 경험	18.6	4.7	1.1	10.3	4.7	여성 과표집(남성617,여성, 508)
	지난1년간 성폭력 경험	2.1	1.2	0.2	1.4	0.6	여성 과표집(남성617,여성, 508)
2013	평생성폭력 경험	9.9	1.1	0.4	5.3	1.7	
	지난1년간 성폭력 경험	1.4	0.2	0.1	0.9	0.2	

### 다. 피해 횟수

성폭력의 유형별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스토킹은 한사람에게 2회 이상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54.5%) 성희롱은 한사람에게 한번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40.6%)와 한사람에게 2회 이상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37.5%)가 많았다. 성추행은 한 사람에게 한번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5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한 사람에게 2회 이상 피해를 경험하였다(19.2%)고 응답하였다.

〈표 4-22〉 성폭력 유형별 피해

(단위 : 명, %)

구분	스토킹		성희롱		성추행		강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11	(100.0)	32	(100.0)	26	(100.0)	1	(100.0)
한 사람에게 한번 당함	2	(18.2)	13	(40.6)	15	(57.7)	1	(100.0)
한 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함	6	(54.5)	12	(37.5)	5	(19.2)	0	(0.0)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2	(18.2)	2	(6.3)	1	(3.8)	0	(0.0)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여러번 당함	1	(9.1)	2	(6.3)	2	(7.7)	0	(0.0)

성폭력의 피해 횟수를 조사한 결과 스토킹은 1회 경험이 3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5회, 10회까지 반복하여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도 나타났다. 성희롱은 1회 경험이 가장 많은 46.9%로 나타났으나 2회 이상 피해를 경험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고 심지어는 5회 이상 경험이 12.5%, 10회, 20회 까지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스토킹과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성추행의 경우 한번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69.2%) 2회, 3회 응답자도 여럿 있었으며 5회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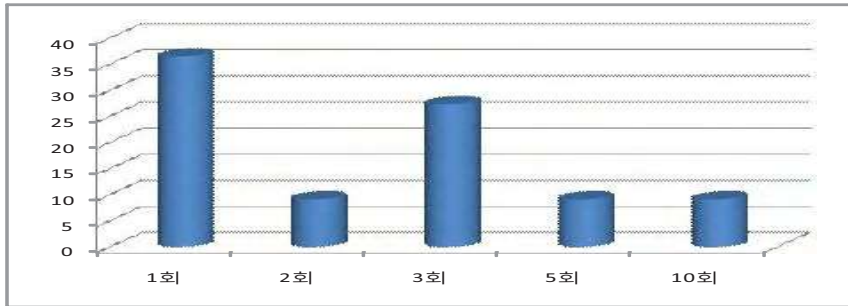
스토킹, 성희롱, 성추행 등의 유형에서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반복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상당수 있음이 드러났다.

<표 4-23> 성폭력 피해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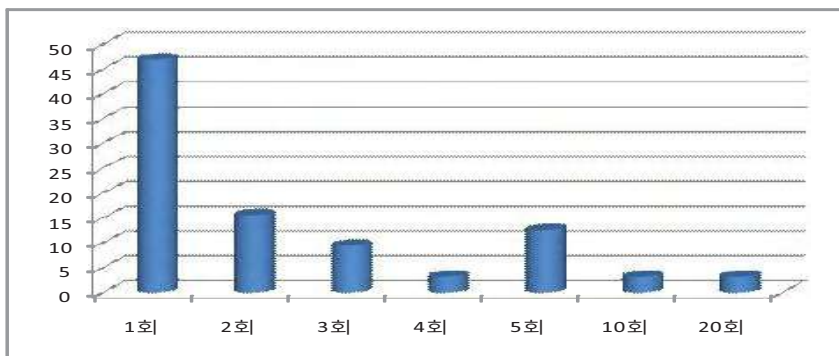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스토킹		성희롱		성추행		강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11	(100.0)	32	(100.0)	26	(100.0)	1	(100.0)
1회	4	(36.4)	15	(46.9)	18	(69.2)	1	(100.0)
2회	1	(9.1)	5	(15.6)	2	(7.7)	0	(0.0)
3회	3	(27.3)	3	(9.4)	3	(11.5)	0	(0.0)
4회	0	(0.0)	1	(3.1)	0	(0.0)	0	(0.0)
5회	1	(9.1)	4	(12.5)	2	(7.7)	0	(0.0)
10회	1	(9.1)	1	(3.1)	0	(0.0)	0	(0.0)
20회	0	(0.0)	1	(3.1)	0	(0.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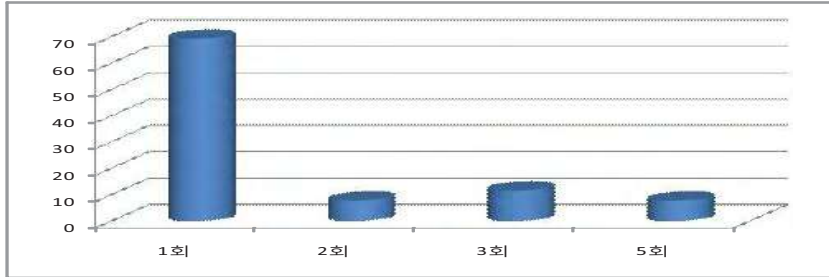
<그림 4-8> 스토킹의 반복피해



<그림 4-9> 성희롱의 반복피해



〈그림 4-10〉 성추행의 반복피해



라. 피해 연령 및 장소

성폭력의 피해 연령 및 장소에 관한 조사 결과 최초 피해는 대부분 20대 이하에서 많이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토킹은 10대, 20대가 각각 36.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은 20대에서 75.8%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추행은 10대에서 경험하는 비율이 47.8%, 20대에서 경험한 비율이 39.1%로 나타나 대부분 성폭력 피해를 처음 경험한 연령이 10대 혹은 20대이고 성추행의 경우 10대에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성폭력 피해 유형별 최초 피해연령

(단위 : 명, %)

구분	스토킹		성희롱		성추행		강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11	(100.0)	29	(100.0)	23	(100.0)	1	(100.0)
19세 이하	4	(36.4)	2	(6.9)	11	(47.8)	1	(100.0)
20~29세	4	(36.4)	22	(75.8)	9	(39.1)	0	(0.0)
30~39세	2	(18.2)	3	(10.3)	2	(8.7)	0	(0.0)
40~49세	1	(9.1)	2	(6.9)	0	(0.0)	0	(0.0)
50세 이상	0	(0.0)	0	(0.0)	1	(4.3)	0	(0.0)

성폭력의 피해 장소는 전체적으로 학교나 직장, 군대와 대중교통시설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희롱은 학교/직장/군대(71.9%) 이외에 유흥업소(15.6%)나 유원지(9.4%) 순으로 나타났고 성추행이 일어나는 장소로는 대중교통시설이 가장 많았고(26.9%), 기타 장소(34.6%), 학교/직장/군대(15.4%) 와 유원지(1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5〉 성폭력 유형별 피해 장소

(단위 : 명, %)

구분	성희롱		성추행		강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29	(100.0)	23	(100.0)	1	(100.0)
가해자의 집	0	(0.0)	2	(7.7)	1	(100.0)
나의 집	0	(0.0)	2	(7.7)	0	(0.0)
유흥업소	5	(15.6)	1	(3.8)	0	(0.0)
학교/ 직장/ 군대	23	(71.9)	4	(15.4)	0	(0.0)
대중교통 시설	1	(3.1)	7	(26.9)	0	(0.0)
유원지	3	(9.4)	4	(15.4)	0	(0.0)
기타	2	(6.2)	9	(34.6)	0	(0.0)

#### 마. 가해자와의 관계 및 연령

성폭력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형별로 다른 특징을 보였다. 스토킹피해의 가해자는 주로 학교 선후배나 애인 그리고 이웃으로 나타났고 성희롱의 가해자는 주로 직장상사나 동료(62.5%)가 압도적으로 많아 가까운 관계에서 성희롱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추행의 가해자는 주로 모르는 사람(57.7%)이 많아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대중교통시설에서 많이 발생하고 대상도 모르는 사람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의 가해자 연령은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토킹의 가해자는 20대가 36.4%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은 20대가 37.5%로 가장 많았으나 30~40대 가해자도 상당수(각각 21.9%) 나타났다. 반면 성추행 가해자는 연령이 낮은 10대에서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가해자의 연령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을 당시의 연령이므로 피해자의 피해 경험 당시의 연령과 비교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20대가 많은 것은 피해자의 피해 당시의 연령도 20대가 다수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표 4-26〉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및 가해자 연령

(단위 : 명, %)

구분	사유	비율	피해당시	사유	비율	
			가해자의 연령			
스토킹	전체	11	(100.0)	전체	11	(100.0)
	학교 선후배	4	(36.4)	10대	3	(27.3)
	애인/배우자	3	(27.3)	20대	4	(36.4)
	이웃	3	(27.3)	30대	2	(18.2)
	직장상사 및 동료	1	(9.1)	40대	2	(18.2)
성희롱	전체	32	(100.0)	전체	32	(100.0)
	모르는 사람	7	(21.9)	10대	1	(3.1)
	학교 선후배	3	(9.4)	20대	12	(37.5)
	애인/배우자	1	(3.1)	30대	5	(15.6)
	이웃	1	(3.1)	40대	7	(21.9)
	직장상사 및 동료	20	(62.5)	50대	7	(21.9)
성추행	전체	26	(100.0)	전체	26	(100.0)
	모르는 사람	15	(57.7)	10대	9	(34.6)
	학교 선후배	2	(7.7)	20대	5	(19.2)
	애인/배우자	2	(7.7)	30대	4	(15.4)
	친척	1	(3.8)	40대	3	(11.5)
	이웃	3	(11.5)	50대 이상	5	(19.2)
	직장상사 및 동료	3	(11.5)			
강간	전체	1	(100.0)	전체	1	(100.0)
	친척	1	(100.0)	10대	1	(100.0)

주 :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할 당시의 연령이므로 피해자의 연령과 연관하여 해석해야 함.

### ○ 성폭력 반복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 반복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성폭력 1회 경험 집단과 2회 이상 경험 집단의 가해자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스토킹 피해자의 가해자와의 관계는 주로 아는 사람이었고 학교 선후배와 애인이나 배우자, 이웃, 직장상사 및 동료이고 1회 경험보다 2회 이상 반복 경험자가 더 많았다. 가해자는 두 집단 모두 학교 선후배와 애인/ 배우자, 이웃, 직장상사 및 동료였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자는 반복경험 여부에 따라 가해자가 약간 차이가 있었다. 1회 경험한 사람들은 직장상사(53.3%)나 모르는 사람(33.3%)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2회 이상 반복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비율은 직장상사나 동료(73.7%)가 월등히 많았다. 따라서 성희롱의 반복피해를 경험하는 사람의 가해자는 주로 직장상사나 동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의 경우 1회 경험집단(18명)이 반복 경험한 집단(10명)보다 더 사례수가 많았다. 1회 경험한 피해자의 가해자는 주로 모르는 사람(44.4%), 학교 선후배(11.1%), 애인 및 배우자(11.1%), 이웃(11.1%), 직장상사 및 동료(22.2%) 순이었고 2회 이상 반복 경험한 사람의 가해자도 모르는 사람(70.0%) 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20.0%) 순이었다.

<표 4-27> 성폭력 반복피해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 명, %)

구분	모르는 사람	학교 선후배	애인/배우자	이웃	친척	직장상사 및 동료	전체
스토킹	1회	0(0.0)	1(20.0)	1(20.0)	1(20.0)	0(0.0)	5(100.0)
	2회 이상	0(0.0)	3(37.5)	2(25.0)	2(25.0)	0(0.0)	8(100.0)
성희롱	1회	5(33.3)	1(6.7)	1(6.7)	0(0.0)	0(0.0)	15(100.0)
	2회 이상	2(10.5)	2(10.6)	0(0.0)	1(5.3)	0(0.0)	19(100.0)
성추행	1회 경험	8(44.4)	2(11.1)	2(11.1)	2(11.1)	0(0.0)	18(100.0)
	2회 이상	7(70.0)	0(0.0)	0(0.0)	2(20.0)	1(10.0)	10(100.0)
강간	1회	0(0.0)	0(0.0)	0(0.0)	0(0.0)	1(100.0)	1(100.0)

주: 사례수는 스토킹 13명, 성희롱 34명, 성추행 28명, 강간 1명

○ 성폭력 피해당시 가해자 상태

성폭력 피해 당시 가해자 상태에 관한 조사에서는 ‘맨 정신이었다’는 응답이 80.9%로 가장 많았고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응답이 19.3%를 차지했다. 또한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음을 암시하거나 흥기 등을 이용하여 협박했다’는 응답도 소수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범죄가 가해자가 술이나 약물로 이성을 잃은 상태이거나 협박이나 위협 등의 극단적인 폭력을 동반하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음주가 성폭력의 원인이라는 가해자들의 변명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28> 피해당시 가해자 상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61	(100.0)
맨 정신 이었다	46	(75.4)
술에 취해 있었다	11	(18.0)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음을 암시했다	2	(3.3)
흥기 등을 이용하여 협박 하였다	1	(1.6)
기타	1	(1.6)

주: 다중응답분석이며, 비율은 백분율로 환산된 것임

## 5. 성폭력 피해의 영향

### 가. 피해당시의 느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 당시의 느낌으로는 '모욕감, 굴욕감이 들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61.4%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공포로 인해 너무나 무서웠다' 36.8%, '멍한 느낌이었다'가 19.3%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철저한 무력감을 느꼈다'(8.8%)거나 배신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소수 의견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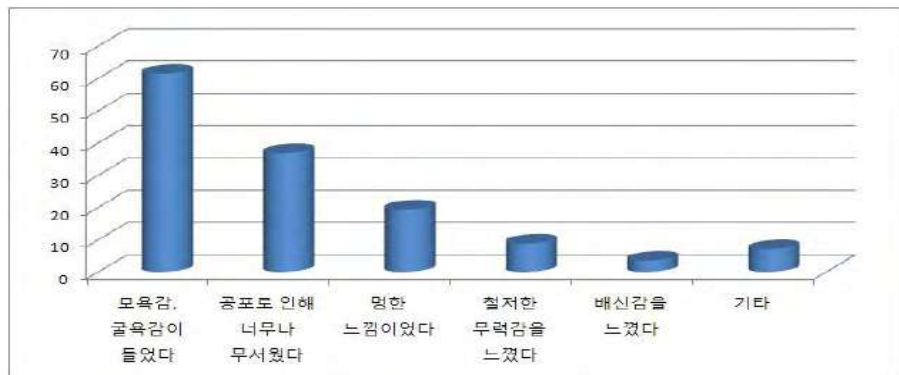
〈표 4-29〉 성폭력 피해당시 느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모욕감, 굴욕감이 들었다	35	(61.4)
공포로 인해 너무나 무서웠다	21	(36.8)
멍한 느낌이었다	11	(19.3)
철저한 무력감을 느꼈다	5	(8.8)
배신감을 느꼈다	2	(3.5)
기타	4	(7.0)

주: 다중응답분석, 성폭력 피해 사례수는 57명.

〈그림 4-11〉 성폭력 피해당시 느낌



### 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성폭력 피해의 영향으로 신체적 상해경험에 대해서는 성폭력 경험 사례 전체 57명 가운데 1.8%(1명)로 나타났고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성폭력 피해가 결

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신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에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 성폭력 경험자 중 33.3%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표 4-30〉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경험 (단위 : 명, %)

구분	정신적 고통 경험	
	사례수	(비율)
전체	57	(100.0)
예	19	(33.3)
아니오	38	(66.7)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성폭력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응답한 전체 24명 가운데 성추행 피해 경험자가 41.7%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피해 경험자가 37.5%, 그 다음이 스토킹 순으로 나타나 강간이 아닌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 피해 경험에도 상당수가 정신적 고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1〉 성폭력 피해 유형별 정신적 고통 (단위: 명, %)

구분	정신적 고통 경험	
	있다	없다
전체	24(100.0)	46(100.0)
스토킹	4(16.7)	7(15.2)
성희롱	9(37.5)	23(50.0)
성추행	10(41.7)	16(34.8)
강간	1(4.2)	0(0.0)

성폭력 피해의 영향으로 느끼는 정신적 고통의 종류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다’는 응답이 9명(25.7%)으로 가장 많았고 ‘수시로 분노감이나 적개심이 들었다’의 응답자는 20.0%나 되었다. 그 외에 불면증(17.1%), 우울증(14.3%),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 심지어는 ‘자해행위를 했다’는 응답자도 각각 5.7%로 나타났다.

〈표 4-32〉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유형 (단위: 명, %)

구분	현재 정신적 상태	
	사례수	(비율)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렸다	9	(25.7)
수시로 분노감이나 적개심이 들었다	7	(20.0)
불면증에 시달렸다	6	(17.1)
우울증에 시달렸다	5	(14.3)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	2	(5.7)
자살을 기도하는 등 자해 행위를 했다	2	(5.7)
없다	2	(5.7)
순결 상실감에 고통을 받았다	1	(2.9)
기타	1	(2.9)

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중응답임.

성폭력 경험으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응답자 중 '현재 정신적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19명의 응답자 가운데 괜찮다는 10명(52.6%), 정신적 고통이 여전하다 7명(36.8%), 과거의 피해 상황이 수시로 떠오른다가 2명(10.5%)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정신적 고통이 여전하거나 수시로 과거의 피해 상황이 떠오르는 등 정신적 고통이 남아 있다고 응답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성폭력 피해자의 현재 정신적 상태 (단위: 명, %)

구분	현재 정신적 상태	
	사례수	(비율)
전체	19	(100.0)
괜찮다	10	(52.6)
정신적 고통이 여전하다	7	(36.8)
과거의 피해 상황이 수시로 떠오른다	2	(10.5)

성폭력 반복 경험 여부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증세별로는 조금 차이가 났다. 1회 경험한 사람들은 주로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렸다'라는 응답(50.0%)이 많았고 '우울증에 시달렸다'(40.0%),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20.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복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응답하여 1회 경험한 사람들보다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구체적 증세로는 불면증(44.4%), 불안감과 두려움(44.4%), 분노감이나 적개심(44.4%) 등이었다.

〈표 4-34〉 반복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단위 : 건, %)

구분	불면증에 시달렸다	우울증에 시달렸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다	순결 상실감에 고통을 받았다	수시로 분노감이나 죄책감이 들었다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	자살을 기도하는 등 자해 행위를 했다	없다	기타	전체
1회 경험	2(20.0)	4(40.0)	5(50.0)	1(10.0)	3(30.0)	2(20.0)	1(10.0)	1(10.0)	0(0.0)	10(100.0)
2회이상 경험	4(44.4)	1(11.1)	4(44.4)	0(0.0)	4(44.4)	0(0.0)	1(11.1)	1(11.1)	1(11.1)	9(100.0)

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19명의 다중응답분석.

### 다. 경제적 피해

성폭력 피해이후 경제적 손실에 대한 조사 결과 가장 많은 경우는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응답자 중 가장 많고(71.4%) 그 다음이 치료비 부담(14.3%), 취업을 못했다(1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피해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피해자에게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히 경제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4-35〉 피해이후 경제적 손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4	(100.0)
직장을 그만 둠	10	(71.4)
치료비 부담	2	(14.3)
취업을 못함	2	(14.3)

주: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응답한 20명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피해유형에 따라 경제적 손실 여부를 보면 스토킹 피해자의 35.7% 가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성희롱 피해자 24.2%, 성추행 피해자의 20.7%가 폭력 경험 이후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한편 강간 피해자 또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표 4-36〉 피해 유형별 피해이후 경제적 손실 (단위 : 명, %)

구분	경제적 손실 있음	없음	전체
전체	20(26.0)	57(74.0)	77(100.0)
스토킹	5(35.7)	9(64.3)	14(100.0)
성희롱	8(24.2)	25(75.8)	33(100.0)
성추행	6(20.7)	23(79.3)	29(100.0)
강간	1(100.0)	0(0.0)	1(100.0)

주: 다중응답분석

성폭력 피해 유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 유형 전체에서 '경제적 손실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경우도 상당수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14.3%) 치료비 부담(14.3%) 이 있었다는 응답이 있었고 성희롱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둔 경우(21.2%) 가 가장 많았고 취업을 못하였다는 응답도 (3.0%) 있었다. 성추행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었다(10.3%), 치료비 부담(6.9%), 취업을 못함(3.4%)으로 나왔고 강간 피해자도 직장을 그만 두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4-37〉 피해 유형별 경제적 손실 내용 (단위: 명, %)

구분	스토킹	성희롱	성추행	강간	전체
직장을 그만 둠	2(14.3)	7(21.2)	3(10.3)	1(100.0)	13(16.9)
치료비 부담	2(14.3)	0(0.0)	2(6.9)	0(0.0)	4(5.2)
취업을 못함	1(7.1)	1(3.0)	1(3.4)	0(0.0)	3(3.9)
없음	9(64.3)	25(75.8)	23(79.3)	0(0.0)	57(74.0)

주: 성폭력 경험이 있는 5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다중응답

성폭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성희롱 피해자의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성추행 피해자의 직장을 그만두었음, 그리고 성추행, 스토킹 피해자의 치료비 부담, 또한 스토킹,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의 취업을 못함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유형과 별 상관없이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일상생활의 변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변화 없다



(37.7%)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19.2%)이나 타인에 대한 혐오, 또는 불신(16.4%)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그 밖에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 두거나(9.8%), 대인기피증(8.9%), 가족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가 악화됨(3.4%), 혼자 외출을 못하는 등의 행동 문제가 생김(2.7%), 전학 하거나 자퇴 하였음(1.0%),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음(1.0%) 등의 소수 의견이 있었다. 성폭력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에 변화를 겪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표 4-38〉 성폭력 피해경험 후 일상생활의 변화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61	(100.0)
타인에 대한 혐오, 또는 불신	10	(16.4)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	12	(19.2)
대인 기피증	5	(8.9)
혼자 외출을 못하는 등의 행동 문제가 생김	2	(2.7)
(직장인)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 두었음	6	(9.8)
(학생) 전학 하거나 자퇴 하였음	1	(1.0)
다른 지역으로 이사 하였음	1	(1.0)
가족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가 악화됨	2	(3.4)
변화없다	23	(37.7)

주 : 성폭력 경험이 있는 5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다중응답

## 6. 성폭력에 대한 대응

### 가. 개인적 대응

성폭력 피해당시 대응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도망갔다(40.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있었다(36.8%)는 응답도 상당히 많았다. 소리를 지르거나(10.5%), 가해자를 설득하고(10.5%), 심지어 가해자를 협박(5.3%) 하는 등 적극적인 저항을 했다는 응답은 소수를 차지했다. 그 밖에 힘으로 저항하고 싸웠다(5.3%), 기타(3.5%), 가해자를 숙여 도망칠 기회를 노렸다(3.5%)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폭력 피해 당시 적극적인 수단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나타낸다.

〈표 4-39〉 성폭력 피해당시 대응방법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도망갔다	23	(40.4)
그냥 있었다	21	(36.8)
소리를 질렀다	6	(10.5)
가해자를 설득 하였다	6	(10.5)
가해자를 협박 하였다	3	(5.3)
힘으로 저항하고 싸웠다	3	(5.3)
가해자를 속여 도망칠 기회를 노렸다	2	(3.5)
기타	2	(3.5)

주: 다중응답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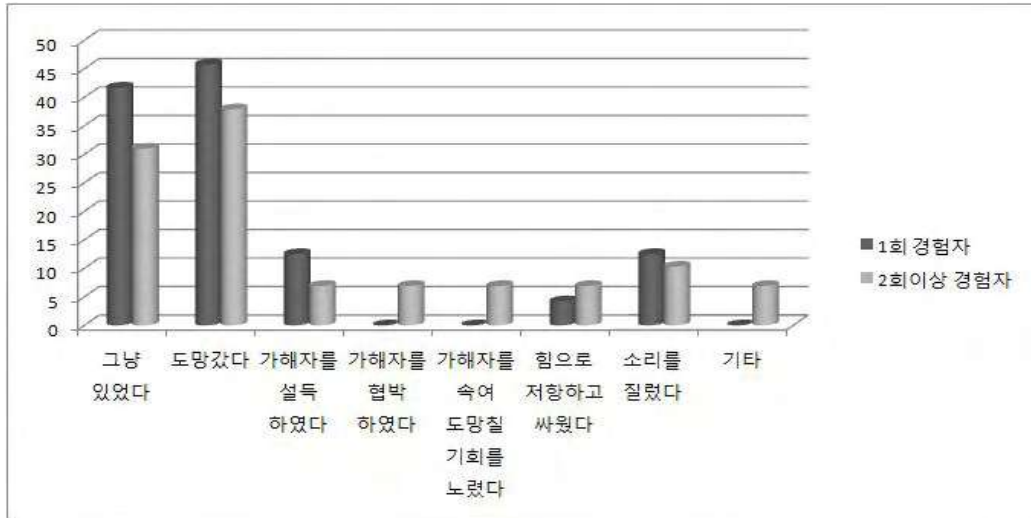
성폭력 반복피해 경험자의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 1회 경험자와 2회 이상 경험자의 대응을 비교해 보았다. 본 조사에 나타난 성폭력 1회 경험자는 24명이고 2회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29명으로 성폭력의 반복피해자가 더 많았다. 성폭력 피해의 대응은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성폭력 1회 피해를 경험한 집단은 도망가거나(45.8%) 그냥 있었다(41.7%)가 대부분이고 가해자를 설득(12.5%)하거나 소리를 지르는(12.5%) 등 적극적인 대응 비율은 높지 않은 반면 성폭력 2회 이상 피해집단에서는 그냥 있었다(31.0%) 와 도망갔다(37.9%) 의 소극적 저항은 1회 경험 집단에 비해 낮은 비율의 응답을 나타내고 소리를 지르거나(10.3%), 힘으로 저항하고 싸우고(6.9%), 가해자를 설득(6.9%), 협박(6.9%) 하는 등 적극적인 저항하는 비율이 조금 높았다. 이는 성폭력 피해를 반복하는 집단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저항한다고 진단할 수 있다.

〈표 4-40〉 성폭력 반복피해 경험자의 대응

(단위: 명, %)

구분	그냥 있었다	도망갔다	가해자를 설득 하였다	가해자를 협박 하였다	가해자를 속여 도망칠 기회를 노렸다	힘으로 저항하고 싸웠다	소리를 질렀다	기타	전체
전체	19(31.1)	22(36.1)	5(8.2)	2(3.3)	2(3.3)	3(4.9)	6(9.8)	2(3.3)	61(100.0)
1회 경험자	10(41.7)	11(45.8)	3(12.5)	0(0.0)	0(0.0)	1(4.2)	3(12.5)	0(0.0)	28(100.0)
2회이상 경험자	9(31.0)	11(37.9)	2(6.9)	2(6.9)	2(6.9)	2(6.9)	3(10.3)	2(6.9)	33(100.0)

<그림 4-12> 성폭력 1회 피해자와 반복피해자의 대응



성폭력 피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21개의 응답 사례 중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9명(42.9%), 성폭력인지 몰라서 4명(19.0%), 소리 내면 남이 알까봐 창피해서 3명(14.3%),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거나, 기타가 각각 2명(9.2%), 저항하면 다칠까봐 1명(4.8%)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소용이 없을 것 같거나 성폭력인지 몰라서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사례가 많아 성폭력 피해가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저항하기 쉽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41> 성폭력 피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1	(100.0)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9	(42.9)
성폭력인지 몰라서	4	(19.0)
소리 내면 남이 알까봐 창피해서	3	(14.3)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2	(9.5)
저항하면 다칠까봐	1	(4.8)
기타	2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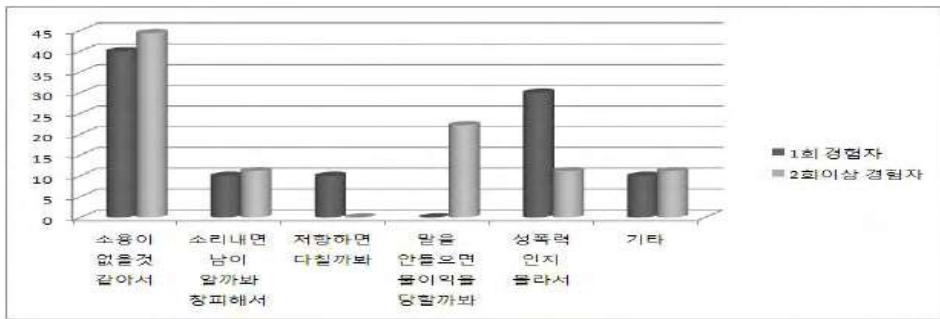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를 성폭력 1회 경험집단과 2회 이상 반복경험한 집단 간의 차이를 보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와 소리 내면 남이 알까봐 창피해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비슷하였다. 그러나 1회 경험 집단에서는 '성폭력인지 몰라서' 대응하지 못했다(30.3%)는 응답이 많은 반면, 2회 경험 집단에서는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대응

하지 못했다(22.2%)는 응답이 있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이 반복피해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2〉 성폭력 반복피해 경험자의 대응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소용이 없을것 같아서	소리내면 남이 알까봐 창피해서	저항하면 다칠까봐	말을 인들으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성폭력인지 몰라서	기타	전체
전체	8(42.1)	2(10.5)	1(5.3)	2(10.5)	4(21.1)	2(10.5)	19(100.0)
1회 경험자	4(40.0)	1(10.0)	1(10.0)	0(0.0)	3(30.0)	1(10.0)	10(100.0)
2회이상 경험자	4(44.4)	1(11.1)	0(0.0)	2(22.2)	1(11.1)	1(11.1)	9(100.0)

〈그림 4-13〉 성폭력 1회 피해자와 반복피해자의 대응하지 않은 이유



성폭력 피해당시 대응이 어떤 결과로 드러났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36명의 응답자 중에 성폭력도 피하고 신체적인 상처도 입지 않았다가 18명(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가 10명(27.8%)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성폭력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성폭력을 면했지만 신체폭력이 심했거나 2명(5.6%), 성폭력 피해도 면하지 못하고 신체적 폭력도 심했다는 응답도 2명(5.6%)으로 나타나 성폭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 피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표 4-43〉 성폭력 피해당시 대응 결과

(단위 : 명, %)

구분	대응의 도움정도	
	사례수	(비율)
전체	36	(100.0)
성폭력도 피하고 신체적인 상처도 입지 않았다	18	(50.0)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10	(27.8)
성폭력은 면했지만 신체적 폭력이 심했다	2	(5.6)
성폭력 피해도 면하지 못하고 신체적 폭력도 심했다	2	(5.6)
기타	4	(11.1)

성폭력 피해 경험 이후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응답한 사례는 모두 22명으로 전체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38.6%에 그쳤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가족이나 친구가 가장 많은 비율(54.5%)을 나타냈고 그 다음이 경찰서(22.8%)로 나타났다. 성폭력 상담소나 쉼터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례는 적어서(13.6%) 본 조사에서 나타난 성폭력 경험대상자는 성폭력 관련 공공 서비스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 성폭력 피해자의 도움요청 대상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2	(100.0)
가족, 친구	12	(54.5)
경찰서	5	(22.8)
성폭력 상담소 혹은 쉼터	3	(13.6)
여성긴급전화	1	(4.6)
여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	1	(4.6)
성매매 피해자 쉼터	0	(0.0)
기타	0	(0.0)

주: 다중응답분석.

## 나. 법적 대응

성폭력 피해당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모두 5사례에 그쳤고 전체 사례의 91.2%인 52명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명, 스토킹 피해자가 3명, 성추행 피해자가 4명으로 나타나, 성추행과 스토킹 피해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반면, 성희롱이나 강간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복피해를 입은 경우(4명)가 1회 피해경험자(1명) 보다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의 1순위는 52명의 응답자 가운데 피해가 심각

하지 않았기 때문에 25명(48.1%), 범인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7명(13.5%),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6명(11.5%),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6명(11.5%),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4명(7.7%),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2명(3.8%)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나 범인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응답도 상당수 있어 성폭력 피해가 쉽게 드러내기 힘든 맥락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4-45〉 경찰 미신고 이유 1순위

(단위: 명, %)

구분	경찰 미신고	
	사례수	(비율)
전체	52	(100.0)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25	(48.1)
범인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7	(13.5)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6	(11.5)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6	(11.5)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4	(7.7)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2	(3.8)
가족에게 비난 당할까봐 두려워서	1	(1.9)
기타	1	(1.9)

성폭력 피해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응답한 2순위를 알아본 결과 전체 28명의 응답자 가운데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4명(14.3%),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3명(10.7%),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거나,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혹은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2명(7.1%), ‘범인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나 가족에게 비난 당할까봐 두려워서’가 각각 1명(3.6%)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기타 의견이 많았다(46.4%)는 것이다. 이는 신고를 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기가 어렵다고 풀이할 수 있다. 즉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할 수 있다.

〈표 4-46〉 경찰 미신고 이유 2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8	(100.0)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4	(14.3)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3	(10.7)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2	(7.1)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	(7.1)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2	(7.1)
범인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	(3.6)
가족에게 비난 당할까봐 두려워서	1	(3.6)
기타	13	(46.4)

### 다. 시설 이용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공공 서비스 이용 비율은 매우 낮았다. 지원기관 서비스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모두 4명으로 전체 피해경험자의 약 14.3%에 그쳤다. 공공 서비스 기관의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지원받은 서비스는 심리상담(2건), 의료서비스(1건), 법률서비스(1건)이었고 서비스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했다는 응답이 3명이었다.

성폭력 관련(공공서비스)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전체 53명의 응답자 가운데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31명(58.5%), 관련 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7명(13.2%),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8명(15.1%),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4명(7.5%)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은 이유는 본 조사에서 나타난 성폭력의 피해 유형이 대부분 성희롱과 성추행이 많아 피해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거나, 관련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가 상당수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성폭력 지원기관이 존재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47〉 관련(서비스)기관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도움 미요청 이유	
	사례수	(비율)
전체	53	(100.0)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31	(58.5)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8	(15.1)
관련 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7	(13.2)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4	(7.5)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2	(3.8)
기타	1	(1.9)

## 7. 정책인지도와 정책욕구

### 가. 법·제도의 인지

#### 1)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인지

성폭력 가해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5.0% 정도가 성폭력 관련법에 관한 내용을 잘 안다고 응답하였고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69.5%,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15.5%로 나타났다. ‘내용을 잘안다’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성폭력 관련법의 내용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는 응답을 합쳐 잘 모르는 응답자가 약 85.0%를 차지해 성폭력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 성별 성폭력 법 인지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 결과를 성별로 비교해 볼때 남성과 여성 두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남성은 약 16.6%, 여성은 13.4%로 나타나 성폭력 관련법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17.8%)은 남성(13.2%)에 비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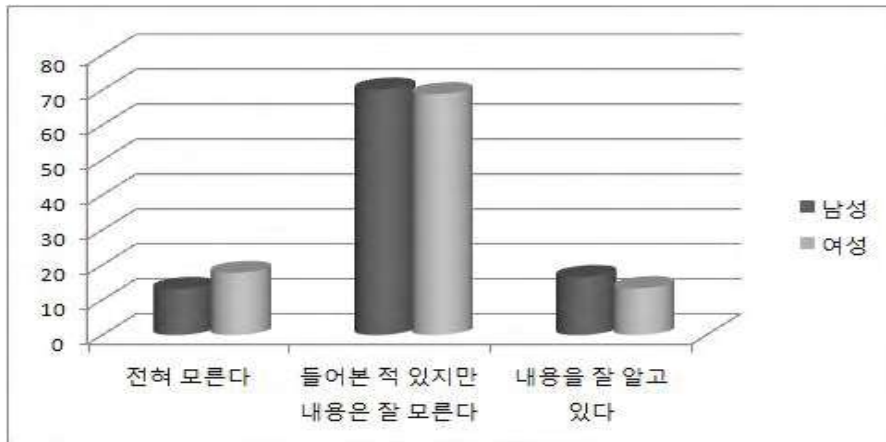
〈표 4-48〉 성별 성폭력 법 인지

(단위: 명, %)

구분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인지 여부			전체	$\chi^2$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전체	464(15.5)	2,086(69.5)	450(15.0)	3,000(100.0)	
남성	198(13.2)	1,055(70.2)	250(16.6)	1,503(100.0)	15.785***
여성	266(17.8)	1,031(68.9)	200(13.4)	1,497(100.0)	

\*\*\*p<.001

〈그림 4-14〉 성별 성폭력 법 인지



○ 연령별 성폭력 법 인지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인지 여부에 대하여 연령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69.6%)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서 인지 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은 30대(76.3%), 40대(72.1%), 20대(70.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60대이상(31.3%), 20대(14.4%), 50대(1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0대(18.7%), 50대(18.1%), 30대(16.4%)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연령은 40대로 나타났고 가장 잘 알지 못하는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30대는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아 관련법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지만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4-49〉 연령별 성폭력 법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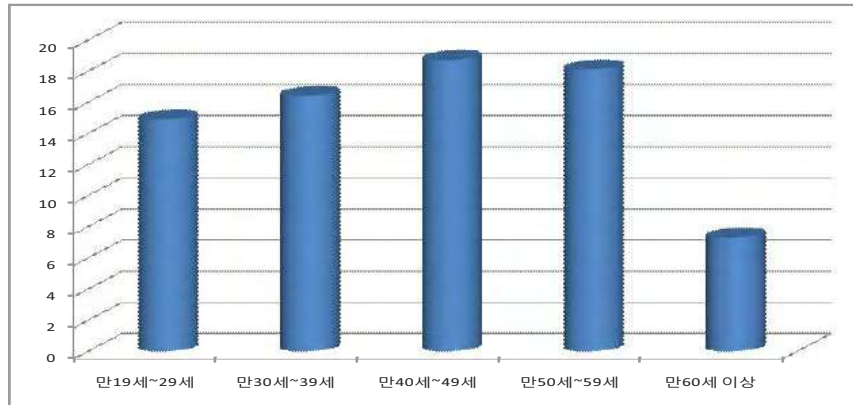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인지 여부			전체	$\chi^2$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전체	463(15.4)	2,086(69.6)	450(15.0)	3,000(100.0)	
만19세~29세	78(14.4)	384(70.7)	82(14.9)	544(100.0)	197.214* **
만30세~39세	41(7.2)	432(76.3)	93(16.4)	566(100.0)	
만40세~49세	58(9.1)	458(72.1)	119(18.7)	635(100.0)	
만50세~59세	81(13.5)	411(68.4)	109(18.1)	600(100.0)	
만60세 이상	205(31.3)	401(61.3)	48(7.3)	655(100.0)	

\*\*\*p&lt;.001

주 :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알고 있는가'의 질문에 응답한 비율

〈그림 4-15〉 연령별 성폭력 법 인지



## ○ 학력별 성폭력 법 인지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인지 여부를 학력별로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69.6%)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서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학력인 대학원졸 이상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26.1%)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초등졸 이하(35.4%)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표 4-50〉 학력별 성폭력 법 인지

(단위: 명, %)

구분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전체	$\chi^2$
전체	463(15.4)	2,087(69.6)	450(15.0)	3,000(100.0)	188.091***
초등졸 이하	109(35.4)	184(59.7)	15(4.9)	308(100.0)	
중졸	68(23.7)	192(66.9)	27(9.4)	287(100.0)	
고졸	204(14.7)	990(71.3)	194(14.0)	1,388(100.0)	
대졸	82(8.2)	704(70.8)	208(20.9)	994(100.0)	
대학원졸 이상	0(0.0)	17(73.9)	6(26.1)	23(100.0)	

 $\chi^2$ 값은 Chi-Square test, \*\*\* $p < .001$ 

## 2) 성폭력 법 내용 인지

성폭력 법 내용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위해 주요 성폭력 관련법 항목을 조사하였다. 조사 항목에는 공공장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성추행에 관한 처벌조항,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 그리고 신고와 처벌이 어려운 가족과 친척에 의한 성폭력 처벌 조항 이었다. 또한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성폭력 친고죄 폐지, 성폭력 피해사건 발생 시 전담경찰제도,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국선변호인과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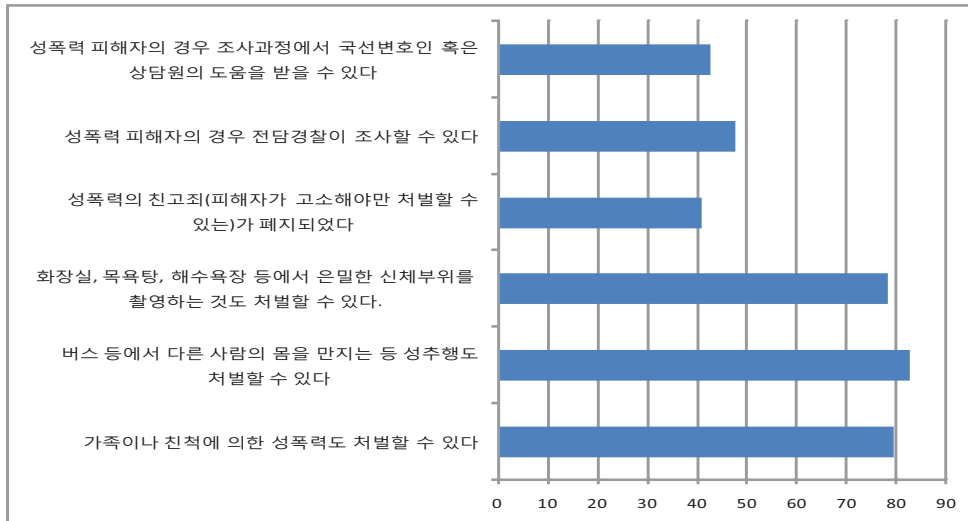
성폭력 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는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도 처벌 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인지율이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응답이 79.4%, '화장실, 목욕탕, 해수욕장 등에서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78.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폭력의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가 폐지되었다' (40.8%)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전담경찰이 조사할 수 있다'(47.7%)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 혹은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42.7%) 세 항목에서의 인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성폭력 관련법의 개정사항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정도나 되었다.

〈표 4-51〉 성폭력 법 내용 인지

(단위: 명, %)

구분	안다	모른다	전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다	2,383(79.4)	617(20.6)	3000(100)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도 처벌할 수 있다	2,478(82.6)	522(17.4)	3000(100)
화장실, 목욕탕, 해수욕장 등에서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다.	2,350(78.3)	650(21.7)	3000(100)
성폭력의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가 폐지되었다	1,225(40.8)	1,775(59.2)	3000(100)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전담경찰이 조사할 수 있다	1,430(47.7)	1,570(52.3)	3000(100)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국선번호인 혹은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281(42.7)	1,719(57.3)	3000(100)

〈그림 4-16〉 성폭력 법 내용 인지



## ○ 성별 성폭력 법 내용 인지

성폭력 관련법 내용 인지에 관한 각 항목별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지에 관한 항목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81.6%, 여성이 77.2%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4-52〉 성별 성폭력 법 내용 인지

(단위 :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chi^2$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다	1,156(77.2)	341(22.8)	1,227(81.6)	276(18.4)	2,383(79.4)	617(20.6)	8.951*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도 처벌할 수 있다	1,224(81.8)	273(18.2)	1,254(83.4)	249(16.6)	2,478(82.6)	522(17.4)	1.455
화장실, 목욕탕, 해수욕장 등에서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다.	1,151(76.9)	346(23.1)	1,198(79.7)	305(20.3)	2,350(78.3)	650(21.7)	3.511
성폭력의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가 폐지되었다	551(36.8)	946(63.2)	675(44.9)	828(55.1)	1,225(40.8)	1,775(59.2)	20.379**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전담경찰이 조사할 수 있다	707(47.2)	790(52.8)	723(48.1)	780(51.9)	1,430(47.7)	1,570(52.3)	.231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 혹은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38(42.6)	859(57.4)	642(42.7)	861(57.3)	1,281(42.7)	1,719(57.3)	.003

 $\chi^2$ 값은 Chi-Square test, \*p<.05, \*\*\*p<.001

성폭력 관련 법 중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도 처벌 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비교했을 때 응답내용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남성(83.4%)이 여성(81.8%)보다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화장실, 목욕탕, 해수욕장 등에서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 대한 인지 여부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응답내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79.7%, 여성이 76.9%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의 친고죄가 폐지되었다’라는 사실 인지여부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44.9%, 여성은 36.8%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전담경찰이 조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지에 관한 항목에서는 성별에 따른 인지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남성(48.1%)은 여성(47.2%)보다 ‘안다’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국선 변호인 혹은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지에 관하여는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남성(42.7%)과 여성(42.6%)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법 내용에 관하여 성별에 따른 인지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나 구체적인 법 내용에 관하여 알고 있는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 ○ 연령별 성폭력 법 내용 인지

성폭력 관련법 내용에 대한 인지여부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성폭력 관련법을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도 처벌할 수 있다’는 항목과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전담경

찰이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국선 변호인 혹은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항목은 40대의 인지율이 높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는 30대(83.9%)와 20대(83.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50대(82.0%)와 40대(81.3%), 60대(67.9%)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32.1%), 40대(18.7%), 50대(18.0%), 20대(16.5%), 30대(16.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응답은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53> 연령별 성폭력 법 내용 인지 (단위: 명, %)

구분	만19세~29세		만30세~39세		만40세~49세		만50세~59세		만60세 이상		χ²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다	454(83.5)	90(16.5)	475(83.9)	91(16.1)	516(81.3)	119(18.7)	492(82.0)	108(18.0)	445(67.9)	210(32.1)	68.973***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도 처벌할 수 있다	448(82.4)	96(17.6)	485(86.7)	81(14.3)	553(87.1)	82(12.9)	517(86.2)	83(13.8)	475(72.5)	180(27.5)	64.29***
화장실, 목욕탕, 해수욕장 등에서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다	446(82.0)	98(18.0)	484(85.5)	82(14.5)	531(83.6)	104(16.4)	467(77.8)	133(22.2)	421(64.3)	234(35.7)	108.168***
성폭력의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가 폐지되었다	243(44.7)	301(55.3)	278(49.1)	288(50.9)	279(43.9)	356(56.1)	257(42.8)	343(57.2)	169(25.8)	486(74.2)	84.149***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전담경찰이 조사할 수 있다	279(51.3)	265(48.7)	295(52.1)	271(47.9)	363(57.2)	272(42.8)	316(52.7)	284(47.3)	176(26.9)	479(73.1)	149.907***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 혹은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67(49.1)	277(50.9)	265(46.8)	301(53.2)	331(52.1)	304(47.9)	265(44.2)	335(55.8)	153(23.4)	502(76.6)	136.710***

χ²값은 Chi-Square test, \*\*\*p<.001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다'는 응답은 40대(87.1%)와 50대(86.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장실, 목욕탕, 해수욕장 등에서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인지여부 항목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응답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다'는 응답은 30대(85.5%)와 40대(83.6%), 20대(82.0%)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친고죄가 폐지되었다'라는 내용에 관한 질문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다'는 응답은 30대(49.1%)와 20대(44.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74.2%), 50대(57.2%), 40대(56.1%)가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피

해자는 성폭력 전담경찰이 조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인지여부도 연령에 따라서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다’는 응답은 40대(57.2%)와 50대(52.7%), 30대(52.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국선 변호인 혹은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지는 연령에 따라서 응답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다’는 응답은 40대(52.1%)와 20대(49.1%), 30대(46.8%) 순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 성폭력 법 내용 인지

성폭력 관련 법 내용에 관한 인지여부를 학력별로 살펴 보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인지여부는 학력에 따라서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모른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졸(87.2%) 대학원졸(87.5%) 이상이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54> 학력별 성폭력 법 내용 인지 (단위: 명, %)

구분	초등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χ²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다	187 (60.7)	121 (39.3)	218 (75.7)	70 (24.3)	1,089 (78.5)	298 (21.5)	867 (87.2)	127 (12.8)	21 (87.5)	3 (12.5)	106.885***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도 처벌할 수 있다	215 (69.8)	93 (30.2)	226 (78.7)	61 (21.3)	1,114 (80.3)	273 (19.7)	899 (90.4)	95 (9.6)	24 (100.0)	0 (0.0)	90.672***
화장실 목욕탕 해수욕장 등에서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다	184 (59.7)	124 (40.3)	200 (69.7)	87 (30.3)	1,074 (77.4)	313 (22.6)	869 (87.4)	125 (12.6)	23 (95.8)	1 (4.2)	128.777***
성폭력의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가 폐지되었다	60 (19.5)	248 (80.5)	82 (28.6)	206 (71.4)	559 (40.3)	828 (59.7)	510 (51.3)	484 (48.7)	15 (62.5)	9 (37.5)	125.919***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전담경찰이 조사할 수 있다	86 (27.9)	222 (72.1)	81 (28.2)	206 (71.8)	675 (48.7)	712 (51.3)	572 (57.5)	422 (42.5)	16 (66.7)	8 (33.3)	134.544***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재판장에서 국선 변호인 혹은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2 (20.1)	246 (79.9)	77 (26.8)	210 (73.2)	583 (42.0)	804 (58.0)	546 (54.9)	448 (45.1)	12 (50.0)	12 (50.0)	155.238***

χ²값은 Chi-Square test, \*\*\*p<.001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아는지에 대하여 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수

준이 높을수록 '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화장실, 목욕탕, 해수욕장 등에서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다' 와 성폭력의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전담경찰이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국선 변호인 혹은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등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학력별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으며 학력이 높은 대졸 혹은 대학원졸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인지율을 나타냈다.

3)성폭력 관련법 인지경로

성폭력 관련법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TV/라디오 공익광고를 통한 경우가 8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서가 33.2%, 신문/잡지가 24.9%,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24.6%를 차지하여 주로 대중매체나 인터넷,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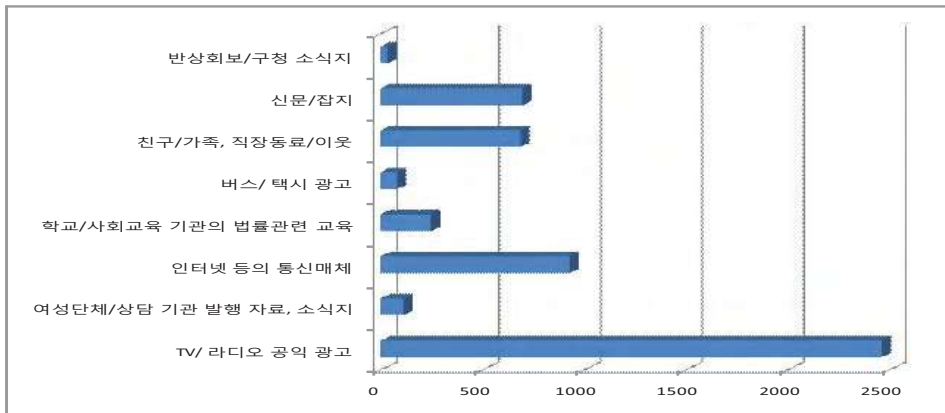
<표 4-55> 성폭력 관련법 인지경로

(단위: 명, %)

구분	성폭력 관련법 인지 경로									전체
	TV/라디오 공익광고	여성단체/상담 기관 발행 자료, 소식지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학교/사회교육 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버스/택시 광고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	신문/잡지	반사회보/구정 소식지	기타	
전체	2,461(88.1)	112(4.0)	928(33.2)	246(8.8)	81(2.9)	687(24.6)	695(24.9)	33(1.2)	14(0.5)	2,792(100.0)

주: 다중응답분석.

<그림 4-17> 성폭력 관련법 인지경로





○ 지역별 성폭력 관련법 인지경로

지역별로 비교하면 서귀포시 동지역 거주자들이 TV/라디오 등의 공익광고를 통해서 인지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91.9%), 제주시 읍·면지역 거주자들은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폭력관련법을 인지하는 경우(42.8%)가 다른 지역의 거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귀포시 동지역(28.5%)과 , 서귀포시 읍·면지역(38.2%) 거주자들이 제주시 지역 거주자들보다 친구/가족/직장동료/이웃을 통하여 법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56〉 지역별 성폭력 관련법 인지 경로 (단위: 명, %)

구분	성폭력 관련법 인지 경로									전체
	TV/라디오 공익광고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 자료, 소식지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버스/택시 광고	친구/가족/직장동료/이웃	신문/잡지	반성회보/구정소식지	기타	
전체	2,461(88.1)	112(4.0)	928(33.2)	246(8.8)	81(2.9)	687(24.6)	686(24.9)	33(1.2)	14(0.5)	2,792(100.0)
제주시 동지역	1,253(87.2)	67(4.6)	534(37.2)	133(9.3)	50(3.5)	296(20.6)	370(25.7)	24(1.6)	6(0.4)	1,436(100.0)
제주시 읍·면지역	354(84.7)	28(6.6)	179(42.8)	73(17.5)	13(3.0)	90(21.5)	115(27.6)	5(1.1)	6(1.5)	418(100.0)
서귀포시 동지역	544(91.9)	8(1.4)	119(20.1)	6(1.0)	17(2.9)	169(28.5)	120(20.3)	4(0.7)	1(0.2)	591(100.0)
서귀포시 읍·면지역	310(89.4)	9(2.7)	96(27.5)	34(9.7)	1(0.4)	133(38.2)	89(25.7)	0(0.0)	1(0.2)	347(100.0)

주: 다중응답분석.

○ 성별 성폭력 관련법 인지경로

성폭력 관련법 인지경로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90.1%)들이 남성(86.2%)들 보다 TV/라디오 등의 공익광고를 통해서 인지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27.4%)들이 여성(22.2%)들 보다 신문잡지를 통하여 성폭력관련법을 인지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친구/가족/직장동료/이웃(26.5%)을 통하여 인지하는 경우가 남성(22.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57〉 성별 성폭력관련법 인지 경로 (단위: 명, %)

구분	성폭력관련법 인지 경로									
	TV/라디오 공익광고	여성단체/ 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인터넷 등의통신 매체	학교/ 사회교육 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버스/택 시 광고	친구/가 족, 직장 동료/ 이웃	신문/잡 지	반성회보 /구청 소식지	기타	전체
전체	2,461(88.1)	112(4.0)	928(33.2)	246(8.8)	81(2.9)	687(24.6)	695(24.9)	33(1.2)	14(0.5)	2,793(100.0)
남성	1,228(86.2)	29(2.0)	471(33.1)	116(8.1)	40(2.8)	324(22.8)	391(27.4)	17(1.2)	7(0.5)	1,425(100.0)
여성	1,233(90.1)	83(6.1)	456(33.4)	130(9.5)	42(3.0)	363(26.5)	304(22.2)	15(1.1)	7(0.5)	1,367(100.0)

주: 다중응답분석.

○ 연령별 성폭력 관련법 인지경로

성폭력 관련법 인지경로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0대에서 타 연령에 비해서 TV/라디오 등의 공익광고를 통해서 법을 인지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95.4%), 연령이 낮을수록(20대, 50.9%)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폭력관련법을 인지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40대(32.0%)의 연령 집단은 신문잡지를 통하여 인지하는 경우가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58〉 연령별 성폭력 관련법 인지 경로 (단위: 명, %)

구분	TV/라디오 공익광고	여성단체/ 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학교/ 사회교육 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버스/택시 광고	친구/가족, 직장동료/ 이웃	신문/잡지	반성회보/ 구청 소식지	기타
전체	2,461(88.1)	112(4.0)	928(33.2)	246(8.8)	81(2.9)	687(24.6)	695(24.9)	33(1.2)	14(0.5)
만19세~29세	417(81.5)	8(1.6)	261(50.9)	91(17.7)	25(4.8)	138(27.0)	104(20.3)	3(0.6)	4(0.8)
만30세~39세	455(82.0)	28(5.0)	256(46.1)	50(9.0)	19(3.5)	119(21.4)	130(23.3)	3(0.5)	5(0.9)
만40세~49세	535(88.2)	33(5.4)	252(41.5)	59(9.7)	14(2.3)	152(25.0)	194(32.0)	8(1.3)	2(0.4)
만50세~59세	524(93.0)	36(6.3)	129(22.9)	40(7.1)	14(2.5)	144(25.5)	178(31.6)	11(2.0)	1(0.2)
만60세 이상	529(95.4)	7(1.3)	30(5.5)	6(1.1)	9(1.7)	135(24.3)	89(16.0)	7(1.3)	2(0.3)

주: 다중응답분석이며, 비율은 백분율로 환산된 것.

나. 공공 서비스 인지

성폭력 관련 서비스 기관 중 상담소(50.8%), 피해자 쉼터(40.8), 여성긴급전화 1366 (39.3%)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고 나머지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30% 이하로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

다.

〈표 4-59〉 성폭력 관련 공공 서비스 인지 (단위 : 명, %)

구분	안다	모른다	전체
여성긴급전화 1366	1,178(39.3)	1,822(60.7)	3000(100)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1,525(50.8)	1,475(49.2)	3000(100)
성폭력피해자 쉼터	1,225(40.8)	1,775(59.2)	3000(100)
원스톱지원센터	519(17.3)	2,481(82.7)	3000(100)
여성/아동성폭력센터	762(25.4)	2,238(74.6)	3000(100)
장애인성폭력 상담기관	812(27.1)	2,188(72.9)	3000(100)
성매매피해자 쉼터	625(20.8)	2,375(79.2)	3000(100)
이주여성긴급전화	467(15.6)	2,533(84.4)	3000(100)

○ 성별 공공 서비스 인지

성별 비교에서는 모든 기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서비스 기관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인지도 차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이 많아 성폭력 관련 공공 서비스 기관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4-60〉 성별 공공 서비스 인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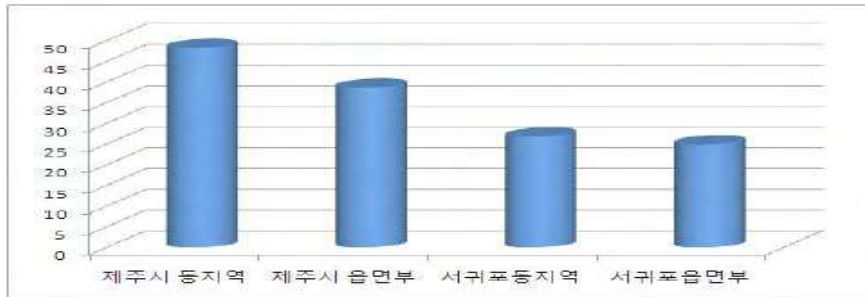
구분	여성 (N=1503)	남성 (N=1497)
여성긴급전화 1366	691(46.2)	488(32.5)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771(51.5)	754(50.2)
성폭력피해자 쉼터	658(44.0)	567(37.7)
원스톱지원센터	295(19.7)	223(14.8)
여성/아동성폭력센터	417(27.9)	223(14.8)
장애인성폭력 상담기관	413(27.6)	399(26.5)
성매매피해자 쉼터	316(21.1)	309(20.6)
이주여성긴급전화	270(18.0)	197(13.1)

주 : 여성 1,503명, 남성 1,497명의 다중응답 결과임.

‘여성긴급전화’ 인지여부는 성별로 응답내용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46.2%)이 남성(32.5%)보다 ‘안다’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인지여부를 성별로 살펴보면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51.5%)이 남성(50.2%)보다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 쉼터’ 인지여부는 성별에 따라서 응답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44.0%, 남성이 37.7%로 나타나 여성이 더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원스톱지원센터’ 인지여부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 응답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여성이 19.7%, 남

성이 14.8%로 나타났다.

〈그림 4-18〉 여성 긴급전화 지역별 인지



‘여성·아동 성폭력센터’의 성별 인지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27.9%)은 남성(14.8%)보다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장애인 성폭력 상담기관’에 대한 성별 인지율은 응답내용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27.6%)이 남성(26.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성매매 피해자 쉼터’의 성별 인지여부는 응답내용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여성(21.1%)과 남성(20.6%) 두 집단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이주여성 긴급전화’의 성별 인지여부는 응답내용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18.0%)이 남성(13.1%)보다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 ○ 지역별 공공 서비스 인지

제주지역 성폭력 관련 공공 서비스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를 지역별로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 긴급전화 1336’에 대한 인지여부는 ‘안다’라는 응답은 제주시 동지역(48.2%)와 제주시 읍·면지역(38.6%) 거주자들이 서귀포시 동지역(26.8%)과 서귀포시 읍·면지역(24.9%) 거주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61〉 지역별 공공 서비스 인지

(단위: 명, %)

구분	제주시 동지역 (N=1,536)		제주시 읍·면지역 (N=448)		서귀포시 동지역 (N=634)		서귀포시 읍·면지역 (N=382)		$\chi^2$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여성긴급전화366	740(48.2)	796(51.8)	173(38.6)	275(61.4)	170(26.8)	464(73.2)	95(24.9)	287(75.1)	125.647***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766(49.9)	770(50.1)	211(47.1)	237(52.9)	342(53.9)	292(46.1)	206(53.9)	176(46.1)	6.987
성폭력 피해자 쉼터	630(41.0)	906(59.0)	168(37.5)	280(62.5)	297(46.8)	337(53.2)	130(34.0)	252(66.0)	18.882***
원스톱지원센터	307(20.0)	1,229(80.0)	89(19.9)	359(80.1)	63(9.9)	571(90.1)	60(15.7)	322(84.3)	34.515***
여성/아동성폭력센터	436(28.4)	1,100(71.6)	99(22.1)	349(77.9)	146(23.0)	488(77.0)	81(21.2)	301(78.8)	15.233
장애인성폭력 상담기관	462(30.1)	1,074(69.9)	84(18.8)	364(81.3)	167(26.3)	467(73.7)	99(25.9)	283(74.1)	23.179***
성매매피해자 쉼터	273(24.3)	1,163(75.7)	53(11.8)	395(88.2)	142(22.4)	492(77.6)	57(14.9)	325(85.1)	42.140***
이주여성긴급전화	289(18.8)	1,247(81.2)	67(15.0)	381(85.0)	77(12.1)	557(87.9)	34(8.9)	348(91.1)	31.022***

 $\chi^2$ 값은 Chi-Square test, \*\*\*p<.001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인지여부는 지역별에 따라서 인지 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안다’라는 응답은 서귀포시 동지역(53.9%)과 서귀포시 읍·면지역 거주자(53.9%)들이 제주시 동지역(49.9%)과 제주시 읍·면지역(47.1%) 거주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 쉼터’의 지역별 인지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안다’라는 응답은 서귀포시 동지역(46.8%)과 제주시 동지역(41.0%) 거주자들이 서귀포시 읍·면지역(34.0%)과 제주시 읍·면지역(37.5%) 거주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원스톱지원센터’ 서비스의 인지율에 대하여 ‘안다’라는 응답은 제주시 동지역(20.0%)과 제주시 읍·면지역(19.9%) 거주자들이 서귀포시 동지역(9.9%)과 서귀포시 읍·면지역(15.7%) 거주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아동 성폭력센터’에 대하여는 ‘안다’라는 응답이 제주시 동지역(28.4%) 거주자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귀포시 동지역(23.0%), 제주시 읍·면지역(22.1%) 거주자들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성폭력 상담기관’에 대해서는 제주시 동지역(30.1%)과 서귀포시 동지역(26.3%) 거주자들이 서귀포시 읍·면지역(25.9%)과 제주시 읍·면지역(18.8%) 거주자들보다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매매 피해자 쉼터’의 인지여부를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안다’라는 응답이 제주시 동지역(24.3%)과 서귀포시 동지역(22.4%) 거주자들이 제주시 읍·면지역(11.8%)과 서귀포시 읍·면지역(14.9%) 거주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주여성 긴급전화’ 인지여부는 제주시 동지역(18.8%)과 제주시 읍·면지역(15.0%) 거주자들이 서귀포시 동지역(12.1%)과 서귀포시 읍·면지역(8.9%) 거주자들보다 인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쉼터’, ‘성매매 피해자 쉼터’에 관한 인지는 동지역이 읍·면지역 보다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성 긴급전화 1366’과 ‘여성/아동 성폭력 센터’, ‘원스톱 지원센터’, 그리고 ‘이주여성 긴급전화’는 서귀포시

지역보다 제주시 지역의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긴급지원센터의 성격을 지닌 기관의 공공 서비스 인지율이 서귀포시보다 제주시 지역이 높게 나온 이유는 서귀포시 지역의 성폭력 관련 지원 기관이 부족하여 인지율이 낮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 연령별 공공 서비스 인지

성폭력 관련 제공 서비스 기관 중 ‘여성 긴급전화’ 인지여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서 응답내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다’라는 응답은 40대(50.6%), 30대(44.5%), 20대(43.2%)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인지여부 역시 연령에 따라서 응답내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다’라는 응답비율이 40대(58.7%), 20대(55.9%), 30대(54.6%)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쉼터’ 인지여부는 연령별로 응답내용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대(47.0%), 40대(46.9%), 50대(45.7%) 순으로 ‘안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원스톱지원센터’ 인지여부도 역시 연령에 따라서 응답내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다’라는 응답은 40대(24.1%), 30대(21.0%), 50대(19.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아동 성폭력센터’ 연령별 인지여부는 40대(31.2%), 50대(29.3%), 20대(28.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62〉 연령별 공공 서비스 인지 (단위: 명, %)

구분	만 19 - 29세 (N=544)		만 30 - 39세 (N=586)		만 40 - 49세 (N=635)		만 50 - 59세 (N=600)		60세 이상 (N=655)		χ²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여성긴급전화 1366	235(43.2)	309(56.8)	252(44.5)	314(55.5)	321(50.6)	314(49.4)	252(42.0)	348(58.0)	118(18.0)	537(82.0)	169.911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304(55.9)	240(44.1)	309(54.6)	257(45.4)	373(58.7)	262(41.3)	322(53.7)	278(46.3)	217(33.1)	438(66.9)	108.700
성폭력 피해자 쉼터	228(41.9)	316(58.1)	266(47.0)	300(53.0)	298(46.9)	337(53.1)	274(45.7)	326(54.3)	158(24.1)	497(75.9)	100.465***
원스톱지원센터	66(15.8)	458(84.2)	119(21.0)	447(79.0)	153(24.1)	482(75.9)	118(19.7)	482(80.3)	42(6.4)	613(93.6)	83.589
여성·아동성폭력센터	156(28.7)	388(71.3)	154(27.2)	412(72.8)	198(31.2)	437(68.8)	176(29.3)	424(70.7)	79(12.1)	576(87.9)	81.591
장애인성폭력 상담기관	146(26.8)	398(73.2)	163(28.8)	403(71.2)	208(32.8)	427(67.2)	190(31.7)	410(68.3)	104(15.9)	551(84.1)	59.300
성매매피해자 쉼터	91(16.7)	453(83.3)	127(22.4)	439(77.6)	167(26.3)	468(73.7)	153(25.5)	447(74.5)	87(13.3)	568(86.7)	48.511
이주여성긴급전화	74(13.6)	470(86.4)	83(14.7)	483(85.3)	143(22.5)	492(77.5)	117(19.5)	483(80.5)	51(7.8)	604(92.2)	62.422

χ²값은 Chi-Square test, \*\*\*p<.001

‘장애인 성폭력 상담기관’의 인지율은 40대(32.8%), 50대(31.7%), 30대(28.8%)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성매매 피해자 쉼터’ 인지여부는 40대(26.3%), 50대(25.5%), 30대(22.4%) 순으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여성 긴급전화’의 연령별 인지여부 40대(22.5%), 50대

(19.5%), 30대(14.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 관련 공공 서비스의 인지에 관한 조사에서 연령별로 40대가 가장 많은 기관들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 정책욕구

##### 1) 응답자의 정책욕구

###### (1)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피해자를 위한 관련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조사에서는 정신적·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54.0%)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법적지원(31.3%), 의료지원(11.2%), 정보제공(3.6%)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63〉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단위: 명, %)

전체	3,000(100.0)
정신적 심리적 치료	1620(54.0)
법적지원	938(31.3)
의료지원	335(11.2)
정보제공	107(3.6)

###### ○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책 서비스(성별)

성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두 집단 모두 정신적·심리적 치료가 가장 필요하고 그 다음 순으로 법적지원, 의료지원, 정보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남성(32.9%)은 여성(29.7%)보다 법적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여성(59.7%)은 남성(50.0%)보다 정신적·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4-64〉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성별) (단위 : 명, %)

구분	성별		전체	$\chi^2$
	남성	여성		
전체	1,503(100.0)	1,497(100.0)	3,000(100.0)	22.039***
정신적 심리적 치료	752(50.0)	867(57.9)	1619(54.0)	
법적지원	495(32.9)	444(29.7)	939(31.3)	
의료지원	197(13.1)	138(9.3)	335(11.2)	
정보제공	59(3.9)	48(3.2)	107(3.6)	

$\chi^2$ 값은 Chi-Square test, \*\*\*p<.001

### ○ 지역 및 연령별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 관련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응답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정신적 심리적 치료에서 제주시 동지역 54.9%, 제주시 읍·면지역 60.2%, 서귀포시 동지역 52.3%, 서귀포시 읍·면지역 42.9%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법적지원이 제주시 동지역 30.1%, 제주시 읍·면지역 29.5%, 서귀포시 동지역 30.9%, 서귀포시 읍·면지역 39.3%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65〉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전체	$\chi^2$
전체	1,536(51.2)	448(14.9)	634(21.1)	382(12.7)	3,000(100.0)	32.681***
정신적 심리적 치료	844(54.9)	270(60.2)	332(52.3)	164(42.9)	1,610(54.0)	
법적지원	462(30.1)	132(29.5)	196(30.9)	150(39.3)	940(31.3)	
의료지원	171(11.1)	37(8.1)	81(12.8)	53(13.9)	342(11.4)	
정보제공	59(3.8)	9(2.1)	25(4.0)	15(3.8)	108(3.6)	

$\chi^2$ 값은 Chi-Square test, \*\*\*p<.001

피해자를 위한 관련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응답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정신적·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0대가 가장 높고(58.2%), 그 다음이 30대(56.2%), 20대(53.2%) 순으로 나타났다. 법적지원은 5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33.4%) 나타났다.



〈표 4-66〉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만19세~29세	만30~39세	만40~49세	만50세~59세	만60세 이상	전체	$\chi^2$
전체	544(100.0)	566(100.0)	635(100.0)	600(100.0)	655(100.0)	3,000(100.0)	26.666**
정신적 상담 치료	289(53.2)	318(56.2)	370(58.2)	306(51.0)	326(49.8)	1,621(54.0)	
법적지원	171(31.4)	168(29.7)	184(29.0)	193(33.4)	217(33.1)	937(31.2)	
의료지원	58(10.7)	61(10.8)	60(9.5)	64(11.1)	95(14.5)	335(11.2)	
정보제공	26(4.8)	19(3.3)	21(3.3)	27(4.6)	17(2.6)	107(3.6)	

$\chi^2$ 값은 Chi-Square test, \*\*p<.01

(2) 우선 지원되어야 할 성폭력 관련 서비스

우선 지원되어야 할 성폭력 관련 서비스 1순위는 전체적으로 생활비 지원(29.2%)이 가장 높았고 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28.6%), 그 다음이 취업지원 등 자활지원(27.1%) 순으로 나타났고, 자립을 위한 금융서비스(8.4%)와 직업훈련 지원(6.8%)은 비교적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우선 지원되어야 할 성폭력 관련 서비스 2순위 응답으로는 취업지원 등 자활지원(30.4%), 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20.8%), 직업훈련 지원(19.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순위, 2순위를 합친 정책요구조사에서는 취업지원 등 자활지원(56.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67〉 우선 지원되어야 할 성폭력 관련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종합(1순위+2순위)
생활비지원	875(29.2)	478(16.3)	1353(45.1)
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857(28.6)	611(20.8)	1468(48.9)
자립을 위한 금융서비스	252(8.4)	376(12.8)	628(20.9)
취업지원 등 자활지원	813(27.1)	891(30.4)	1704(56.8)
직업훈련 지원	204(6.8)	578(19.7)	782(26.1)

○ 성별 우선 지원되어야 할 성폭력 관련 서비스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29.2%)은 여성(29.1%)보다 생활비 지원, 취업지원 등 자활지원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 주거지원에 대한 응답은 여성(29.7%)이 남성(27.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응답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68〉 우선 지원되어야 할 성폭력 관련 서비스 (성별) (단위 : 명, %)

구분	생활비지원	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자립을 위한 금융서비스	취업지원 등 자활지원	직업훈련 지원	전체
전체	875(29.2)	857(28.6)	253(8.4)	811(27.1)	204(6.8)	3,000(100.0)
남성	439(29.2)	412(27.4)	137(9.1)	410(27.3)	105(7.0)	1,503(100.0)
여성	436(29.1)	445(29.7)	116(7.7)	401(26.8)	99(6.6)	1,497(100.0)

### (3) 성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 1순위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응답은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30.2%)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으며, 그 다음 성폭력 예방과 교육강화(25.8%), 우범지역 해소 및 치안유지(19.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가해자 처벌(57.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성폭력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강화(43.1%), 지역내 우범지역 해소 및 치안유지(38.9%)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강화는 1순위, 2순위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율을 나타내 가장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원하는 성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조사되었다.

〈표 4-69〉 성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종합(1순위+2순위)
성폭력 예방과 성역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773(25.8)	521(17.5)	1,294(43.1)
TV등 공익 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	376(12.5)	328(11.0)	704(23.4)
지역 내 우범지역 해소 및 치안유지	589(19.6)	579(19.4)	1,168(38.9)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강화	906(30.2)	822(27.6)	1,728(57.6)
상담, 교육 등 가해자의 교정 치료 프로그램 강화	250(8.3)	390(13.1)	640(21.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	106(3.5)	336(11.3)	442(14.7)
기타	1(0.0)	3(0.1)	4(0.1)

#### ○ 성별 성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1순위에 대한 성별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은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강화(27.3%)와 성폭력 예방과 성역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지역 내 우범지역 해소 및 치안 유지가 20.5%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강화가 33.0%, 성폭력 예방과 성역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가 24.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70> 성별 성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

(단위 : 명, %)

구분	성별		전체	χ²
	남성	여성		
전체	1,503(100.0)	1,497(100.0)	3,000(100.0)	13.901*
성폭력 예방과 성역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412(27.4)	361(24.1)	773(25.8)	
TV등 공익 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	188(12.5)	189(12.6)	376(12.5)	
지역 내 우범지역 해소 및 치안유지	308(20.5)	280(18.7)	589(19.6)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강화	411(27.3)	494(33.0)	906(30.2)	
상담, 교육 등 가해자의 교정 치료 프로그램 강화	130(8.6)	119(8.0)	250(8.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	53(3.5)	54(3.6)	106(3.5)	
기타	1(0.1)	0(0.0)	1(0.0)	

χ²값은 Chi-Square test, \*p<.05

○ 연령별 성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1순위에 대한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강화에서 만19세~29세 34.1%, 만30세~39세 33.7%, 만 60세 이상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50세~59세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성역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응답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71> 성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만19세~29세	만30~39세	만40~49세	만50세~59세	만60세 이상	전체	χ²
전체	544(100.0)	566(100.0)	635(100.0)	600(100.0)	655(100.0)	3,000(100.0)	78.938***
성폭력 예방과 성역할 인식 개선을 위한교육 강화	106(19.5)	138(24.3)	181(28.5)	198(33.0)	149(22.8)	773(25.8)	
TV등 공익 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	76(13.9)	62(10.9)	69(11.1)	64(10.7)	103(15.7)	376(12.5)	
지역 내 우범지역 해소 및 치안유지	104(19.1)	98(17.4)	111(17.5)	126(21.1)	147(22.5)	588(19.6)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강화	186(34.1)	191(33.7)	198(31.2)	147(24.5)	187(28.5)	906(30.2)	
상담, 교육 등 가해자의 교정 치료프로그램 강화	56(10.4)	43(7.6)	47(7.4)	55(9.2)	49(7.5)	249(8.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	16(3.0)	34(6.0)	26(4.1)	10(1.6)	20(3.0)	106(3.5)	
기타	0(0.0)	0(0.0)	4(0.1)	0(0.0)	0(0.0)	1(0.0)	

χ²값은 Chi-Square test, \*\*\*p<.001

2) 성폭력 경험 집단의 정책수요

성폭력 경험 집단의 정책욕구를 살펴보기 위해 성폭력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정책욕

구를 비교해 보았다. 성폭력이 있는 집단이 응답한 피해자를 위한 관련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은 정신적·심리적 치료가 6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이 법적지원(21.1%), 의료지원(8.8)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과 비슷하나 다른 항목에 비해 정신적·심리적 지원을 원하는 비율이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72〉 성폭력 경험 집단의 정책수요 (단위: 명, %)

구분	정신적 심리적 치료	법적 지원	의료지원	정보제공	전체
전체	1,640(54.7)	929(31.0)	325(10.8)	106(3.5)	3,000(100.0)
경험 있음	37(64.9)	12(21.1)	5(8.8)	3(5.3)	57(100.0)
없음	1,603(54.5)	917(31.2)	320(10.9)	103(3.5)	2,943(100.0)

우선 지원되어야 할 성폭력 서비스 조사에서 성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은 취업지원 등 자활지원이 45.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생활비 지원(24.6%)과 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24.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이 피해자 주거지원(28.9%)과 생활비 지원(28.0%)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표 4-73〉 우선 지원되어야 할 성폭력 서비스 (성폭력 경험집단) (단위: 명, %)

구분	생활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지립을 위한 금융 서비스	취업지원 등 자활지원	직업훈련 지원	전체	$\chi^2$
전체	837(27.9)	864(28.8)	249(8.3)	834(27.8)	216(7.2)	3,000(100.0)	
경험 있음	14(24.6)	14(24.6)	0(0.0)	26(45.6)	3(5.3)	57(100.0)	12.353*
없음	823(28.0)	850(28.9)	249(8.5)	808(27.5)	213(7.2)	2,943(100.0)	

$\chi^2$ 값은 Chi-Square test, \*p<.05

성폭력 피해 경험자가 응답한 성폭력 예방정책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가 가장 많았고(31.6%), 그 다음이 가해자 처벌 강화(29.8%), 지역 내 우범지역의 치안강화(15.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은 가해자의 처벌강화(30.2%),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25.2%), 지역 내 우범지역 해소 및 치안유지(19.9%) 순으로 나타나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인식개선 교육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4〉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예방정책

(단위: 명, %)

구분	성폭력 예방과 성역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TV 등 공익 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	지역 내 우범지역 해소 및 치안유지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 강화	상담, 교육 등 가해자의 교정 치료 프로그램 강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	기타	전체
전체	761(25.4)	377(12.6)	594(19.8)	906(30.2)	249(8.3)	111(3.7)	2(0.1)	3,000(100.0)
성폭력 경험 있음	18(31.6)	7(12.3)	9(15.8)	17(29.8)	3(5.3)	3(5.3)	0(0.0)	57(100.0)
없음	743(25.2)	370(12.6)	585(19.9)	889(30.2)	246(8.4)	108(3.7)	2(0.1)	2,943(100.0)

## 제 5 장

---

# 성폭력 피해자 및 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1. 피해자 심층면접
2. 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 1. 피해자 심층면접

### 가. 조사개요

심층면접에 참여할 대상은 제주도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원스톱지원센터 등 시설 종사자와 성폭력 피해자로 구성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심층면접은 제주지역 내 성폭력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였다. 사례9를 제외하고는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기관을 이용한 피해자 중에서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대상을 소개받아 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연령은 10대와 50대가 각각 1명, 20대와 30대가 각각 3명, 40대가 2명으로 주로 20~30대가 많았으며 피해 유형은 강간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성추행이 4명, 성희롱이 1명이었다. 피해당시 연령은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했으며 가해자와의 관계는 직장상사가 가장 많은 4명이었고 그 다음이 애인(2명), 기타 남편, 지인, 이웃 등이었다. 본 조사에 참여한 피해자 중 사례5는 지체장애인이었고 사례6은 성매매 업소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었다.

〈표 5-1〉 성폭력 피해자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사례	피해당시 연령	현재연령	피해유형	가해자와의 관계	비고
사례1	10대 후반	20대 후반	신체폭력, 강간	애인	
사례2	20대 후반	30대 초반	성추행	직장상사	
사례3	20대 중반	40대 초반	성추행	직장상사	
사례4	20대 중반	20대 중반	성추행	직장상사	
사례5	50대 초반	50대중반	강간	이웃	장애인
사례6	30대 중반	30대 중반	강간	지인	성매매 피해자
사례7	30대 초반	30대 후반	강간	남편	
사례8	30대 후반	40대 중반	성희롱	직장상사	
사례9	10대 후반	20대 중반	성추행	모르는 사람	
사례10	10대 중반	10대 중반	강간	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심층면접 내용은 피해당사자의 경험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면접방식은 면접내용에 관해 사전에 대략적인 질문지를 만들어 진행하였고 질문내용 이외에 당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대부분 성폭력의 충격이나 후유증을 상당부분 극복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태였고 진술이 어려운 경우 전문상담원이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전문상담원이 인터뷰를 대신

진행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인터뷰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하였고 이를 분석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의 내용은 주로 피해경험과 대응, 그리고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바라는 점이나 정책개선점 등을 질문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2〉 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내용

영역	세부영역
경험	성폭력 피해경험(나이, 피해유형, 피해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 후유증 (심리적 상해, 심적 변화)
	주변의 반응
	일상생활의 변화
대응	상담소 도움내용
	사건처리과정의 어려움
	대응방법 혹은 대응하지 못한 이유
정책	경찰, 법원, 병원 등 관련기관의 개선책
	성폭력 예방정책
	시설이용 불편한 점

## 나. 피해자 심층면접 결과

### 1) 성폭력 피해 경험

#### (1) 피해 당시의 심리적 상태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성폭력 유형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내용들이 드러났다. 피해당시의 느낌에 대하여 면접자들은 대체로 무서움, 공포, 분노, 성적 모욕감, 수치심, 무력감 등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지만 오랫동안 ‘불편함’으로 기억된다고 했다.

#### ○ 억울함/ 분노

사례5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에게 자신의 집에서 강간피해를 당했다. 가해남성은 반복해서 수차례 그녀를 강간했는데 당시 그녀는 저항하기 힘들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토로한다. 다리가 불편한 상황에서 가해 남성에게 저항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 상황이 너무 힘에 부쳤다고 말한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상처도 입었고 억울함에 울며 밤을 새웠지만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도 못하고 몸이 아팠음에도 병원을 가지 못했다. 그녀의 진술을 통해 신체적 상처와 정신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강간 피해를 드러내고 말하는 것이 여성의 입장에서 힘겨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갱이를 막 하다보니깐 막 (...) 하다하다 나가 너무 지친거라. 막 다리가 힘드니까 막 다리가 꼬이더라고. 이 아픈 다리가. 어떻게든 반응 할 수가 없어. 아이고 나가 한 거라. 그냥이. 지쳐가지고(...) 왔다가 하다 버치든(힘에 겨우면) 막 나중에 보니까 온몸이 멍이 막 들었더라고. 막 실갱이를 하니깐. (...) 그뒤로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라. 창피해가지고. 어디강 맞았던 헬거짜 이렇게 당했던 헬거짜. 나 혼자 운거라. 그지랄해서 가부니까 그니까 거의 한 30분 넘은거 같애. 그 실갱이 자체가. 가버렸어. 가니까 잠도 안오고. 다음날 --일은 가야되잖아. 눈 텅텅 붓고 갔어. 내가. 언니 무사(왜) 눈 경(그렇게) 부연(부었어)? 하난(하니깐) 어저께 막 속상한 일 이션(있어서) 울었져. 경만(그렇게만) 했지(사례5).

### ○ 공포

사례9는 10대 후반에 한밤중에 집안에 괴한이 침입해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의 느낌에 대하여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없었다'로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 한다. 잠깐 동안의 일이었지만 당시의 기억은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잠을 못잤는데 계속 진짜 잘 기억은 안났는데, 만나는데 거의 진짜 한달 이상이었던 거 같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처음에 한 2~3일 간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에는 아예 잠을 못자고 거의 뜯 눈으로 지새다시피 하고(...) 지금도 말하니깐 목소리도 떨리고 하는데 그랬었어요. (...) 그게 고등학교 한... 10년 전쯤? 인데도 지금도...(사례9).

### ○ 수치심, 모욕감

여성에게 성폭력은 심한 성적 모욕감을 주기도 한다. 사례1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남성구매자들과의 관계가 폭력적인 경험이었음을 진술했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면서도 상대 남성과의 경험은 심한 성적 모욕감을 주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러한 정신적 고통을 위안 받기 위하여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척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했다.

근데 그게 자기 전에 자꾸 떠올라서 막 또 그런 식으로 막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떠오르고 남들이랑 있으면 안그런데 그거 때문에 혼자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되게 못 자고 그러가지고 약 먹

고(...) 먹다 보니까 계속 약도 늘어나고 그 얘기를 하다보면요. 아가씨들이 절반 이상은 수면제를 먹어요 (...)성적 모욕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거 안 느껴도 되고. (사례1)

### ○ 말할 수 없는 불편함

사례7은 부부간격을 경험한 사례이다. 그녀는 결혼 이후 남편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했고 시간이 지나 상담소의 상담을 거친 후에야 부부관계에서도 강간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했다고 말한다. 결혼생활 중 남편과의 관계에서 너무도 싫지만 울면서까지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성관계의 불편한 느낌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녀에게 성폭력이고 부부간격으로 이해되는 경험이었다.

애를 키우면서 억지로 잠자리를 할 때 있잖아요. 어쩔 땐 정말 내가 강간당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정말 싫은데 와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 정말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울면서까지도 했었거든요. 너무 싫으니까. 근데 아, 이런게 이게 그래서 그 감정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긴 했던 거 같아요(사례7).

사례3은 오래전 직장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그녀는 그 당시에는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상사의 추행이 '사랑'이라고 느꼈으나 오래 시간이 지나 당시의 경험이 폭력임을 깨달았다. 당시의 경험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음을 기억하며 오랜 시간이 지나 성폭력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불편함으로 기억되는지를 깨달았다고 한다. 직장상사의 권력관계에서 성추행이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너무 불쾌하고 두려웠다고 기억한다.

스무살 때 직장 상사였는데 무척 친절했고 다정 다감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회식자리에서 자주 이제 먼 거리에 회식을 가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배웅을 해주겠다 이유로 이제 차를 태워서 모텔로 가는 거죠. 이제 호텔로. 저는 그때는 너무 어렸고 이제 반항이라든가 거부를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너무 두려웠고 (...)처음부터 막 성폭력을 하지는 않고 어쨌든 뭐라고 그래야 되죠? 관계 깊은 관계까지는 하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그 사랑이라는 나를 만지는 게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느꼈어요(사례3).

사례6은 아는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강간피해를 입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강간을 당했고 저항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 이후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으로 자해행위를 하기도 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해서 상담과 정신치료를 병행하기도 했다. 그녀에게 성폭력 경험은 '안당해보면 모르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든 기억이고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짧은 한 마디를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례

6의 진술을 통해 여성에게 성폭력 경험은 언어화하기도 힘들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흥이 안나요. 흥이 안나고 남자랑게 지나가다가 누군가 이렇게 스치잖아요. 자지러져요. 자지러지고 소리 지르고 말 크게하고 진짜 안당해보면 몰라요. 그거는 진짜. 진짜 그거는 안 당해 본 사람은 몰라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거한지 진짜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사례6).

## (2) 피해의 영향

성적 트라우마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혼돈, 사회적 역기능, 직장과 학교의 손실, 인력낭비, 이혼문제 등을 포함한 간접적이고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개인의 삶 속에서 성폭력의 영향은 순간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기 보다는 많은 경우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면접자들의 성폭력 이후의 변화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 등이었다. 신체적 증세로는 육체적인 상처, 불면증, 섭식장애, 정신적으로 무력감, 자책, 분노,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가 어려워지고 심하게는 대인기피증을 경험한 사례도 있었다.

### ○ 신체적 피해

사례5는 이웃에게 강간피해를 당한 후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신체적 상처에 대한 치료는 받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는 무료로 받을 수 있음에도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그냥 약국에서 약을 사다 발랐다. 그러나 심한 불면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고 강간피해를 말하지 못했다. 그녀가 자신의 증세를 설명하는 단어는 단지 '인간도둑이' 들어서 놀란 것이었다.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겨냥한 '인간도둑'이라는 말은 그녀가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음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다.

여기 밑에가 막 혈어가지고 병원도 창피해서 못가고 여기 뺏드락지 났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연고만 사다 매 발랐어요. 지금도 찢찢해가지고 어떨 때는 막 그 생각이 나면 가끔 또 뺏드락지가 나더라고. (...) 근데 누가 정신과에 가면 잠자는 약 준다 그 얘기해서 먹은 거지. 몰랐어요. (...) 게 누가 그렇게 잠 못장(자서) 어떻 사냐고 (...)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약 준다고 하더라고. 무슨 일 때문에 잠을 못자냐고 물어보게 된거라. 원장님이.(...) 픽하게 웃더라고. 거난 웃는 자체는 나도 기분 나쁜거라예. 아무리 원장님이라도 웃지 말아야 되잖아요. 난 강 창피하게 얘기한건데. 남자분한테 (...)인간 도둑이 들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당했던 말 안하고 놀래가지고 지금 자꾸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잠도 못자고 이렇게 그렇게 얘길해서 약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사례5).

### ○ 정신적 고통

사례4는 직장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그 이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사람에게 대한 분노에서 자책, 그리고 이어서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했다. 그녀는 직장에서 자신의 피해를 상담원을 통해 알렸으나 오랜 기간에 걸친 조사와 여러 차례 전출하는 등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성추행 피해 이후 자신이 말하는 감정적 변화는 슬픔, 분노, 자책, 자살충동 이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문제제기 했음에도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실망감과 좌절감 때문이었다.

맨날 막 누가 뭐라고 조금만 해도 울고 막 이랬던 거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우는 단계가 지나니까 사람들한테 미운 감정이 생기더라구요(...) 분노에서 자책으로 가니까 이제는 막 막 뭔가 제가 뭔가 실수를 하면은 그거를 못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막 제가 막 칼 같은 걸로 손 긁고 막 그랬던 거 같아요(...) 진짜 죽고 싶고 매일 매일 막 기도 하는게 죽고 싶다 었잖아요. 막 거기 호수 있는데 이렇게 호수에 겨울이니까 빠지면 죽겠지? 이러면서 막 아니면 버스, 출근버스 타고 갈 때 버스 사고 났는데 내 옆에만 들이 박아서 막 나만 딱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일부러 걸어 다닐 때도 막 차도로 다니고 (사례4)

성폭력은 유형과는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한다. 반드시 강간 피해가 아니더라도 그 공포와 상처는 깊고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이 면접자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사례9는 약 10년 전에 한밤중 피한의 침입으로 성추행을 당했고 그 이후 오랫동안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당시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표현할 수 없었지만 잠재적으로 엄청난 공포가 있었노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막 악몽을 꾸고 막 누구한테 쫓긴다거나 그래서 꿈속에서 엄청 많이 우는. 눈물은 나는데 막 너무 억눌러가지고 막 막 소리 없는 막 으윽 껌 껌 되면서 우는 그런 꿈을 꾸고 막 일어나면 딱 눈을 뜨면 내가 진짜 그때 그만큼 힘들었었구나 그거를 그때야 느끼는 거예요(사례9).

### ○ 경제적 손실

성폭력 피해 이후 여러 사례자가 호소하는 어려움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 이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이다. 사례2는 직장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상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가해자를 고소했다. 자신의 노력과 상담소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고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그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그 이후 자신의 경력에 어울리는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성폭력 사건은 오랫동안의 법적인 싸움 끝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의 어려운 삶은 고스라니 개인의 몫으로 남

게 되었다.

이제 빚만 많아지고 살아야 되니까 빚은 늘고 그 계속(...)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서 그 생활이 유지가 됐는데 여기 오니까 (...) 일할 데도 없고(...) 그 그니까 수입이 일정치 않으니까 계속 모아뒀던 돈 쓰고 쓰고 하면서 이제 이거 사건만 끝나면 00 올라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끝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사례2).

성폭력 피해 이후 사례5의 경우도 경제적 피해를 있었다고 말한다. 이웃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후 반복적으로 집으로 찾아오는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숨어 지내다가 이사를 했다. 그러느라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어려운 살림에 경제적인 손해가 컸다. 그녀는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고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를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비롯하여 정신적인 불안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사람 때문에 나는 피해가 장난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모든 돈도 피해봤지, 정신적으로도 피해봤지, 몸도 피해봤지. 평생 마음 불안병 생겼지. 우울증까지 생겨버렸지. 짝하면 잘 안들리던 눈물까지 나지. 누가 조금 얘기하면 지금 서러움밖에 없어. 나 뭘 얘기해도 혹시 내 얘기 행신가(하고있는건가). 의심 병이 생겼다니까. 지금(사례5).

### ○ 일상생활 변화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폭력을 연속선(심영희, 1989) 개념으로 이해해야 함을 사례8의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폭력은 권력이 있는 가해자와 권력이 없는 피해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진행되고 반복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례2는 직장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가해자가 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저항할 수 없었고 성추행 사실을 문제제기를 하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상황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고 한다. 성추행 피해경험 이후 그녀는 한동안 식사를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자신이 직장을 얻기까지의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직장상사와의 권력관계 때문에 저항하지 못한 억울함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말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 그때부터 밥도 하나도 못 먹어서 엄마랑 아빠도 저랑 같이 식사를 못하셔요. 계속. 엄마 왜냐면 제가 되게 성격도 원래는 되게 밝고 (...) 사람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 하던 애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방에(...) 그냥 구석에만 있으니까 엄마랑 아빠가 막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사례2)

사례6은 아는 언니의 남편에게 강간피해를 경험한 후 심한 무기력증을 겪었다고 진술한다. 피해 이후 그녀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인간관계 유지가 어려웠다. 이러한 감정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이어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녀에게 피해경험은 정신적 충격과 함께 인간관계의 어려움, 나아가 일상생활 유지까지 지장을 주는 것이었다.

힘들고 지치고 또 막 서럽고 왜 내가 내가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나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해서 또 원망스럽기도 나한테 원망스럽기도 하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어요. 솔직히. 그 일 있고 나서 나 하나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일하는 부분에서 손이 안맞고 약에 의존하게 되고 병원 갔다오면 좀 나아지고. (...) 사람 사귀는 자체가 싫었어요. 그 일 있고 나서부터.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사람 만나는 거,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일하는 거 다 포기했어요(사례6).

성폭력은 여성의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킨다.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8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이후 자신의 일상에 지속적으로 가해자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가 지속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녀의 진술에 의하면 가해자는 직장상사였고 자신이 해고당한 이후 성희롱이 아닌 다른 문제로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을 음해하였고 그로 인해 일을 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특히 가해자는 자신보다 권력이 있는 남성이었고 좁은 지역적 관계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난감할 때가 많았다고 회상한다.

맨날 울명(울면서) 지냈죠. 그래서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센터장에 대한. 워낙 저하고 정반대 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 억울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둘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쪽으로 들으면 이쪽 말이고 저쪽 말이면 저쪽 말이고 다 틀린 거잖아요.(...)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말이 맞다고 하고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요쪽에 말이 맞다고 하고. 사실 이 작은 동네에서, 작은 동네에서 이 사건이 그래서 막 둘로 나뉘진 거죠. 지금도 정리가 안됐어요(사례8).

## 2) 대응방법

면접자들에게서 나타난 성폭력 피해의 대응방법은 처음에는 저항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있었으나 시간이 지난 후에 법적으로 고소하거나 상담소를 찾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는 등 행동을 취했다. 상담소를 찾거나 신고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는지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상담소, 혹은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

## (1) 적극적 대응 - 가해자와의 단절, 법적 고소, 상담소 도움

사례5는 한 동네에 사는 지인에게 강간피해를 경험한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저항할 수 없었던 이유를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다. 강간범죄에서 여성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면 피해를 면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여성들을 목숨을 걸고 저항하게 만들고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죄의식을 갖게끔 만드는 왜곡된 고정관념에 대하여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피해를 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녀의 진술은 바로 이러한 관념에 대한 해명이자 저항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몸을 허락했지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그녀는 가해자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집안을 단속하고 피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차근차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실천해 나간다.

처음에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했고 두 번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두 번 그대로 했어요 (...) 두 번째로는 왜 그냥 줘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기위해서 줘다고 했어. 죽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안주면은 나를 죽일까봐 겁나서. 힘으로 못 이기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이건 아니다. 내가 이 바닥을 떠야 되겠다. (...) 갈데도 없고 뭐해가지고 이젠 가야되는데 살진 못하고 미리 갈수도 없고 군인담요랑 신문이랑 까만 비닐봉지 큰 거 있잖아요. 불빛 안보이게 해서 온 집안을 다 붙인 거라. 문이란 문은. 다붙이고 그 앞에 유리에만 테이프로 붙여 놔다가 요렇게 해서 밖에 봐요. 내가. 차가 나가나 안나가나 (...) 그 사람 눈에 안떨려고. 사람 없는 거 같이... (사례5).

사례5는 피해 이후 지인의 도움으로 상담소를 찾게 되어 법적, 정신적인 도움을 받았다. 그녀가 상담소의 도움을 받고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게 된 것은 가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함께 사는 마을에서 이사를 하고 난 이후 가능했다. 자신이 경험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억울함도 있었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했지만은 억울해서도 한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야. 나 자신도 억울했고 힘없는 사람 장애인이라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강제적으로 눌러 눌러가면서 했다는 것도 억울한 거고 나를 혼자 산다고 무시했다는 것도 억울한 거고. 그럴잖아요?(사례5)

사례8은 직장상사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처음에는 그냥 참았으나 자신 뿐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피해를 입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해자에게 맞서기 시작했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부당해고로 지역 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나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거나 회사의 대표에게 직접 자신의 해고가 부당함을 설명했으나 문제의 핵심인 성희롱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부당해고의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인권위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이라는 이유로 기각되기에 이른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성희롱과 부당해고로 이어지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결국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었다.

같이 일하는 상사관계니까. 그래서 그냥, 아유, 그냥 참고 그냥 이게 그냥 털어 불고(버리고) 가자해서 쪽 간 거죠(...) 내가 잘못을 하나도 안했는데 갑자기 직위해제 (...) 법무사 찾아가갔고 제가 변호사 찾아 갔는데 변호사가 가니까 좁은 동네에서 얘기 합의해서 좀 일 하시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법인 대표도 찾아갔었어요. (...) 임명장은 대표한테 있거든요. (...) 이게 사람이 남성이고 인식이 없으면 아무리 하소연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분노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여기 상담소 찾아가간 거죠. 누구 소개로.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인권위에 재소를 했었어요(사례8).

여성의 성폭력 경험은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 하는지에 따라서 대응행위도 달라지게 된다. 사례9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한밤중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성추행을 경험하고 난 이후 몇 년이 지나 집 근처 골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그녀는 처음 피해를 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순찰을 돌아 달라고 경찰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취한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니까 그 전에 고등학교 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한테만 말씀드리고 끝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안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파출소였는지는 경찰서였는지는 지역 관할에 전화를 해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 좀 밤에 순찰을 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례9)

## (2) 소극적 대응 - 그냥 참기

사례3은 20대에 겪은 직장상사에 의한 성추행 경험에 대하여 자신이 당시 왜 저항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한다. 그녀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이유는 '알려질까봐' 두려워서였다. 오래전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그녀는 당시 자신과 가해자와의 관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했고 그러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자책하는 심정으로 진술한다. 오래된 사건을 기억하고 말하는 것은 현재의 사고로 자신의 기억을 재구성한 것이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여성에게 있어 성적인 경험 그 자체로 수치스럽고 두려운 것이어서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싫다고 하고 이제 내가 불쾌하고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자체가 직장 상사라는 거 땀에 너무 어려웠었고 알려질까봐 두려웠었고 제가 적극적인 그런 대응을 못한 거 같아요(...)무섭다는 이유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한 셈이 된 거 같아요.(그 곳에서) 나오면 이 상황이 알려 질 거 같아요. 그래서



무서웠어. 두 번째는 이십대 때는 그것이 더 두려웠을 거 같아요. (사례3)

### (3) 조사과정에서의 경험

본 조사의 면접자들 중 일부는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피해를 경험했다고 진술한다. 성폭력 사건에 관한 조사는 피해자에게는 당시의 힘든 일을 다시 기억해내고 진술해야 하는 기본적인 어려움 이외에도 조사관의 태도나 조사방식 등에서 불편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만 없으면 되죠. 조용한데 있어요. 하더라도. 방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자꾸 밖에서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옆에서 컴퓨터하고 같이 하고 하니깐 이거는 더 황당한거라. 이거는. 그래 이거 귀는 들릴 거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거(사례5).

사례5는 따로 조사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조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다른 직원이 곁에서 일을 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기가 무척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음을 고백한다. 성폭력 전담경찰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조사관의 인식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면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사가 한다는 소리가 왜 그렇게만 하셔야 했습니까? 난 황당했어요. 그 말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왜 했네요. 나보고 왜 했네요. 일단 그 자체가 진짜 싫었어요. 조사 받는 것도 힘들어 뒤통수에 왜 했네요. 나보고. 왜 반항 안하고 왜 밀치지 않고 왜 거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말이 나는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사례6).

일상적인 조사방법도 피해자는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에게 왜 반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은 여성으로 하여금 피해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게 하고 이는 성폭력의 이차피해로 이어진다.

또한 심층면접에 참여한 면접자 중 상당수가 가해자가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것은 많으나 알 수 없는 것이 많아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피해자에 대한 친화적 서비스 제공이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인식의 변화

#### (1) 부정적 경험으로서 인식

본 조사에 참여한 면접자 중 많은 사례에서 자신의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과정에서 성(sexuality)에 관한 인식과 성폭력에 대한 사고가 변화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성폭력 경험이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했으나 오랜 시간을 거친 후에 과거의 경험을 다시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다시 생각하고 재해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제 순결은 어쨌든 남편한테 주긴 했지만 제 도덕적인 관념에선 제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부위들을 이미 노출 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수치고 부끄럽고 이 남자한테 숨기고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 면접자: 나를 살게끔 하는 그 순결이 뭘까요? 살아 숨 쉬기 괴롭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내가 살아 숨 쉬게 하는 그 순결이 뭘까요? 피면접자 : 글썩요. 나는 그게 남편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눈물) 남편한테 순결을 줬다는 거만으로 저는 이 남편에 대한 이제 나머지 행동들이 다 스스로 용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나 싫어요(사례3).

면접자들 중에는 결혼관계에서만 성관계를 허용하는 이른바 전통적인 성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3은 결혼 전 직장상사의 성추행 피해를 경험했고 그 사실만으로도 남편에게 죄를 지은 것 같은 심정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녀는 성기삽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순결을 지켜냈고 그것으로 남편에게 지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서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의 경험이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과 상처로 남아 있다. 그녀의 눈물은 오랜 전 자신이 경험한 성추행 사건이 그 당시 비록 순결은 지켰지만 오랫동안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순결의 의미를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재구성하게 된다. 이는 그녀가 성기중심 사고와 순결, 정절과 같은 전통적인 성 통념의 변화가 얼마나 힘들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성폭력 개념 인식의 변화

면접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성폭력의 개념과 대응방식, 성(sexuality) 통념과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 하고 더 나아가 성폭력에 대한 예방방안 까지 제시하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진술하였다.

사례14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첫아이를 임신했고 혼전 성관계에 대하여 당시에는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비로소 결혼 전에 이루어진 남편과의 성관계가 폭력이었음을 깨달았다고 스스로 다시 정의하고 있다. 그녀가 스스로 정의한 성폭력은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임

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그니까 좀 지식으로 접하면서 아, 이 경험도 성폭력이구나 (...) 남편 같은 경우는 연애할 당시에 술한잔 마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때는 폭력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부분에서 그냥 연인 사이에서 싫다고 하지만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폭력이란 걸 알고는 전 정말 많이 괴로웠어요(사례3).

사례7은 결혼 전에 남편의 일방적인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번 성관계를 했으니깐 평생 그 남자의 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른바 순결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이용하면서 결혼 전과 결혼생활 중에 경험한 남편과의 일방적인 성관계가 성폭력이고 강간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녀에게 있어 결혼생활 중 남편의 일방적인 성관계는 그저 '조금 희생하고 마는 것'이었으나 그 불편했던 경험이 부부강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성폭력에 대한 자신의 인식 변화는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행동의 변화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침터에 원장님이란 상담하시면 하면서도 이런 부분도 성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를 들었고. 그게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 그니까 원치 않는데 그냥 부부니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뭐 텔레비전에 뉴스에는 뭐 이것도 성폭행이다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정말 싫을 때가 있지만 그게 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니까 아, 같이 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조금 희생하고 만다(...) 시댁에 살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있지만 몰랐으니까 그냥 받아들였던 거 같은데 지금은 아니까 성폭행이라는 걸 아니까 거부할 수 있는 거 같아요(사례7).

### (3) 적극적인 대처

사례9는 골목길에서 낯선 남자에게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후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고 주변지역 방범과 순찰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진술한다. 그녀가 경험한 성추행 피해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지만 두 번째 피해 경험시 경찰에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도록 자기검열을 거친 후에야 가능했다. 그것은 성추행 피해가 밤늦게 다녔던 여성에게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고정관념에 동의하지 않고 스스로 당당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 여성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음을 그녀의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지금 생각하면은 전화 하는게 아무런 일도 아닌데 그때는 괜히 괜히 그런게 있었던 거 같아요. 내 뭐 그런 얘기를 들을까봐. 너가 늦게 다녀서 그런 거 아니냐,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여자들이 빨리 빨리

집에 다녀야지(...) 그래서 요즘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일을 만약에 겪었다고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끔 얘기를 해주는 거 같아요(사례9).

## 2. 관련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 가. 조사개요

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심층면접은 사전에 기관의 협조를 얻어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하였다. 기관 종사자에 대한 심층면접의 내용은 주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상담하면서 피해자에 관한 특징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등에 관한 내용과 업무와 관련된 애로사항, 그리고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법제도나 정책관련 개선점들을 질문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기관 종사자는 총 11명 이었고 성폭력 상담소와 여성긴급전화 1366,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상담소와 보호시설, 장애인상담소에서 상담원이나 기관대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었다. 연구참여자 중에는 기관대표가 4명, 상담원이 7명 이었고 경력은 최소 3년 이상이었고 사례1과 사례2, 사례8, 사례10, 사례11은 10년 이상 이었다.

〈표 5-3〉 기관 종사자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사례	기관에서의 역할	경력
사례1	상담원	14년
사례2	대표	10년이상
사례3	상담원	봉사활동 3년, 상담원 1년
사례4	상담원	5년
사례5	상담원	3년
사례6	상담원	8년
사례7	상담원	4년
사례8	상담원	10년
사례9	대표	9년
사례10	대표	10년
사례11	대표	10년 이상

심층면접은 대략적인 조사내용을 사전에 정하지만 정해진 틀에 한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유롭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반 구조화된 질문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기관 종사자 심층면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4〉 성폭력 관력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내용

영역	세부항목
일반사항	담당업무, 기관의 특성
	자격사항, 일을 하게 된 동기 등
피해자 지원 관련	피해자의 지원내용, 지원과정
	피해자의 증세, 후유증
	피해자의 변화
	가해자의 개입이나 협박 유무
정책 수요	상담소 관련 개선방안
	관련기관(경찰서, 법원, 병원 등) 종사자들의 태도와 개선방안
	제주도의 특성

### 나. 기관 종사자를 통해 본 성폭력 피해자 실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관련 공공 서비스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관련 기관에서 오랫동안 상담을 비롯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해 온 종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진단과 지원정책에서의 개선점이 지적되었다.

#### 1) 피해자의 후유증

면접자들은 성폭력 경험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대응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토로한다. 그런 원인과 배경에는 성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에게는 성폭력 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노출의 두려움과 성폭력 피해자라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는 스스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징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증세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상처가 아주 심각한 형태로 드러난다. 이는 성폭력 피해가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인간의 가치에 관한 범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세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을 찾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섭식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많이 먹기도 한다. 또한 충격이 심하면 무기력하게 되어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수면장애도 대부분 나타난다. 무기력증과 정신적 충격이 심한 경우에는 자해행위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굉장히 불안하고 뭐 우울하고 말도 못하죠. 계속 울고 계속 울고 막 밥도 못 먹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뉴스에서 성폭력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그럴 경우는 정말 아주 뭐 심지어는 뭐 호흡이 호흡이 안되가지고 거의 뭐 뇌사상태 될 정도로 돼서 막 응급실에 실려 가는 내담자도 있고 (사례2)

보통 딱 들어왔을 때 폭식이 가장 많구요. 섭식 장애도 생겨요. 폭식을 하다가도 나중에 섭식 장애가 생기구요. 그다음에 거의 수면장애는 대부분이구요. 일반적인 거예요(사례3).

그 친구가 자해도 많이 했거든요. 자해도 여러 번 했고 그 왜 자해를 했냐면 그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다 (...) 어릴 때부터 성폭 당하는 게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사랑해주지 않는다. 이런 결핍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구랑 친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나한테 관심 없다 해서 (...) 그런 얘기하면 울기만 하고 그런 분노에 우는 거죠(사례9).

### (2) 정신적 후유증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성폭력에 대하여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여 스스로를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비난하거나 자기 몸을 더럽다고 생각하여 결벽증에 가까운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정리정돈에 열중하고 과도하게 세제를 사용하여 주변을 청소하거나 타인의 손길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은 이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비하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즉 자신은 사랑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고 폭력을 당한 원인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한다.

여자로서는 가치 없는 여자. 특히 더러워진 몸. 그다음에 더 이상 어느 남자에게도 사랑 받을 수 없는 그다음에 아마 나를 내가 이렇게 피해당한 걸 알면은 다 남자를 남자들이 나를 버릴 거다. 좋아하지 않을 거다. 뭐 그렇게 하면서 자신에 대한 여성성에 대한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례 2).

그 친구는 결벽증이 있어요. 결벽증이 있고 부모 가족과 단절. 아예 단절. 그리고 그 친구도 자해 경험이 있고. (...) 성폭 경험이 계속 떠나질 않아서 어떤 거에 집착하고 결벽증이 있고 막 그렇거든

요(...) 밑에도 락스로도 씻고(...)어머신 분은 서랍 여기 서랍장 문 열었더니 저기 뭐냐 수건이 완전 각지게 축축축축 진짜 완전 깜짝 놀랐어요. 갱 그 친구는 그 같이 방을 못 썼어요. 다른 친구하고 (...) 그런 모든 게 락스. 그래서 장갑 끼고 다녀. 뒤통 만지지를 못해서 (사례 9).

센터에서 이제 상담 받고 학교에서 받고 다른 그 시설에서 상담을 받다가 도무지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고 하다가 도무지 그 해결이 안되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 정신과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정신증 증상이 나타나고 뭐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고 뭐 그래서 결국은 여기저기 그 도움을 받았지만은 도무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제 그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이제 오는 경우가 가장 많구요 (사례 2).

### (3) 일상생활의 변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면 사람들을 경계하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특히 이성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거리를 두고 이성을 멀리하며 자신에게 성적인 피해를 가하지나 않을까 의심하게 된다. 면접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미성년 여성의 피해자에게는 또래 친구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성인여성인 경우에도 언제 또 다시 피해를 입는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상대방을 경계하고 친밀한 관계를 기피하는 등 관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성경험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더욱 힘들어 하는 현상이 지적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피해자는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하고 가해자는 오히려 처벌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설이용을 하는 피해여성들은 보호시설을 감옥처럼 느끼고 가해자는 오히려 마음 놓고 사회 안에서 살아간다고 표현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순결을 잃은 여성이라는 낙인이 존재함으로 인해 어린 아동, 청소년 피해자는 또래 집단에서 왕따가 되고 성인 피해자는 직장을 잃거나 공동체 집단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명이 왔었어요. 같이. 지지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중간에도 저하고 또 상담을 했을 때도 그 중간까지만 해도 있었던 거 같은데 이제 올해 합의 할 때 이제 한 6개월 지난 후에는 그 친구들 거의 없는 거예요. (...)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 그러면 애는 가고 너가 왜 그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나한테 할 형편이냐고.(...) 자기는 더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너네 그런 것도 일이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많이 있었나봐요. 자기만 위하라는 그 뭐 피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 같애 (사례 7).

#### (4) 드러내기 어려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이외에도 더욱 자신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회적 소외하고 할 수 있다. 이는 드러내기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의 연결된다. 보호시설에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외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지역적 특성상 피해가 알려지는 두려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렵고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타 지역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를 다니는 10대 여성들의 경우는 전학 등으로 인해 또래 집단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지역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알려지는 걸 되게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사건화 하는 건 되게 용감하신 거 같아요. 아직도.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냥 상담만 받고 가시는 분들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상담 받으실 때도 안 알려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 왜냐면 한 다리 건너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서귀포에 계신 분이 서귀포에 안내해드릴까요? 하면 아 니, 서귀포 지역이 좁아서 일로 와서 받겠다고 라고 해서 일부러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 멀리 (사례 4).

#### (5) 경제적 어려움

피해자들 대부분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고소를 해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재판에 이기더라도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의료지원이나 법률지원, 심리치료 지원도 필요하지만 성폭력 피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함께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은 피해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여성이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의료 지원이나 이런 거는 꾸준히 갈 수는 있지만 그분이 그걸 원치 않고 그러면 계속 사건에 대해서 매달리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나 뭐 이런 걸 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그걸로 오긴 하셨는데 뭐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쪽으로 이제 또 더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계속 도움을 달라 막 이러시면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사례 4).

직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요즘은 (...) 당장 생계가 불안해지고 특히 자기 혼자서 관찮은데 아이가 있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남편과의 문제에서도 또 그런 것들이 생기고 어쨌든 생계문제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경제적인 도움을 저희가 드릴 수가 없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이. 뭐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연계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되어 되는데(사례 6).



## 2) 성폭력과 가족관계

### (1) 가족관계 안에서의 어려움 - 피해자에 대한 이중 억압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족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족은 피해 당사자를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지원기관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담소를 찾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도 가족에게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어린시절 성폭력 경험을 한 경우 가족을 대표하는 아버지나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가해자와 합의하고 심한 경우는 합의금도 챙기는 경우 이중의 상처가 되고 이러한 상처는 오랜 세월 지속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지원이 100프로 돼요. 그리고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나 그런 거는 만약에 본인이 원할 시에는 만약에 중절수술을 하겠다 하면은 지원이 100프로 돼요. 이 친구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산부인과 예약을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수술이니까 보호자가 와야 되잖아요.(...)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수술은 그런데 이 친구는 결국은 안와가지고 자기가 혼자 가서 수술을 해버렸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모친에게 알리는 게 싫어요 (사례 7).

제가 가장 고민되는 그 중 하나가 어중간한 나이대들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미성년자들도 그런 애들 많아요. 부모한테 알리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미성년자야 당연히 이제 알려야 되니까. 법적 후견인이든 누구한테든 알리는 게 이런 친구들이 사건 접수 안할 거예요. 부모님 알까봐 사건 접수 안할 거예요. 그런 부분. 알려지는 게 싫어서 사건 접수를 안하는 애들 (사례 7).

### (2) 친족 성폭력 문제

친족성폭력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 조사 결과 심층면접 내용에 상당수가 친족성폭력 상담을 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의 면접조사가 상담소와 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이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중 상당수가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분리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친족성폭력의 특징은 첫째,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가 많고 둘째, 피해가 지속적이며 셋째, 외부로 노출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소율이 낮다는 것이다(이어진, 2007). 그러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피해를 드러내기가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며 가족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치유 또한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아버지와 딸 사이의 근친 성 학대는 가장 자주 보고되는 유형이고 여성의 성적인 피해

에 대한 패러다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근친 성학대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극단적 케이스가 아니라 가부장적 힘을 사용하는 데서 생기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종류의 학대(Judith Lewis Herman, 2010)라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친족성폭력의 경우 가장 회복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담 또한 어렵다고 진술한다.

제주도는 엄마 없이 아빠하고 지내면서 그 문제가 생기는 근친상간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이런 친인척, 엄마가 없이 뭐 삼촌하고 아버지하고 살면서 그런 사건이 엄청 많고,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사건도 많고 해결되지 않은 사건도 많고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는 데 특히 아버지가 뭐 어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육지로 타지로 출장이 잦은 일을 하는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거죠. 친인척에게...그런 부분에서는 제주도의 특성이예요. 그런 피해자가 많다는 거는...(사례 1).

가족도 못보고, 형제들도 못 보잖아요. 미안해서 못 보잖아요. 애들이, 오빠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아빠가 벌 받고 감옥 가버리고 생계는 끊기고 오빠들은 학생들이고 운동하는 오빠도 있다고 하는데 돈은 못 대주고. 그래서 그 피해가 빨리 애들 그런 거 시키잖아요. 너가 신고하면은 아빠는 감옥가고 오빠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 집 풍지박살 나는 거라고 그렇게 애들한테 협박을 하잖아요 (사례 3).

## 다.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 1) 피해자 지원에 관한 문제점

#### (1) 전문적인 치료에 대한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현재의 지원은 병원치료나 클리닉에만 한정된 지원되고 있다. 물론 상담소 운영에 지원금이 주어지지만 피해자가 충분히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상처도 있지만 정신적인 후유증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전문화된 상담이 많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치료차원에서 폭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부분은 지원금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정신적인 상처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심리치료와 전문화된 상담이 필요함에도 놀이치료, 미술치료, 집단상담 등 전문화된 상담치료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의료비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필요하면서도 저희가 못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니까 그게 아이러니일 수도 있는데, 피해자들한테 저희가 그 맞는, 맞는 그 치료 프로그램들이 보통 미술 치료나 아동 같은 경우는 미술치료나 아니면 놀이치료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동심리치료 이런 부분이 실제로 많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그 의료비 지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요 클리닉, 그니까 병원 클리닉 이런 쪽에만 지출 되게끔 되었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뭐 산부인과적인 부분, 정신과적인 부분은 병원 정신과니까 그런 부분은 갈 수가 있어요 (사례 1).

전문화 된 그런 선생님과에 어떤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일 걸리는 게 비용이거든요. 왜냐면 상담 이란 전문 전문가 상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필요로 하고 한두번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10회도 적은데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정말 전 전무하거든요 (사례 8).

## (2) 기관의 인식 부족

컴퓨터 이용자들이에 대한 관계기관을 비롯하여 공공 기관 종사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인식전환과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고 여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에게는 거주지나 신변에 관한 노출을 피하고 보호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공공 기관 종사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가령 성폭력이나 성매매 피해자 컴퓨터에 입소한 피해자의 경우 의료지원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 보호시설 이용자에 대한 주민번호나 주소 알려달라고 주문한다든지 보호자가 있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보호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곤란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친족 같은 경우는 비밀 전학을 시켜야 되요. 교육청으로 어디로 막 뛰어다녀야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없으니까 뭐 신분증이 없어서 이제 되게 큰 어려움이예요. 그게. 신분증이 없어서 통장도 발급이 어렵고, 등본도 못 떼고, 뭐 이제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은 이제 민원서류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런게 너무 힘들어요 (사례 3).

저희 병원 다니면요. 이 친구들 관리 번호가 있거든요. 일반 수급자는 주민번호 얘기하면 되요. 이 친구들은 주민번호를 얘기하면 일시 수급자라서 안되요. 보호시설이라서. 그래서 수급 전산번호가 떠요. 예를 들어 93년생은 905002로 시작해가지고 주민번호 숫자랑 똑같은데 그거를 제시하면 이거 주민번호 아니잖아요. 다른 거 주세요. 인지가 잘 안되있죠. 그러면 저희가 설명을 해요. 이 친구들은 사회보호시설 친구들인데 하면서 그래서 이거 저장 누르시면 오류가 나실 거예요. 그래도 무시하시고 저장하시면 입력되요 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그냥 주민번호로 좀 되면 안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니까 뭔가 했을 때 딱 도드라지잖아요 (사례 3).

## (3)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법 제도

2013년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에는 피해자가 고소하고 경찰조사 및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들에 대하여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상담소 및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제도의 실행이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진술조력인 자격을 갖추려면 육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자격을 갖추기가 어렵다. 성폭력 사건에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선임 의무화 제도가 있으나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역할이 크지 않고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국선변호인은 1심 판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 상대가 항소를 할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

네. 진술조력인은 필요해요. 근데 제주도인으로서 받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알아 봤는데, 교육 시간이 이제 뭐 한두시간짜리당 몇 시간이 아니고 이제 주말마다 계속 올라가서 주말 이틀씩 해가지고 한 석달 정도? 그럼 비행기표가 아예 붙여놔서(..)차라리 이렇게 한꺼번에 보름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차라리 하는데 움직이기가 좋은데, 멀다보니까 이 비행기 항공권료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런 거는 좀 (...) 이분들도 교육 받아도 안하시는 분들 나가지 못하는 분.. 비용이 부르는 곳에서 만약에 경찰서에서 필요해서 불러야 되는데 이분들이 움직이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제 안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도 좀 들었었고.(사례 7).

지금 국선 변호인을 다 선임할 수 있게 했는데 법이 힘들어요. 저희가 찾아가서 막 하면 뭐 의견서를 써주실 지 몰라도 저희가 이제까지 사건 지원 중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분 못 봤어요. 그 다음 검찰에서도 연락을 안해주니까 변호사는 몰라요. (...) 연락 안해주니까 몰랐다. 우리는 조사 잡힌지도 몰랐다. 뭐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부분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마 조사 잡혔을 때 같이 들어가시는 변호사는 없을 걸요? (...) 국선 변호인을 아직 법지도 못했어요. 못했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왜냐면 자기가 배당된 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우리가 찾아가면 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뭐 이렇게 하시고 (...) 그분도 원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알려고 하면 그렇게 통로가 많지 않고 국선 변호인이 그분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너무 딱 좁기 때문에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이걸 막 어떻게 해보겠다 라고 하지 않으시는 분은 진짜 활동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사례 10).

## 2) 정책욕구

### (1) 예방교육 필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질문에서 여러 종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관련기관을 이용하도록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최근 교육과 홍보의 효과로 학생들에게는 관련기관의 인지도가 높은 반면 일반 성인들에 대한 인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평등하고 올바른 성인식을 위해 기성세대와 성인들을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피해 당했으면 저는 제일 안타까울 때가 바로바로 왔으면은...(...) 홍보 열심히 해서 어른들도 좀 제때 제때 어른들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례 6).

우리 때는 이제 단순히 숨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른들을 위한 성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아이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모를 위한 성인을 위한 성교육.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사례 12).

## (2) 인식개선

우리사회의 남성중심 성인식과 성 행위를 실천하려는 왜곡된 성의식을 성 인지적 관점의 교육을 통해서 평등한 시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성을 폄하하고 성적 대상화 하려는 인식, 섹슈얼리티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와 성인지적 관점의 인식개선, 그리고 꾸준한 상담과 교육을 통한 인식전환으로 우리사회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또 그 시각을 그렇게 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 어떤 여성을 폄하하는 시각들, 그리고 남성 중심으로 이제 성을 해석하는 것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전혀 다른 어떤 성에 대한 윤리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죠(사례3).

다양한 어떤 여러 매체와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 되구요. 인식 개선이 되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예방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벌보다는 그 예방을 더 우선시 한다는 거죠 (사례 2).

## (3) 공동체 복원

지역 공동체의 노력으로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공동체 안에서의 연대와 협력은 지역공동체가 함께 서로 감시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고 피해사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노력으로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으리라는 의견이다.

피해사실이 생기기 전부터 똬똬 뭉쳐서 서로가 감시자가 되고 서로가 이제 왜냐면 그 함께 이제 그 지역을 돌보고 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로가 지역이 연대가 되어 되고 또 이런 피해사실이 발생했을 때에도 재빨리 지역에 그 지역사회에 있는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서 그 피해자를 빨리 그 피해현장에서 그 이제 말하자면 분리시키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지역 사회에 감시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면 그게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또 그런 어떤 구조적으로 국가 정책이 어떤 그런 구조를 자꾸 이렇게 조직화하고 지역사회 구 성원들을 그렇게 이제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방을 위한 하나에 그 도우미로 실천이로 만들면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성 범죄가 어느 정도는 조금 많이 그 줄어들지 않을까 (사례 2).

#### (4) 가해자 교정확대

가해자 처벌강화는 성폭력 감소에 도움이 안되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으면 죄의식이 감소 되어 오히려 담당해지는 부분이 있다. 가해자의 처벌강화보다는 교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 의견이 많은 일반인들의 의식과는 차이가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내면적인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종사자들이 가해자의 교정확대 의견을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처벌을 하면은요, 가해자는 절대로 반성하지 않아요. 반성하는 거는 정말 5프로 정도뿐이 안되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진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자 죄 값을 치렀다 이거죠. 처벌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그것이 도움이 안되고 그 그분들을 정말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례 2).

그래서 성범죄 저지른 사람을 진짜 괴물처럼 이렇게 여기니까 저희가 가해자 교육 가시는 하시는 분들 도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니까 소원에 나오는 그 괴물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그냥 잠깐 (...) 그렇게 분리를 시키세요. 나는 그런 나쁜 놈이 아닌데 나는 그냥 실수로 (사례 4).



---

요약 및 정책제언

- 1. 요약
- 2. 정책제언



## 1. 요약

본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폭력 행위의 유형을 스토킹, 성희롱, 성추행, 강간 네 영역으로 나누고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각 개인의 피해경험과 성에 관한 인식 및 정책수요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성폭력 피해의 사후조치 실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와 성폭력관련 법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성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성의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성폭력 인식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성인 남녀의 9.6%이며, 성인 여성들의 경우 이보다 높은 16.9%이다. 성폭력 피해경험이 없는 여성보다는 있는 여성이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지역 주민보다 제주시 지역 주민들이 성폭력 피해의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 통념 조사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 행위에 대한 오해’, ‘피해자의 저항정도’, ‘피해 여성의 원인제공’의 세 가지 요인에 따라 여섯 가지 항목의 예문을 제시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의 행위에 대한 오해로 ‘여자가 먼저 목을 껴안고 애무하다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항목에서 ‘그렇다’(54.0%)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해여성의 원인제공 의견인 ‘늦은 밤에 혼자 다니는 여자들은 대부분 끼 있는 여자이다’라는 항목(14.9%)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모든 항목에서 찬성여견이 높게 나타나 성 통념에 있어 남성들이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은 성희롱과 성추행, 폭력을 동반한 강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성폭력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이 가장 낮은 항목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로 ‘성행위 도중 중단을 요구 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낮게(75.5%)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정신적 행위’(83.8%), 성추행 항목인 ‘원치 않는 사람의 신체부위를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위, 혹은 몸을 밀착하는 행위’(90.8%)로 나타났다.

### 나. 성폭력 피해실태

조사결과 평생성폭력 피해경험 실태는 조사 대상자 3,000명 가운데 57명이 70건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5명으로 전체 성폭력 경험대상자 중 96.5%를 차지했고, 극소수지만 남성 피해경험 응답자도 (3.5%) 나타나 성폭력 피해자는 주로 여성임을 알 수 있었다. 성폭력 피해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32건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1.1%, 성추행 26건으로 0.9%를, 그 다음이 스토킹이 11건으로 0.3%, 그리고 강간이 1건으로 0.03%로 나타났다.

범죄공식통계상 2013년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6,419건이며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는 58.9건이다. 반면 제주지역의 성폭력 발생건수는 511건으로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sup>6)</sup>할 때 약 86.1 건이다. 반면 본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성폭력 발생건수는 23건으로 제주지역의 전체 인구에 대한 추정피해건수는 4,552건 이며 인구 10만 명당 추정피해율은 766.6명이다. 따라서 본 피해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공식통계보다 약 10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법적 처벌은 되고 있으나 본 조사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성기노출, 음란전화를 포함한다면 공식통계보다 발생률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다.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본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가해 경험에 대한 내용은 조사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경험을 조사하는 항목에서 가해자의 연령과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가해자 연령은 성희롱은 주로 20대, 성추행은 10대가 많았고 스토킹은 전 연령에 골고루 퍼져 있었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스토킹은 주로 아는 사람인데 구체적으로는 학교 선후배나 애인 그리고 이웃이고 성희롱 가해자는 주로 직장상사나 동료가 가장 많았으며 성추행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여성이 96.5%, 남성이 3.5%로 나타났고 남성피해자의 피해유형은 성희롱이었다. 여성 피해자의 연령은 40대가 많았고 혼인상태는 기혼여성이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교육수준은 고졸과 대졸이 대부분이었으며 소득은 100만원~400만원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라. 성폭력 피해후유증

성폭력 피해의 영향으로 신체적 상해경험에 대해서는 성폭력 경험 사례 전체 57명 가운데 1.8%로 나타났고 33.3%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이 62.3%를 차지했고 그 중 직장을 그만 두는 등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는 응

6)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인구 대비 발생건수는 2013년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결과이다.

답도 24.5%나 되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성폭력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정신적 고통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성추행 피해 경험자가 41.7%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피해 경험자가 37.5%, 그 다음이 스토킹 순으로 나타나 강간이 아닌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 피해 경험에도 상당수가 정신적 고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 신고율은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약 8.8%에 불과하며 나머지 90% 이상이 그냥 참거나 가족,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성폭력 피해가 드러나지 않고 숨은 범죄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지원시설 이용률은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약 7.0%에 불과하였다.

#### 마. 피해자의 대응

성폭력 피해당시 대응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도망갔다(40.4%)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있었다(36.8%)는 응답도 상당히 많았다. 소리를 지르거나(10.5%), 가해자를 설득하고(10.5%), 심지어 가해자를 협박(5.3%) 하는 등 적극적인 저항을 했다는 응답은 소수를 차지했다. 성폭력 피해 당시 적극적인 수단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반복피해 경험자의 대응은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시 도움요청 대상은 경찰이나 공공 서비스 기관의 비율은 낮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절반이상(54.5%)을 차지해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공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바. 성폭력 법과 공공 서비스 인지도

성폭력 법의 존재에 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5.0% 정도가 성폭력 관련법에 관한 내용을 잘 안다고 응답하였고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69.5%,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15.5%로 나타났다.

성폭력 법 내용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친족성폭력 처벌 조항(79.4%)과 성희롱 처벌(82.6%), 성추행 처벌 조항(78.3%)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개정된 조항인 친고죄 폐지(40.8%)와 피해자 전담경찰 조사제도(47.7%),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및 상담원 도움 제도(42.7%)에 관한 인지도는 절반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법 인지경로는 TV/라디오 공익광고를 통한 경우가 8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서가 33.2%, 신문/잡지가 24.9%,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24.6%를 차지하여 주로 대중매체나 인터넷,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 서비스 기관 중 상담소(50.8%), 피해자 쉼터(40.8%), 여성긴급전화1366(39.3%)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고 나머지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30% 이하로 낮게 나타났고 원스톱 지원센터가 가장 낮은 인지도(17.3%)를 보였다.

#### 사. 정책수요

피해자를 위한 관련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조사에서는 정신적,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4.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법적지원(31.3%), 의료지원(11.2%), 정보제공(3.6%) 순으로 응답하였다. 우선 지원되어야 할 성폭력 관련 서비스 1순위는 전체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29.2%로 가장 높았고 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28.6%), 그 다음이 취업지원 등 자활지원(27.2%) 순으로 나타났고 자립을 위한 금융서비스(8.4%)와 직업훈련 지원(6.8%)은 비교적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가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성폭력예방과 교육강화(25.8%), 우범지역 해소 및 치안유지(19.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경험집단의 정책수요를 분석한 결과 조금 차이가 있었다. 성폭력이 있는 집단이 원하는 정책은 정신적, 심리적 치료가 6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우선 지원되어야 할 성폭력 서비스 조사에서는 자활지원(45.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폭력 예방 정책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가 31.6%로 가장 많았다.

#### 아. 피해자와 기관 종사자의 심층면접 결과

본 조사의 심층면접은 피해자 10명과 기관 종사자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피해자의 심층면접 결과 피해당시의 느낌에 대하여 면접자들은 대체로 무서움, 공포, 분노, 성적 모욕감, 수치심, 무력감 등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는 ‘불편함’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면접자들의 성폭력 이후의 변화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 등이었다. 신체적 증세로는 육체적인 상처, 불면증, 섭식장애, 정신적으로 무력감, 자책, 분노,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가 어려워지고 심하게는 대인기피증을 경험한 사례도 있었다.

면접자들에게서 나타난 성폭력 피해의 대응방법은 처음에는 저항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있었으나 시간이 지난 후에 법적으로 고소하거나 상담소를 찾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는 등 행동을 취했다. 상담소를 찾거나 신고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는지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상담소, 혹은 경찰의 도

움을 받았다.

본 조사의 면접자들 중 일부는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차피해를 경험했다고 진술한다. 성폭력 사건에 관한 조사는 피해자에게는 당시의 힘든 일을 다시 기억하고 진술해야 하는 기본적인 어려움 이외에도 조사관의 태도나 조사방식 등에서 불편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본 조사에 참여한 면접자 중 많은 사례에서 자신의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과정에서 성(sexuality)에 관한 인식과 성폭력에 대한 사고가 변화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면접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성폭력의 개념과 대응방식, 성(sexuality) 통념과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성폭력에 대한 예방방안 까지 제시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기관 종사자에 대한 심층면접의 내용은 주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상담하면서 피해자에 관한 특징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등에 관한 내용과 업무와 관련된 애로사항, 그리고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법제도나 정책관련 개선점들을 질문하였다.

기관 종사자들이 지켜본 성폭력 피해자들의 후유증 역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그리고 일상생활의 변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진술한다. 그 외에 지역의 특성상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기가 어려워 가족관계나 또래 집단에서 피해자가 더욱 힘든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관 종사자들이 지적하는 피해자 지원의 문제점으로는 심리치료에 대한 폭넓은 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병원 등 관련 기관들의 인식부족,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인과 국선변호인 지원제도의 한계 등을 지적하였다.

## 2. 정책제언

### 가. 성 통념과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개선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조사결과 성폭력 개념과 성 통념에 있어 남성들의 보수적인 성 통념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성폭력 인지도도 낮아 인식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특히 성 통념과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의 행위에 대한 오해로 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여성이 저항해야만 성폭력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고 성폭력 개념조사에서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폭력으로 인지하는 비율(75.5%)이 높지 않았다. 따라서 성 통념과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전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캠페인성 행사나 의례적이고 일회성 강의보다는 여러 경로의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이 다차원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나.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 성폭력 감소 정책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30.2%)와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25.8%)가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와 지난 1년간 성폭력 발생건수는 성폭력 범죄 공식통계보다 약 10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성폭력 피해를 숨기는 경우가 많음이 드러났다. 특히 성폭력 피해는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반복 피해의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친밀한 관계에서의 관계설정과 성역할 구분 등 성 인식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직장이나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제 내용을 점검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피해자와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피해가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방식에 있어서도 아는 내용을 재미없게 전달하는 일회성 교육이 아닌 다각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다.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의 홍보강화

성폭력 관련법 인지도 조사 결과 친족성폭력 처벌 조항(79.4%)과 성희롱 처벌(82.6%), 성추행 처벌 조항(78.3%)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개정된 조항인 친고죄 폐지(40.8%)와 피해자 전담경찰 조사제도(47.7%),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및 상담원 도움 제도(42.7%)에 관한 인지도는 절반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새로 개정된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홍보방안으로 학교나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뿐 아니라 TV나 라디오 등 공익광고를 통하여 성폭력 관련법을 홍보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V와 같은 매체는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나 출퇴근 시간 라디오에서 공익광고 등을 활용하여 성폭력 관련법을 홍보하고 인식개선 및 지원 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라. 성폭력 관련 공공 서비스 정책 홍보 강화

본 조사결과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공공 서비스 기관은 여성긴급전화(39.3%), 성폭력상담소(50.3%), 성폭력피해자 쉼터(40.3%)로 나타났다. 이에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 특히 여성긴급 전화에 대한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 여성들이 폭력에 대한 위기대응 기관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의 홍보는 지역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정부에서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24시간 원스톱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나 본 조사 결과 제주지역에서 원스톱지원센터의 인지도가 낮아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 의료, 경찰, 검찰 등 관련기관의 공조체계 아래 성폭력 피해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마. 성폭력 대응 시스템 구축 및 강화 방안 모색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범죄는 드러내기 어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참거나 가족,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이는 사이에서 반복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점을 감안해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가해자 처벌 및 교정, 그리고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 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담소와 보호시설 운영을 내실화 하고 피해자 지원기관인 의료, 수사, 법률 분야의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의 유형과 가해자와의 관계, 연령, 행위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의 마련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도 중요하다. 성폭력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해자 유형과 행위특성에 따라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정과 치료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 바. 피해자 심리치료와 경제적 지원 확대

설문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은 정신적, 심리적 지원의 확대와 생활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피해경험 집단의 정책수요 조사에서는 정신적, 심리적 지원과 취업지원 등 자활지원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관련기관 종사자의 심층면접 결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지원 부분에 병원치료에만 한정되는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치유 서비스를 강화하여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사.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인 제도 등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지원제도의 실행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나 국선변호인 제도 등이 실행되고 있지 않아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이 지역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진술조력인의 양성에 관한 현실적인 방안의 마련과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아.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확대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재범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가해자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현혜순, 2010). 성 범죄의 가해자 교육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중요하며 재범률이 낮아지면 미래의 성폭력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인권존중의식과 평등한 성 가치관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가해자의 연령, 가해행위 등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가해자의 교정 및 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원홍. 2009. "주요국의 여성정책 추진체계". 「젠더리뷰」 12권. p. 71-76.
- 김정규. 1998.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한국심리학회지』. 27권 1호. p. 331-345.
- 민경자. 1999. 『한국여성인권운동사』. 서울: 한울.
- 박은혜. 2013. "성폭력 개정 이후의 변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심포지엄 자료집(2013. 6).
- 신상숙. 2007. "여성폭력추방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제도화 과정의 차이: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3권 . 3호. p. 5-42.
- 신상숙. 2008.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 : 성폭력 개념사를 통해본 여성인권의 성 정치학". 『페미니즘연구』 8권 2호. p. 1-45.
- 심영희. 1989.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통제: 성폭력의 연속선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여성학』 5집. p. 122-163.
- 심영희. 2004. "성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미국과 호주의 성폭력 정책을 중심으로". 『젠더와 사회』 2&3호. p73-106.
- 여성가족부. 2013.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2017)』.
- 여성가족부. 2007. 『성폭력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0. 『성폭력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3. 『성폭력 실태조사』.
- 이성은. 2011. 『여성폭력예방지원체계 해외 정책동향 리포트: 미국, 영국,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여성가족재단.
- 이어진. 2007. 『친족성폭력피해자의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인. 2006. "성폭력 이론들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종속성 및 성 인지적 시각의 모색을 위하여". 『비교문화연구』. 12집 1호. p. 141-193.
- 이형재. 2012. 캐나다 성폭력범 처벌과 감독에 관한 연구 . 「범죄예방 정책연구」. 24호 (2012년) p.114-200
- 정국. 2012. 『섹슈얼 트라우마』.서울: 블루닷
- 장미혜. 2011. 『호주의 여성폭력예방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영태. 2010. 『제주지역 여성폭력실태와 예방프로그램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 채규만. 2004. 『성피해 심리치료』. 학지사.
- 한국여성상담센터. 2007.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자 개입의 방향과 전망』.
- 한국여성연구소. 1999. 『새여성학강의』. 서울: 동녘
- 현혜순 외. 2010.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여성가족부.
- 로즈마리 통. 1995. 『페미니즘 사상』. 이소영 (역). 서울: 한신문화사. (Rosemarie Tong, Feminist

- thought: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89.
- 주디스, 루이스 허먼 2010. 『근친성폭력, 감춰진 진실』. 박은미·김은영 (역). 서울: 삼인 (Judith Lewis Herman. *Father-Daughter Incest*.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8).
- Brown, S. 2005. *Treating Sex Offender*. Willan Publishing.
- Baron, Larry and Murry A. Straus. 1989. *Four Theories of Rape On American Society: A State-Level Analysi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Finkelhor. 1984. *Child sexual abuse: New theory and research* Newyork: Free Press.
- Groth & Burgess. 1977. Rape; A Sexual devi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7. p. 400-406.
- Health Canada, 2003. *Canadian Guideline for Sexual Health Education*. Health Canada.
- Mackinnom, Catharrine A. 1983. "Feminism, Marxism, Method, and the State: Toward Feminist Jurisprudenxe".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8 (4), p. 635-658.
- Marshall, Anderson & Fernandez. 2000.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John Wiley & Sons, LTD.
- Susan Brownmiller. 1975 *Against Our Will*. Simon & Schuster.
- Wolf, S. C. 1984. A Model of Sexual Aggression/Addition *Journal of Social Work and Human Sexuality*. 7. p. 131-148.




# 부 록



설문조사지



	2014 제주 여성·가족 실태조사	ID				
---	--------------------	----	--	--	--	--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제주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여성·가족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귀하가 주시는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가족정책을 만드는 데 매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제주 여성·가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컴퓨터로 집계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의견...’이라는 식으로 통계처리됩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 8.

주관기관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현혜순

대행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추아름 실사감독원(02-3218-9662)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아래 부분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시	읍·면·동	세부주소	가구번호
[ ][ ][ ]	[ ][ ][ ][ ]	( )	[ ][ ][ ]

SQ1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성 <span style="margin-left: 200px;"><input type="checkbox"/>2) 여성</span>
SQ2	연령	만 _____ 세 (☞ 만19세 미만 면접중단)
SQ3	가구주 여부	<input type="checkbox"/> 1) 가구주임 <span style="margin-left: 100px;"><input type="checkbox"/>2) 가구주 아님</span>

※ 응답자 연락처는 응답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가구주란 호주나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분을 말합니다

☞ 설문종료 후 기입할 것

면접원	면접일시	월 일 /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응답자	연락처	( ) - ( ) - ( )	( )

## A. 가구구성 (가구주 기준 응답)

문1. 먼저, 귀하의 가구에 대해 여쭙어보겠습니다. 현재 귀택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이며, 성별, 연령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1) 가구주와의 관계		2) 성별			3) 연령	4) 혼인상태						응답칸	
	관계	보기 번호	① 남자	② 여자	응답칸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⑤ 별거	⑥ 사실혼 (동거)		
1	가구주	01	①	②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2			①	②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3			①	②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4			①	②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5			①	②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6			①	②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7			①	②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8			①	②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9			①	②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10			①	②		만	세	①	②	③	④	⑤	⑥	

보기 1) 가구주와의 관계		
01) 가구주	08) 배우자의 부모	15) 하숙생
02) 배우자	09) 형제/자매	16) 가사도우미
03) 자녀	10) 배우자의 형제/자매	17) 이성동반자
04) 자녀의 배우자	11) 형제/자매의 배우자	18) 돌봐주는 사람
05) 손자녀	12) 조부모	77) 기타(누구: _____)
06) 손자녀의 배우자	13) 기타 친인척	
07) 부모	14) 친구	

문2. 귀하가 살고 있는 가구는 어떤 유형의 가구입니까?

응답칸

1. 가구유형	1) 농·어가	2) 비농가(비어가)				
2. 주택유형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빌라	4) 다세대주택	5) 원룸·오피스텔	6) 기타
3. 주택점유형태	1) 자가소유	2) 전세	3) 보증부 월세	4) 월세(사글세)	5) 보증부 연세	6) 공공임대
	7) 무상	8) 기타( )				

문3. [보기카드 제시] 현재 귀댁의 세대구성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세대 가구	01) 1인 가구 02) 부부 가구 03) 형제자매 가구 04) 기타 1세대 가구	3세대 가구	12) 부부 + 미혼자녀 + 양친 13) 부부 + 미혼자녀 + 부친 또는 모친 14) 기타 3세대 가구
2세대 가구	05) 부부 + 미혼자녀 가구 06) 부 + 미혼자녀 가구 07) 모 + 미혼자녀 가구 08) 조부모 + 손자녀 가구 09) 조부 또는 조모 + 손자녀 가구 10) 부부(성인자녀) + 부모(양친/부/모) 가구 11) 기타 2세대 가구	4세대 이상 가구	15) 4세대 이상 가구
		비친족 가구	16) 비친족 가구

문4. 지난 1년 동안 귀댁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가구소득은 함께 사는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3) 200~300만원      4) 300~400만원  
5) 400~500만원      6) 500~600만원      7) 600~700만원      8) 700만원 이상

문5. 귀댁의 주 소득원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소득원 하나만 응답하여 주십시오(가구주 기준)

- 01)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02)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      03) 부부 공동 근로(사업)소득  
04) 부모의 근로(사업)소득      05) 자녀의 근로(사업)소득      06)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원  
07) 부모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      08) 자녀들이 주는 생활비나 용돈      09) 자산소득(예금이자, 주식배당금, 임대소득 등)  
10) 공적연금      11) 정부지원금      12) 기타(구체적으로: )

※ 1) ~ 5)번은 같이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  
7), 8)번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지원을 의미함,

문6. 귀하는 현재 귀댁의 경제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2) 약간 만족      3) 보통      4) 약간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 B. 개인관련 사항

※ (조사원기입) 응답자의 가구원 번호 \_\_\_\_\_ 번(앞의 가구표의 가구원 번호와 일치시킬 것)

문7.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0) 무학      1) 초등(국민)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전문대학(2·3년제)      5) 대학교(4년제)      6) 대학원(석사과정)      7) 대학원(박사과정)  
8) 서당, 한학

문7-1. 위의 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 1) 졸업했다      2) 중퇴했다      3) 휴학 중이다  
4) 재학 중이다      5) 수료했다

문8. 2014년 7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귀하는 제주에 얼마동안 거주하셨습니다?

년 개월



문9. 귀하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 01) 제주      02) 서울      03) 부산      04) 대구      05) 인천  
 06) 광주      07) 대전      08) 울산      0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99) 기타(                      )

문10.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기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무급으로 가구원의 일을 돕는 것도 취업에 포함됩니다)

	본인	배우자(배우자가 있다면)
10-1. 현재 취업여부	<input type="checkbox"/> 1) 취업 ☞ 문10-3으로 <input type="checkbox"/> 2) 미취업 ☞ 문10-2로	<input type="checkbox"/> 1) 취업 ☞ 문10-3으로 <input type="checkbox"/> 2) 미취업 ☞ 문10-2로 <input type="checkbox"/> 9) 비해당
10-2. 미취업사유 (미취업자만) ☞ 응답후 문12로	<input type="checkbox"/> 01) 재학 <input type="checkbox"/> 02) 가사 <input type="checkbox"/> 03) 가족돌봄 <input type="checkbox"/> 04) 노령 <input type="checkbox"/> 05) 질병 <input type="checkbox"/> 06) 심신장애 <input type="checkbox"/> 07) 일시휴직 <input type="checkbox"/> 08) 실직 <input type="checkbox"/> 09) 정년퇴직 <input type="checkbox"/> 10) 명예퇴직 <input type="checkbox"/> 11) 기타(무엇:                      )	<input type="checkbox"/> 01) 재학 <input type="checkbox"/> 02) 가사 <input type="checkbox"/> 03) 가족돌봄 <input type="checkbox"/> 04) 노령 <input type="checkbox"/> 05) 질병 <input type="checkbox"/> 06) 심신장애 <input type="checkbox"/> 07) 일시휴직 <input type="checkbox"/> 08) 실직 <input type="checkbox"/> 09) 정년퇴직 <input type="checkbox"/> 10) 명예퇴직 <input type="checkbox"/> 11) 기타(무엇:                      )
10-3. 직종 (보카카드 제시)	<input type="checkbox"/> 01)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0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input type="checkbox"/> 03) 사무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04) 서비스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05) 판매직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06)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0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08)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09) 단순노무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10) 기타(무엇:                      )	<input type="checkbox"/> 01)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0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input type="checkbox"/> 03) 사무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04) 서비스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05) 판매직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06)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0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08)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09) 단순노무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10) 기타(무엇:                      )
10-4. 종사상의 지위 (보카카드 제시)	<input type="checkbox"/> 01) 상용근로자 <input type="checkbox"/> 02) 임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03) 일용근로자 <input type="checkbox"/> 04) 시간제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05) 고용주 <input type="checkbox"/> 06)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07) 무급가족종사자	<input type="checkbox"/> 01) 상용근로자 <input type="checkbox"/> 02) 임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03) 일용근로자 <input type="checkbox"/> 04) 시간제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05) 고용주 <input type="checkbox"/> 06)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07) 무급가족종사자
10-5. 주당 평균 근무시간 (응답자 기준)	주 평균 <input type="text"/> 시간	
10-6. 월 평균 근로 소득 (응답자 기준)	월 <input type="text"/> 만원	

문11. (취업자만)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 하시는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응답후 문13으로

- 1) 매우 만족                      2) 약간 만족                      3) 보통                      4) 약간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12. (미취업자만)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면, 제주도 내에서 귀하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어렵다                      2) 다소 어렵다                      3) 보통이다  
 4) 별로 어렵지 않다                      5) 전혀 어렵지 않다                      6)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않다

문13. 귀하는 여성 일자리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진해야할 정책을 우선 순위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1) 기업의 채용·승진·임금 등에서 남녀고용차별 해소 | 2) 일·가정 양립 제도 및 문화 확산        |
| 3)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및 여성 맞춤 일자리 창출 | 4) 여성의 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과 교육 확대 |
| 5) 여성 창업 및 여성 경제인 지원 강화       | 6) 기타( )                     |

문14. 귀하는 여성취업 지원 대상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1) 청년층 여성(20~29세)             | 2) 경력단절 여성(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 |
| 3) 중장년층 여성(40~59세)            | 4) 고령 여성(65세 이상)                   |
| 5) 저소득층, 미혼모,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여성 |                                    |

문15. 귀하는 직업, 건강, 소득, 가족생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          |       |           |           |
|----------|----------|-------|-----------|-----------|
| 1) 매우 만족 | 2) 약간 만족 | 3) 보통 | 4) 약간 불만족 | 5) 매우 불만족 |
|----------|----------|-------|-----------|-----------|

문16.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에서 귀하는 어떤 사회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1) 상의 상 | 2) 상의 하 | 3) 중의 상 | 4) 중의 하 | 5) 하의 상 | 6) 하의 하 |
|---------|---------|---------|---------|---------|---------|

문17. 귀하는 혹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 |                          |                |
|--------------------------|----------------|
| 1) 예 (장애_____급) ☞ 문17-1로 | 2) 아니오 ☞ 문18으로 |
|--------------------------|----------------|

문17-1. 귀하의 주 장애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1) 지체장애   | 2) 뇌병변장애  | 3) 시각장애     |
| 4) 청각언어장애 | 5) 내부기관장애 | 6) 자폐성·지적장애 |
| 7) 정신장애   |           |             |

### C. 가족생활

※ 아래부터는 귀하의 가족생활 전반에 대하여 조금 자세히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18.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1) 미혼 ☞ 문19로   | 2) 기혼 ☞ 문18-1로      |
| 3) 사별 ☞ 문18-1로 | 4) 이혼 ☞ 문18-1로      |
| 5) 별거 ☞ 문18-1로 | 6) 사실혼(동거) ☞ 문18-1로 |

문18-1. 귀하께서 문18에서 응답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결혼기간, 사별기간, 이혼기간, 별거기간에 대해 각각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1) 1년 미만   | 2) 1~3년 미만  |           |
| 3) 3~5년 미만 | 4) 5~10년 미만 | 5) 10년 이상 |

문19. (현재 배우자가 없다면, 문18에서 ① ③ ④ ⑤ ⑥ 응답자만) 귀하는 장래에 결혼할 계획이 있습니까?

- |                           |                          |
|---------------------------|--------------------------|
| 1) 반드시 할 것이다 ☞ 문20로       | 2) 되도록 할 것이다 ☞ 문20로      |
| 3)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 문19-1로 | 4)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 문19-1로 |

문19-1. 귀하께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01) 일이나 학업에 몰두하고 싶어서               | 02) 혼자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이어서    |
| 03) 혼자 사는 것이 좋아서                   | 04) 실업상태이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서    |
| 05)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 06) 가사 및 육아 부담이 클 것 같아서  |
| 07)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 때문에                | 08) 나의 건강이나 장애로 인해       |
| 09) 장애 또는 만성질환으로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 10) 결혼을 하기에 적절한 연령이 아니어서 |
| 11)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문20.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몇 명입니까? 자녀의 성별과 연령을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현재 살아있는 자녀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명

1) 첫째 자녀	<input type="checkbox"/> 1) 아들 <input type="checkbox"/> 2) 딸	만	세	4) 넷째 자녀	<input type="checkbox"/> 1) 아들 <input type="checkbox"/> 2) 딸	만	세
2) 둘째 자녀	<input type="checkbox"/> 1) 아들 <input type="checkbox"/> 2) 딸	만	세	5) 다섯째 자녀	<input type="checkbox"/> 1) 아들 <input type="checkbox"/> 2) 딸	만	세
3) 셋째 자녀	<input type="checkbox"/> 1) 아들 <input type="checkbox"/> 2) 딸	만	세	6) 여섯째 자녀	<input type="checkbox"/> 1) 아들 <input type="checkbox"/> 2) 딸	만	세

문21. 귀하는 앞으로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1) 있다 ☞ 문22로

2) 없다 ☞ 문21-1로

문21-1.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
|---------------------|--------------------|----------------------|
| 01) 나이가 많아서         | 02) 이미 낳은 자녀로 충분해서 | 03) 아이가 필요하지 않아서     |
| 04)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 05) 일하는 데 지장       | 06) 미혼이므로            |
| 07) 건강상의 이유로        | 08) 자녀양육 스트레스 때문에  | 09) 아이를 믿고 맡길 데가 없어서 |
| 10)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 11) 기타(무엇: _____)  |                      |

※ 다음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22. 귀하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손)자녀가 있습니까? (없을 경우 문25번으로)

만0~2세 (3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1) 있다 _____명 <input type="checkbox"/> 2) 없다 ☞ 문25로	만3~5세	<input type="checkbox"/> 1) 있다 _____명 <input type="checkbox"/> 2) 없다 ☞ 문25로
--------------------	--	-------	--

문23. 위에서 말씀하신 취학 전 (손)자녀를 낮에 주로 돌보는 사람(기관)은 누구입니까? 자녀를 돌보는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
|--------------------|------------------|--------------|
| 01) 자녀의 아버지        | 02) 자녀의 어머니      | 03) 자녀의 외조부모 |
| 04) 자녀의 친조부모       | 05) 기타 친인척       | 06) 이웃       |
| 07)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 08) 개인적으로 구한 돌보미 | 09) 어린이집/유치원 |
| 10) 기타(누구: _____)  |                  |              |

문24. 귀하가 취학 전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                        |
|--------------------------|------------------------|
| 1) 직접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 2)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
| 3) 자녀를 믿고 맡길 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 4) 양육비용의 부담이 크다        |
| 5) 양육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 6) 없다                  |
|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문25. 귀하는 취학 전 (손)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조)부모들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육서비스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01)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02)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 03) 시간연장, 휴일, 야간,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04) 영아전담(만3세 미만)어린이집 확대      |
| 05) 직장어린이집 확대                             | 06) 장애아보육 지원 확대              |
| 07)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 08) 가정과건 보육서비스 확대(예:아이돌보미 등) |
| 09)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                 |                              |
| 10) 부모의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예:부모교육, 자녀와 놀이체험 공간 등) |                              |

문26. 귀하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녀가 있습니까? (없을 경우 문29번으로)

초등학생	<input type="checkbox"/> 1) 있다 _____명
(손)자녀	<input type="checkbox"/> 2) 없다 <span style="font-size: small;">☞ 문29로</span>

문27. 위에서 말씀하신 초등학생 (손)자녀는 방과 후에 주로 어디서 시간을 보냅니까?

- |                |             |                     |       |
|----------------|-------------|---------------------|-------|
| 1) 초등 돌봄교실     | 2) 방과 후 교실  | 3) 과외               | 4) 학원 |
| 5)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 6) 그냥 집에 있음 |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문28. 초등학생 (손)자녀가 방과 후에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그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로 돌보는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01) 자녀의 아버지       | 02) 자녀의 어머니 | 03) 자녀의 외조부모  |
| 04) 자녀의 친조부모      | 05) 기타 친인척  | 06) 형제자매      |
| 07) 이웃            | 08) 가사도우미   | 09) 돌보는 사람 없음 |
| 10) 기타(누구: _____) |             |               |

문29. 귀하는 초등학생 (손)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부모들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돌봄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정책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1) 방과 후 교실 및 돌봄교실 활성화 | 2)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
| 3)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 4)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
| 5) 방과 후 아카데미 활성화      | 6) 아동양육에 따른 세제혜택 확대             |
| 7)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다음은 귀하의 가족생활과 가족관계에 대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30. 귀하는 가족과 함께 얼마나 대화를 자주 하십니까?(비동거 가족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거의 나누지 않음	별로 나누지 않음	자주 나눔	매우 자주 나눔	비해당(없음)
	1	2	3	4	9

응답칸	응답칸
1) 부모와 대화	3) 자녀와 대화
2) 배우자와 대화	4) 손자녀와 대화

문31. 귀하는 가족과 주로 어떤 대화를 자주 하십니까?(비동거 가족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1) 학업 및 진로문제	2) 직장 및 경제문제	3) 건강 및 여가활동 관련 이야기
	4) 자녀 또는 부모 돌봄문제	5) 집안 대소사 문제	6) 기타(구체적으로: )
	9) 비해당(없음)		

	<b>응답칸</b>		<b>응답칸</b>
1) 부모와 대화 내용		3) 자녀와 대화 내용	
2) 배우자와 대화 내용		4) 손자녀와 대화 내용	

문32. 귀하는 평소에 가족에게 주로 어떻게 애정을 표현하십니까? (비동거 가족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1) 말로(사랑한다,고맙다 등)	2) 글로(문자,이메일,SNS 등)	3) 스킨십(쓰다듬기,안마,포옹,입맞춤 등)
	4) 표현안함	9) 비해당(없음)	

	<b>응답칸</b>		<b>응답칸</b>
1) 부모와 애정 표현		3) 자녀와 애정 표현	
2) 배우자와 애정 표현		4) 손자녀와 애정 표현	

문33. 귀하는 평소에 함께 사는 가족과 함께 외식, 여가활동, 여행 등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제사, 명절 등에 친지를 방문한 경우는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1) 일주일에 두세 번  | 2)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3) 한달에 두세 번   |
| 4) 한달에 한 번 정도 | 5) 일년에 서너 번    | 6) 일년에 한 번 이하 |

문34. 지난 1년간 함께 사는 가족과 한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주된 활동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01) 문화예술관람(영화, 연극, 박물관 등) | 02) 여행           | 03) 외식       |
| 04) 쇼핑                    | 05) 산책           | 06) 등산       |
| 07) 스포츠활동                 | 08) 자원봉사활동       | 09) 종교생활     |
| 10) 게임                    | 11) TV 또는 비디오 시청 | 12) 목욕이나 찜질방 |
| 13) 노래방                   | 14) 기타(무엇: )     | 88) 없음       |

문35. 최근 여가 시간을 가지기 어려웠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서로 많이 바빠서               | 2) 서로 취미가 맞지 않거나 관심이 없어서 |
| 3) 경제적 부담 때문에              | 4) 적당한 여가시설이 없어서         |
| 5) 돌봐야 할 환자, 노인, 장애인 이 있어서 | 6) 자녀가 공부에 집중해야 해서       |
| 7) 몸이 피곤하거나 아파서            | 8)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없다   |
| 9) 기타(구체적으로: )             |                          |

문36. 귀하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은 다음 중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장남 또는 그 가족              | 2) 아들 중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       |
| 3) 딸 중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   | 4) 아들, 딸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 |
| 5) 모든 자녀들이 함께 또는 그 가족들이 함께 | 6) 자녀들 또는 그 가족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
| 7) 기타(누구: )                |                                 |

문37-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월 평균 어느 정도 해 드렸습니까?

	하지 않음	10만원 미만	10~29만원	30~49만원	50~69만원	70~100만원	100만원 이상	비해당 (안계심)	응답칸
1) 본인 부모에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2) 배우자 부모에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문37-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월 평균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음	10만원 미만	10~29만원	30~49만원	50~69만원	70~100만원	100만원 이상	비해당 (안계심)	응답칸
1) 본인 부모로부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2) 배우자 부모로부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문38. 귀하는 가족과의 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보기	매우 만족 1	대체로 만족 2	보통 3	대체로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5	비해당 9
----	------------	-------------	---------	--------------	-------------	----------

	응답칸	응답칸
1) 부모와의 관계		3) 자녀와의 관계
2) 배우자와의 관계		4) 손자녀와의 관계

문39.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1	별로 그렇지 않다 2	조금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4
----	----------------	----------------	-------------	-------------

		응답칸
A	01)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으면 가족이라 할 수 없다	
	02)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이 가장 이상적 가족이다	
B	03)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04)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05)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C	06) 결혼하고 자녀가 있다면 부부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07) 노후를 위해서 자녀가 꼭 필요하다	
	08)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다	
	09) 부모는 성인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	
D	10)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며 보살펴드려야 한다	
	11) 남편의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의 일은 가정을 돌보는 일이다	
	12)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해야 한다	
E	13) 비록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아내는 집안 살림에 책임을 져야 한다	
	14) 여성은 남성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떨어진다	
	15) 여성은 이성적인 토론보다 가벼운 대화를 더 좋아한다	
	16) 여성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	

문40. 귀하는 제주 지역 사회 내 가족정책 관련한 다음의 기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지의 여부와 이용경험, 그리고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인지여부			이용경험(안다 응답자만)			이용 후 도움정도(이용자만)			
	안다	모른다	응답칸	있다	없다	응답칸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응답칸
01) 건강가정지원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2) 다문화가정지원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3) 모자(일시)보호시설*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4) 미혼모자시설*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5)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6) 아동그룹홈*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7) 아동복지전문기관*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8) 지역아동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9)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보육정보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10) 보건소	①	②		①	②		①	②	③	
11) 건강증진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12) 인구보건협회	①	②		①	②		①	②	③	

3) 모자(일시)보호시설	4) 미혼모자시설	5)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무주택·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3년, 2년연장가능)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이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을 위한 시설
6) 아동그룹홈	7) 아동복지전문기관	8) 지역아동센터
방임·학대·빈곤·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양육시설	도내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는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전문센터 등이 있음	지역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교육 및 복지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C-1 기혼자 및 사실혼(동거 포함) 응답자 질문(문41~문45)**

→ 면접원은 문18에서 ② ⑥ 응답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함. 문41~문45 응답 후 문54로

문41.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동거)은 귀하와 배우자 모두 첫 번째 결혼(동거)입니까?

- 1) 모두 초혼                      2) 나는 초혼, 배우자는 재혼                      3) 나는 재혼, 배우자는 초혼                      4) 모두 재혼

문42. 귀하와 배우자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다림질하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1) 본인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input type="text"/> 시간 <input type="text"/> 분	2) 배우자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	<input type="text"/> 시간 <input type="text"/> 분
----------------------	--	-----------------------	--

문43. 귀하와 배우자는 자녀, 부모, 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돌보는 데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합니까?

1) 본인의 하루 평균 가족돌봄 시간	□ 시간	□ 분	2) 배우자의 하루 평균 가족돌봄 시간	□ 시간	□ 분
----------------------	------	-----	-----------------------	------	-----

문44. 귀하는 평소에 배우자와의 갈등을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 |                 |                   |
|-----------------|-------------------|
| 1) 거의 없음 ☞ 문45로 | 2) 가끔 ☞ 문44-1로    |
| 3) 자주 ☞ 문44-1로  | 4) 매우 자주 ☞ 문44-1로 |

문44-1. 배우자와의 갈등의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01) 자녀 문제          | 02) 배우자 또는 나의 생활습관 문제(늦은 귀가, 지출 및 소비, 친구 문제 등) |
| 03) 술, 도박 등 중독문제   | 04) 외도문제                                       |
| 05) 가사 및 육아분담 문제   | 06) 경제문제                                       |
| 07) 제사나 집안의 경조사 문제 | 08) 가족 내 돌봐야 할 환자, 노인, 장애인 문제                  |
| 09) 부모부양 문제        | 10) 기타(무엇: _____)                              |

문44-2.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주된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1) 문제점을 말로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 2) 상대방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린다    |
| 3) 회피하거나 참는다          | 4)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 |
| 5) 폭력을 쓸 때도 있다        | 6) 기타(어떻게: _____)       |

문44-3. 배우자와의 갈등은 주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주된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 1) 대화로 풀다         | 2) 상대가 풀릴 때까지 기다린다 | 3) 서로 참고 지나간다 |
| 4) 부모나 친지의 개입으로   | 5) 전문 상담가의 도움으로    | 6) 해결이 되지 않는다 |
| 7) 기타(어떻게: _____) |                    |               |

문45. 귀하는 지난 1년간 배우자와 별거나 이혼이 낫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1) 있다 ☞ 문45-1로 | 2) 없다 ☞ 문54로 |
|----------------|--------------|

문45-1. 배우자와 별거나 이혼이 낫다고 생각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01) 자녀 문제          | 02) 배우자 또는 나의 생활습관 문제(늦은 귀가, 지출 및 소비, 친구 문제 등) |
| 03) 술, 도박 등 중독문제   | 04) 외도문제                                       |
| 05) 가사 및 육아분담 문제   | 06) 경제문제                                       |
| 07) 제사나 집안의 경조사 문제 | 08) 가족 내 돌봐야 할 환자, 노인, 장애인 문제                  |
| 09) 부모부양 문제        | 10) 신뢰나 애정이 없어져서                               |
| 11) 삶의 가치관 차이      | 12)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45-2. 배우자와 별거나 이혼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주변의 시선 때문에         | 2) 경제적 이유 때문에       |
| 3) 자녀를 생각해서           | 4) 결혼실패자라는 낙인이 두려워서 |
| 5) 혼자 사는 것보다 나를 거 같아서 | 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문54로



**C-2 이혼 한 분에게만 질문(문46~문49)**

→ 면접원은 문18에서 ④ 응답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함. 문46~문49 응답 후 문54로

문46. 귀하가 이전 배우자와 이혼으로 헤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순서대로 2순위  
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01) 자녀 문제          | 02) 배우자 또는 나의 생활습관 문제<br>(늦은 귀가, 지출 및 소비, 친구 문제 등) |
| 03) 술, 도박 등 중독문제   | 04) 외도문제   |
| 05) 가사 및 육아분담 문제   | 06) 경제문제   |
| 07) 제사나 집안의 경조사 문제 | 08) 가족 내 돌봐야 할 환자, 노인, 장애인 문제                      |
| 09) 부모부양 문제        | 10) 신뢰나 애정이 없어져서                                   |
| 11) 삶의 가치관 차이      | 12) 기타(구체적으로:_____)                                |

문47. 귀하는 배우자와의 이혼 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                  |                         |
|------------------|-------------------------|
| 1)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 2) 처음엔 좋았으나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
| 3) 후회한다          | 4) 기타(구체적으로:_____)      |

문48.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1) 경제적 어려움         | 2) 자녀 양육  | 3) 외로움     |
| 4) 자녀의 정서 또는 심리문제  | 5) 사회적 편견 | 6) 힘든 점 없음 |
| 7) 기타(구체적으로:_____) |           |            |

문49. 이혼 후 현재 돌보아야 할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습니까?

- |  |  |
|--|--|
| 1)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49-1로 | 2) 없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54로 |
|--|--|

문49-1. 그 자녀는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 |             |           |                 |
|-------------|-----------|-----------------|
| 1) 본인       | 2) 전배우자   | 3) 아이의 친조부모     |
| 4) 아이의 외조부모 | 5) 기타 친인척 | 6) 기타(누구:_____) |

문49-2. 귀하의 전배우자는 자녀의 양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 |                                 |                              |
|---------------------------------|------------------------------|
| 1) 전혀 왕래가 없음                    | 2) 가끔 자녀를 만나 돌봐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냄 |
| 3)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 돌봐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냄 | 4) 자주 만나 자녀를 돌봐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냄 |
| 5) 기타(구체적으로:_____)              |                              |

문49-3. 그 자녀의 양육비는 주로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주된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 1) 내가        | 2) 전 배우자가       | 3) 나와 배우자 공동                             |
| 4) 아이의 친조부모가 | 5) 아이의 외조부모가    | 6) 기타 친인척                                |
| 7) 정부 보조금    | 8) 기타(무엇:_____)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54로 |

**C-3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미혼인 분만 질문(문50~문53)**

→ 면접원은 문18에서 ①, 문20에서 만18세 미만 자녀 유무 Cross 체크. 문50~문53 응답 후 문61로

문50. 자녀의 생부/생모와 혼인을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내가 원하지 않아서
- 2)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서
- 3) 집안의 반대로
- 4)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51. 양육하지 않는 아이의 생부/생모는 자녀 양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왕래가 없음
- 2) 가끔 자녀를 만나 돌봐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냄
- 3)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 돌봐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냄
- 4) 자주 만나 자녀를 돌봐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냄
-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52. 자녀의 양육비는 주로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주된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1) 내가
- 2) 아이의 생부/생모가
- 3) 나와 아이의 생부/생모가 공동으로
- 4) 아이의 친조부모가
- 5) 아이의 외조부모가
- 6) 기타 친인척
- 7) 정부 보조금
- 8) 기타(무엇: \_\_\_\_\_)

문53.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1) 경제적 어려움
- 2) 단독 자녀양육이 주는 스트레스
- 3) 외로움, 분노 등 정서적 어려움
- 4) 자녀의 정서 또는 심리문제
- 5) 부모와의 갈등
- 6) 아이의 생부/생모와의 갈등
- 7) 사회적 편견
- 8) 힘든 점 없음
- 9)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61로

**C-4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구만 질문(문54~문58)**

→ 면접원은 문3에서 ⑧, ⑨ 응답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함. 문54~문58 응답 후 문61로

문54. 귀하가 손자녀와 함께 사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손자녀 부모의 사망, 실종
- 2) 손자녀 부모의 이혼
- 3) 손자녀 부모의 별거
- 4) 손자녀 부모의 가출
- 5) 손자녀 부모의 질병
- 6) 손자녀 부모의 실직, 파산 등 경제적 문제
- 7) 손자녀의 학교진학
- 8) 기타(무엇: \_\_\_\_\_)

문55. 손자녀는 자신의 부모와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거의 매일	일주일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	한 달에 한 번	일 년에 서너 번	일 년에 한번 이하	전혀 안 만남	비해당	응답칸
아버지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input type="text"/>
어머니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input type="text"/>

문56. 귀하가 손자녀를 키우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1) 자신의 건강 문제 등 체력적 어려움
- 2) 손자녀의 학습지도
- 3) 여가 및 문화 활동을 함께 할 수 없어서
- 4) 경제적 어려움
- 5) 대화의 어려움
- 6) 손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몰라서
- 7) 손자녀의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서
-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57 귀하의 손자녀는 또래집단이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 1) 잘 적응하고 있다
- 2)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대로 적응한다
- 3)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 4)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문58. 귀하의 손자녀는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 1) 조손가족에 대한 차별로 인해 또래집단이나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 2) 용돈 부족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필요한 것을 살 수 없는 문제 포함)
- 3) 함께 놀러가거나 대화할 가족이 없음
- 4)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61로

**C-5 만 65세 이상 혼자사는 분만 질문(문59~문60)**

→ 면접원은 SQ3에서 연령 65이상, 문3에서 ① 응답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함. 문59~문60 응답 후 문61로

문59. 귀하가 혼자 사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녀나 함께 살 가족이 없어서
- 2) 자녀나 다른 가족들이 멀리 살고, 본인은 제주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 3) 혼자 사는 게 편하여
- 4)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60. 귀하가 혼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1) 가사 활동 (요리, 빨래, 청소 등)
- 2) 외로움
- 3) 몸이 아플 때
- 4) 경제적인 어려움
-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61로

**C-6 가족 유형별 정부지원정책[모두 응답]**

문61. 이혼이나 사별로 한부모가 된 가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1) 한부모가정에 대한 인식변화
- 2) 한부모 모자/부자 보호시설의 확대
- 3) 주거지원의 확대
- 4) 한부모가정 자격기준 완화
- 5) 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 6) 한부모 가정 자녀 학습지원
- 7) 양육비 집행강제
- 8) 기타 (무엇: \_\_\_\_\_)

문62.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부에게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1) 미혼모/부에 대한 인식변화
- 2) 미혼모 보호시설의 확대
- 3) 지역통합 서비스 강화
- 4) 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 5) 미혼모/부에 대한 학습지원
- 6) 친자검사비용 지원
- 7) 양육비 집행강제
- 8) 양육을 회피하는 생부/생모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 9) 기타(무엇: \_\_\_\_\_)

※ 지역통합 서비스란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출산, 의료,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문63.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 1) 생활 가사 지원서비스
- 2) 손자녀를 위한 학습지도
- 3)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 4) 경제적 지원
- 5) 양육을 위한 정보 서비스
- 6) 의료지원
- 7) 손자녀를 위한 정서지원 서비스
- 8) 기타(무엇: \_\_\_\_\_)

문64.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 1) 생활 가사 지원서비스
- 2) 말벗이나 여가활동 도우미 파견
- 3) 몸이 아플 때 병원동행 서비스
- 4) 취업 지원
- 5) 경제적 지원
- 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65. 귀하는 다음의 가족유형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1) 맞벌이 가족 2) 노인부부 가족 3) 자녀양육기에 있는 한부모 가족
4) 미혼모/부 가족 5) 조손가족 6) 노인1인 가족
7) 입양 및 위탁가족 8) 기타(누구:\_\_\_\_\_)

D. 건강, 사회참여, 여성정책

※ 다음은 귀하의 건강을 비롯하여, 사회참여, 여성정책 등에 대해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66.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떠십니까?

[ ]

- 1) 매우 나쁘다 2) 나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문67.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단체에 참여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01) 친목 및 사교단체 (계, 동창회 등) [ ] 02) 종교단체 (자비원, 선교회, 교회 등)
[ ] 03) 취미, 스포츠, 레저단체 [ ] 04)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봉사단체 등)
[ ] 05) 학술단체 [ ] 06) 이익단체(노조, 의사회, 약사회 등)
[ ] 07) 정치단체 [ ] 08) 지역사회모임(반상회, 입주자 대표회 등)
[ ] 09) 단체에 참여한 적이 없음 [ ] 10) 기타(무엇:\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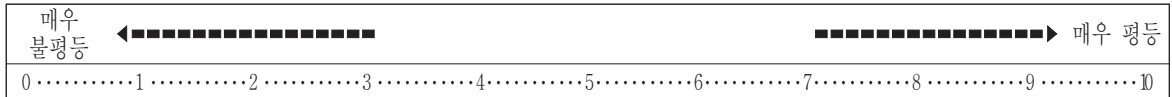
문68. 귀하는 제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1) 정당의 여성할당제 비율 확대 2) 여성 정치후보자 발굴 및 지원
3)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개선(선거자금, 공천제도 등) 4)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 개선
5) 기타(무엇:\_\_\_\_\_)

문69. 귀하는 제주 사회의 양성평등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 ]



문70. 귀하는 다음의 양성평등정책 중에서 제주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3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01) 정책결정과정에서 양성평등 실현 02) 경제활동에서 양성평등 실현
03) 임신·출산·수유·육아에 있어서 모성과 부성의 권리 보장 04)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 조성
05)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여성인재의 육성 0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07)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 08)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09)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10) 국제협력에서 양성평등한 참여 11) 가정과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 실시
12) 대중매체의 성차별 관행 개선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13) 여성친화도시 조성확대

문71. 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가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1) 여성·가족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2) 도지사 등 최고관리자의 관심과 의지
3)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의지 4) 도의회의 전문성과 의지
5) 지역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적극적 활동 6) 일반 도민의 참여 기회 확대
7) 도민 대상 여성·가족 정책의 홍보 8) 기타(무엇:\_\_\_\_\_)

**E. 폭력과 안전**

문72.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보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 .....	다소 동의한다 3 .....	매우 동의한다 4
----	------------------------	------------------------	--------------------	--------------

	응답칸
1) 일반폭력에 관대할수록 가정폭력에 허용적이다	<input type="checkbox"/>
2) 배우자의 열등감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	<input type="checkbox"/>
3)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	<input type="checkbox"/>
4) 부부간 의사소통이 어려울수록 가정폭력을 초래한다	<input type="checkbox"/>
5)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을 유발한다	<input type="checkbox"/>
6) 가정폭력피해자가 대응하지 않을수록 가정폭력은 지속된다	<input type="checkbox"/>

문73. 다음 의견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응답칸
1)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다	①	②	<input type="checkbox"/>
2) 부부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손찌검을 할 수 있다	①	②	<input type="checkbox"/>
3) 맞은 사람은 맞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렇다	①	②	<input type="checkbox"/>
4)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①	②	<input type="checkbox"/>
5) 어린 시절 부모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가정폭력에 허용적이다	①	②	<input type="checkbox"/>
6) 남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아내에게 폭력을 쓸 수 있다	①	②	<input type="checkbox"/>
7) 가정폭력은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신고해서는 안 된다	①	②	<input type="checkbox"/>
8) 가정폭력은 집안문제라 사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①	②	<input type="checkbox"/>
9) 가정폭력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의 문제이다	①	②	<input type="checkbox"/>

문74. 귀하는 가정폭력 가해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호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                         |                        |
|-------------------------|------------------------|
| 1) 전혀 모른다               | 2)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
| 3) 내용을 잘 알고 있다 ☞ 문74-1로 |                        |

☞ 문75로

문74-1.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                        |                       |
|------------------------|-----------------------|
| 1) TV/라디오의 공익광고        | 2)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        |
| 3) 버스 광고               | 4) 신문/잡지              |
| 5) 여성단체/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 6) 학교/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 |
| 7) 친구/가족, 직장동료/이웃      | 8) 반상회보/부녀회           |
| 9) 기타(무엇: )            |                       |

문75. 다음은 현재 가정폭력과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귀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안다	모른다	응답칸
1) 가정폭력 피해자상담소	①	②	
2) 경찰 < 112 >	①	②	
3) 여성긴급전화1366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365일24시간 운영되는 긴급상담 전화	①	②	
4) 여성폭력원스탑(one-stop)지원센터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4시간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 센터	①	②	
5)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등 가정폭력관련 법률 서비스	①	②	
6) 의료비지원 및 의료서비스(가정폭력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 의료비지원 등)	①	②	
7)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①	②	
8) 국민임대주택우선입주	①	②	
9)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①	②	
10) 피해자의 아동 취학지원	①	②	
11) 가정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	①	②	
12) 지역복지관 관련 서비스	①	②	

문76. 가정불화나 가정폭력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1) 참여할 의향이 있다    2) 참여할 의향이 없다

문77. 귀하는 지금까지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모두 말씀해주세요

	폭행여부	최초피해연령		폭행여부	최초피해연령
1) 조부모로부터	<input type="checkbox"/> 1) 있다 → <input type="checkbox"/> 2) 없다	만_____세	5) 배우자로부터	<input type="checkbox"/> 1) 있다 → <input type="checkbox"/> 2) 없다	만_____세
2) 아버지로 부터	<input type="checkbox"/> 1) 있다 → <input type="checkbox"/> 2) 없다	만_____세	6) 자녀로 부터	<input type="checkbox"/> 1) 있다 → <input type="checkbox"/> 2) 없다	만_____세
3) 어머니로 부터	<input type="checkbox"/> 1) 있다 → <input type="checkbox"/> 2) 없다	만_____세	7) 손자녀로 부터	<input type="checkbox"/> 1) 있다 → <input type="checkbox"/> 2) 없다	만_____세
4) 형제·자매로 부터	<input type="checkbox"/> 1) 있다 → <input type="checkbox"/> 2) 없다	만_____세			

\* ‘가족들로부터의 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든 항목에서 ‘없음’이라고 하는 경우는 **문94로**

문78. 귀하는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모두 말씀해주세요

- 1) 무섭고 두려웠다     2) 좌절·무력감을 느꼈다  
 3) 수치스러웠다     4) 가족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졌다  
 5) 화가 났다     6)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79. 귀하는 폭력을 당한 직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모두 말씀해주세요

- 1)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죽고 싶었다  
 3) 가출하고 싶었다     4) 물건을 던지거나 사람을 때리고 싶었다  
 5) 폭력행위자를 죽이고 싶었다     6)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80. 귀하는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할 때 주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가?

- |               |              |
|---------------|--------------|
| 1) 그냥 맞으면서 참음 | 2) 무조건 피함    |
| 3) 함께 폭력 행사   | 4) 주위에 도움 요청 |

☞ 문80-1, 문83으로  
☞ 문80-2, 문80-3으로

문80-1. 귀하가 대응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문83으로

- |                   |                     |
|-------------------|---------------------|
| 1) 무서워서           | 2)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
| 3)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 4) 참으면 나아진다는 생각 때문에 |
| 5)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 6) 가족이기 때문에         |
| 7)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서   |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80-2. 귀하가 대응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2) 폭력행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
| 3) 폭력은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 4)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80-3.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셨다면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가?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input type="checkbox"/> 1) 가족이나 친척    | <input type="checkbox"/> 2) 이웃이나 친구 | <input type="checkbox"/> 3) 학교/학원선생님         |
| <input type="checkbox"/> 4) 지역복지관      | <input type="checkbox"/> 5) 종교지도자   | <input type="checkbox"/> 6) 긴급전화 1366        |
| <input type="checkbox"/> 7) 센터 및 전문상담소 | <input type="checkbox"/> 8) 경찰      | <input type="checkbox"/> 9)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81. (문80-3에서 ⑧ 응답자만)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다가?

- 1) 피해자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인도하였다
- 2) 즉시 출동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접수하였다
- 3) 출동하였으나 기록은 하지 않고 듣기만 하였으며 접수시키겠다고 했다
- 4) 출동은 하였으나 그냥 듣기만 하고 집안일이나 해결하라며 돌아갔다
- 5) 집안일이나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에 응하지 않았다
- 6)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폭력행위자와 함께 동반귀가 시켰다
-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82. (문80-3에서 ⑥, ⑦ 응답자만)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 응답 후 문85로

- |                  |                  |
|------------------|------------------|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2)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
| 3) 도움이 된 편이다     | 4)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문83. (문80에서 ①, ②응답자, 문80-3에서 ⑧ 미응답자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폭력행위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 2)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 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 4)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
| 5)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 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84. (문80에서 ①, ②응답자, 문80-3에서 ⑥, ⑦ 미응답자만) 관련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관련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 2)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 3)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 4) 도움 요청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문85. 귀하는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 어떤 후유증이 있었습니까? 모두 말씀해주세요

- 1) 변화가 없음
- 2) 불안·우울함
- 3)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감
- 4) 가해자에 대한 분노
- 5) 모든 일에 화가 남
- 6) 대인기피
- 7) 자살에 대한 생각
- 8) 반복적인 가출
- 9)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86. 귀하는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상처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유료로 받은 적 있다 ☞ 문86-1로
- 2) 무료로 받은 적 있다 ☞ 문86-2로
- 3) 없다 ☞ 문86-3으로

문86-1. 귀하가 병원치료를 유료로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당연히 내가 지불해야하니까
- 2)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몰라서
- 3)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 문87로

문86-2. 귀하가 병원치료를 무료로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경찰 및 상담소의 안내를 받아서
- 2) 가정폭력관련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 3) 기타(구체적으로:\_\_\_\_\_)

☞ 문87로

문86-3.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신체적 상처가 없어서
- 2)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 3) 돈이 없어서
- 4)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아서
- 5)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 6)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몰라서
- 7) 기타(구체적으로:\_\_\_\_\_)

☞ 문87로

문87. 귀하는 가족들로부터 폭력이 있을 후 가족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1) 변화가 없었다
- 2) 가족구성원에 대한 친밀감을 상실했다
- 3) 가족구성원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했다
- 4)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됐다
- 5) 이혼했다
- 6)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 7)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88.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보호시설이 있다면 입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 1) 입소할 의향이 있다
- 2) 입소할 의향이 없다
- 3) 모르겠다(이유:\_\_\_\_\_)

문89. 귀하가 가정폭력 관련 기관(1366, 쉼터/전문가정폭력상담소)에 가장 바라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1) 정신 및 심리상담
- 2) 법적지원
- 3) 의료지원
- 4) 정보제공
- 5)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90. 귀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우선 순위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폭력 허용적인 사회문화의 개선
- 2) 부부간 의사소통개선을 위한 가족치료프로그램 제공
- 3)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거주기간 연장
- 4)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상담,의료,주거 등)
- 5)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6)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강화
- 7) 가정폭력 가해자를 집에서 퇴거시키고, 가해자 처벌강화
- 8)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91. 귀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우선 순위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1) 관련법제도의 처벌강화  | 2) 직장 및 학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확대 |
| 3) 도민대상 인권교육 실시 | 4)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개선          |
| 5) 양성평등사회 실현    | 6) 기타(구체적으로:_____)         |

문92. 귀하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상담, 교육, 심리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있다면 가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도움이 될 것이다                      2) 도움이 안 될 것이다                      3) 모르겠다(이유:\_\_\_\_\_)

문93. (배우자[동거자 포함]가 있는 분만 응답)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동거자 포함)는 지난 1년간 갈등이 있을 때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면접원은 문18에서 ②, ⑥ 응답여부 확인)

지난 1년간 횟수	거의 매일	한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3개월에 한두번	6개월에 한두번	1년에 한두번	없음	응답칸
01)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2) 때리려고 위협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3) 나의 물건을 파손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4)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5)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6) 수입과 지출을 독점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7)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8) 어깨나 목 등을 짝 움켜잡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9)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목을 졸랐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을 하거나, 다치게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현대, 몽둥이로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내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내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93-1. (문1 가구구성표에서 만18세 미만 (손)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만 응답)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손)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1년간 횟수	거의 매일	한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3개월에 한두번	6개월에 한두번	1년에 한두번	없음	응답칸
1)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몽둥이 같은 물건으로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안전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경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94.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응답칸
1) 나는 밤늦게 귀가하거나 택시를 탈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	①	②	
2)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수리기사, 택배 등)의 방문이 무섭다	①	②	
3) 나는 길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4) 나는 평소에 성폭행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①	②	

문95. 성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응답칸	
A	1)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자는 속으로는 원하면서 '싫다'라고 한다	①	②	
	2) 여자가 먼저 목을 껴안고 애무하다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	①	②	
B	3)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따라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①	②	
	4)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①	②	
C	5) 늦은 밤에 혼자 다니는 여자들은 대부분 끼 있는 여자이다	①	②	
	6) 여자가 야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이다	①	②	

문96.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성폭력이다	성폭력 아니다	응답칸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정신적 행위	①	②	
2)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음담패설로 수치심을 자극, 또는 일방적으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행동	①	②	
3) 원치 않는 사람의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 등을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위, 또는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	①	②	
4)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강요하는 행동	①	②	
5) 성행위 도중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는 행동	①	②	



※ 다음은 귀하의 성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응답 시 유의사항:

- 1) 피해유형별로 여러 사건인 경우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중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2)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주된 가해자를 중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3) 유형별로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으로 이동하세요.

문101. 귀하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피해유형	1) 경험여부, 횟수	2) 최근 1년간 경험여부			3) 최초 피해연령	4) 피해당시 가해자 연령 (보기참조)	5) 피해 내용 (보기참조)
		① 있다	② 없다	응답칸		응답칸	응답칸
1) 스토킹 (지속적 추적, 추근거림) ☞ <b>응답 후 문102로</b>	<input type="checkbox"/> 1) 있다 → _____회 <input type="checkbox"/> 2) 없다	①	②		만 _____세		
2) 성희롱 (음란한 말, 눈짓, 몸짓) ☞ <b>응답 후 문103으로</b>	<input type="checkbox"/> 1) 있다 → _____회 <input type="checkbox"/> 2) 없다	①	②		만 _____세		
3) 성추행 (신체적 접촉, 강제로 키스, 성기접촉, 애무 등) ☞ <b>응답 후 문103으로</b>	<input type="checkbox"/> 1) 있다 → _____회 <input type="checkbox"/> 2) 없다	①	②		만 _____세		
4) 강간 (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기에 이물질삽입) ☞ <b>응답 후 문103으로</b>	<input type="checkbox"/> 1) 있다 → _____회 <input type="checkbox"/> 2) 없다	①	②		만 _____세		

보기 4) 피해당시 가해자 연령		보기 5) 피해내용	
① 13세미만	④ 30대	① 한 사람에게 한번 당함	④ 여러 사람에게 차례로 당함
② 13~19세	⑤ 40대	② 한 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함	⑤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여러 번 당함
③ 20대	⑥ 50대	③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⑥ 기타( )
	⑦ 60대 이상		

※ 피해경험이 모두 없는 응답자는 ☞ 문120으로

문102. 귀하를 스토킹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든 응답하여 주십시오

- 01) 모르는 사람
- 02)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나 알게 된 사람
- 03) 학교 선후배
- 04) 애인 (혹은 배우자)
- 05) 부모
- 06) 형제, 자매
- 07) 친척
- 08) 이웃
- 09) 교사/교수/장사
- 10) 직장상사 및 동료
- 11) 기타(구체적으로: )



문107. 귀하는 성폭력 피해 당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1) 그냥 있었다     | <input type="checkbox"/> 3) 가해자를 설득하였다          |
| <input type="checkbox"/> 2) 도망갔다       | <input type="checkbox"/> 5) 가해자를 속여 도망칠 기회를 노렸다 |
| <input type="checkbox"/> 4) 가해자를 협박하였다 | <input type="checkbox"/> 7) 힘으로 저항하고 싸웠다        |
| <input type="checkbox"/> 6) 발고 애원했다    | <input type="checkbox"/> 9)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input type="checkbox"/> 8) 소리를 질렀다    |   |

☞ 문108로

☞ 문109로

문108. 대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2) 소리 내면 남이 알까봐 창피해서 |
| 3) 술이나 잠에 취해 정신이 없어서      | 4) 공포에 몸이 굳어서        |
| 5) 몸이 묶여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서 | 6) 저항하면 다칠까봐         |
| 7)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 8) 성폭력인지 몰라서         |
| 9)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 문110으로

문109. 대응을 했다면 귀하가 취한 행동이 당시 상황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 1) 성폭력도 피하고 신체적인 상처도 입지 않았다
- 2) 성폭력은 면했지만 신체적 폭력이 심했다
- 3) 성폭력 피해도 면하지 못하고 신체적 폭력도 심했다
- 4)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10. 성폭력 피해에 대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있다		없다		응답칸
	①	☞ 문111로	②	☞ 문112로	
1) 경찰	①	☞ 문111로	②	☞ 문112로	
2) 가족이나 친구	①		②		
3) 여성긴급전화 ☎1366	①		②		
4) 성폭력상담소 혹은 쉼터	①		②		
5) 여성폭력 윈스톱지원센터	①	☞ 문113으로 (하나라도 "있다"인 경우)	②	☞ 문114로 (모두 "없다"인 경우)	
6) 여성. 아동 성폭력센터(해바라기센터)	①		②		
7) 성매매 피해자 쉼터	①		②		
8) 장애인 성폭력 상담기관	①		②		
9)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①		②		

문111.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 |                            |                        |
|----------------------------|------------------------|
| 1)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주었다 | 2) 직접 방문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였다 |
| 3) 전화로 피해상황을 확인하였다         | 4) 수사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
| 5)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                        |

문111-1. 신고를 처리한 경찰의 조치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            |           |          |
|-----------|------------|-----------|----------|
| 1) 매우 불만족 | 2) 대체로 불만족 | 3) 대체로 만족 | 4) 매우 만족 |
|-----------|------------|-----------|----------|
- 응답 후 ☞ 문113으로

문112.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가장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1) 범인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 2)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
| 3)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 4)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
| 5) 가족(부모)들에게 비난당할까봐 두려워서     | 6)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
| 7) 보복이 두려워 감히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해서 | 8)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 9)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문113. (문110에서 서비스기관 3)~9) 중 하나라도 이용한 적이 있는 분 응답) 서비스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떤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input type="checkbox"/> 1) 긴급 상담   | <input type="checkbox"/> 2) 경찰 등 기관 연계  | <input type="checkbox"/> 3) 의료서비스 |
| <input type="checkbox"/> 4) 사회복지서비스 | <input type="checkbox"/> 5) 법률서비스       | <input type="checkbox"/> 6) 심리 상담 |
| <input type="checkbox"/> 7) 정신과 치료  | <input type="checkbox"/> 8) 지원을 받은 적 없다 |                                   |

문113-1. 관련기관의 조치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대체로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응답 후 ☞ 문115로

문114. (문110에서 서비스기관 3)~9) 중 한 군데도 이용한 적이 없는 분 응답) 관련(서비스)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관련기관의 존재를 몰라서    | 2)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
| 3)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 4)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
| 5)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6) 상담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
|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문115. 귀하는 성폭력으로 신체적인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 1) 예 ☞ 문115-1로 2) 아니오 ☞ 문116으로

문115-1. 그럼 어떠한 피해를 경험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1) 성기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 <input type="checkbox"/> 2) 성기이외 다른 신체적 상처를 입었다 |
| <input type="checkbox"/> 3) 하혈을 했다        | <input type="checkbox"/> 4) 성병에 걸렸다             |
| <input type="checkbox"/> 5) 임신을 했다        | <input type="checkbox"/> 6) 낙태를 했다              |
| <input type="checkbox"/> 7) 장애가 생기거나 심해졌다 | <input type="checkbox"/>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115-2. 신체적 상처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았습니까?

- 1) 유료로 받았다 2) 무료로 받았다 ☞ 문116으로

3) 받지 않았다 ☞ 문115-3으로

문115-3.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신체적 피해가 없어서      | 2)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
| 3) 돈이 없어서           | 4) 약만 사 먹으면 나을 것 같아서 |
| 5)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 6) 당황하여 치료시기를 놓쳐서    |
|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문116. 귀하는 성폭력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 1) 예 ☞ 문116-1로 2) 아니오 ☞ 문117로

문116-1. 그럼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1) 불면증에 시달렸다
- 2) 우울증에 시달렸다
- 3)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렸다
- 4) 순결상실감에 고통을 받았다
- 5) 수시로 분노감이나 적개심이 들었다
- 6)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
- 7) 자살을 기도하는 등 자해행위를 했다
- 8) 없다
- 9)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116-2. 지금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1) 괜찮다
- 2)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다
- 3)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있다
- 4) 과거의 피해상황이 수시로 떠오른다

문117. 귀하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 한 후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01) 타인에 대한 혐오, 또는 불신
- 02)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
- 03) 대인기피증
- 04) 혼자 외출을 못하는 등의 행동문제가 생김
- 05) (직장인의 경우)직장을 옮기거나 그만 두었음
- 06) (학생의 경우)전학하거나 자퇴하였음
- 07)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음
- 08) 가족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가 악화됨
- 09) 변화없다
- 10)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문118. 피해이후 경제적으로 어떤 손실이 있었습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1) 직장에서 해고를 당함
- 2) 직장을 그만 둠
- 3) 가해자로부터 금품갈취 당함
- 4) 치료비 부담
- 5) 소송비 부담
- 6) 취업을 못함
- 7) 기타(무엇: \_\_\_\_\_)

문119. 귀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있다면 입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 1) 입소할 의향이 있다
- 2) 입소할 의향이 없다
- 3) 모르겠다(이유: \_\_\_\_\_)

※ 문120번 부터는 모든 응답자가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20. 귀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관련 서비스 중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신적 심리적 치료
- 2) 법적 지원
- 3) 의료지원
- 4) 정보제공

문121. 귀하는 성폭력 관련 서비스 중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1) 생활비 지원
- 2) 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 3) 자립을 위한 금융서비스(대출)
- 4) 취업지원 등 자활지원
- 5) 직업훈련 지원

문122. 귀하는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1) 성폭력 예방과 성역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 2) TV 등 공익광고를 통해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
- 3) 지역 내 우범지역 해소 및 치안유지
- 4)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 강화
- 5) 상담, 교육 등 가해자의 교정 치료 프로그램 강화
- 6)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제공(상담, 의료, 주거 등)
-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

---

발행일	2014년 12월 31일
발행인	현혜순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Tel. 064)710-3482 Fax. 064)710-3489 www.jewfri.kr
인 쇄	열린출판기획 (064-724-0114)

---

ISBN 979-11-954366-2-0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있으며  
출처를 명시하고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복제는 금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www.jewfri.kr](http://www.jewfri.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Tel. 064-710-3482 Fax. 064-710-3489



9 791195 436606

ISBN 979-11-954366-0-6